

연구보고서 2017-24

#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황남희 · 김경래 · 배혜원 · 김재호

**【책임연구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연구보고서 2017-2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황남희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가격 9,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76-3 93330

## 발간사 <<

생애 주기에 따라 연령 집단을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면,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대표적인 부양 대상 집단(피부양 집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 피부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강조되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의 보육과 취학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자녀 양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무상 보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은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주고,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과 노인일자리 지원의 확대, 정년 연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후기 노인에 대한 생애 말기 케어 지원 등을 통해 그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졌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족 부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이 함께 이루어진다. 제한된 가계의 예산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을 위한 지출 규모 결정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규모 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은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학문적 연구도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큰 틀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부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 및 특성과 함께 가구 내 조세 지출과 수입 구조(정책 수혜와 납세 실태 등)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하였다.

한편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지와 도구적 지원 등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이용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봄,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부양 실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황남희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 김경래 부연구위원, 배혜원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재호 박사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집필에 힘쓴 연구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그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 박종서 부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부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 .....</b>	<b>9</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17
<b>제2장 선행 연구 검토 .....</b>	<b>21</b>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	23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	29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	32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	40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	47
제6절 소결 .....	56
<b>제3장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현황 .....</b>	<b>59</b>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	61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	64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	77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	87

<b>제4장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b> .....	<b>91</b>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	93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	96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	135
제4절 소결 .....	154
<b>제5장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b> .....	<b>161</b>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163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	167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	173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	183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	193
제6절 소결 .....	196
<b>제6장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b> ..	<b>199</b>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	20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	201
제3절 소결 .....	213
<b>제7장 결론 및 정책 과제</b> .....	<b>215</b>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217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36

<b>참고문헌</b> .....	<b>237</b>
<b>부 록</b> .....	<b>247</b>
부록 1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	247
부록 2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준거 가구와의 비교 .....	276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	299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 .....	307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	311

## 표 목차

〈표 1-1〉 가족 부양 정책별 정책 대상 및 실질 수혜자 .....	17
〈표 2-1〉 2017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8
〈표 2-2〉 영유아 시설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변화(2009~2017년) .....	34
〈표 2-3〉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2009~2017년) .....	34
〈표 2-4〉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2015년) .....	42
〈표 2-5〉 노인복지법상 노인 복지 서비스별 부양 대상 연령 .....	53
〈표 2-6〉 한국 여성의 출산 종결까지의 평균적 삶 .....	54
〈표 2-7〉 한국 여성 노인의 평균적 삶 .....	55
〈표 2-8〉 한국 청장년의 가족 부양 기간 계산 결과 .....	56
〈표 3-1〉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정책 분류 .....	64
〈표 3-2〉 자녀의 양육(생계)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5
〈표 3-3〉 자녀 양육의 주거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6
〈표 3-4〉 자녀 양육의 의료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6
〈표 3-5〉 자녀 양육의 교육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7
〈표 3-6〉 자녀 양육의 보호·돌봄·기타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8
〈표 3-7〉 노부모 부양 관련 지원 정책 분류 .....	69
〈표 3-8〉 노부모 부양의 생계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69
〈표 3-9〉 노부모 부양의 주거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70
〈표 3-10〉 노부모 부양의 의료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71
〈표 3-11〉 노부모 부양의 교육(오락·문화 포함)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72
〈표 3-12〉 노부모 부양의 보호·돌봄·기타 부문 지급 형태 구분 .....	72
〈표 3-13〉 양육·부양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	73
〈표 3-14〉 영유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	74
〈표 3-15〉 아동·청소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	75
〈표 3-16〉 노인 부양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	76
〈표 3-17〉 우리나라 현행 조세 및 관련 법령 .....	78

〈표 3-18〉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관련 내용 .....	82
〈표 3-19〉 배우자 상속 공제 .....	86
〈표 4-1〉 분석 대상 사례 수 .....	95
〈표 4-2〉 전체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98
〈표 4-3〉 자녀 양육 유무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100
〈표 4-4〉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	102
〈표 4-5〉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	103
〈표 4-6〉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	104
〈표 4-7〉 자녀 학령 단계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05
〈표 4-8〉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06
〈표 4-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	108
〈표 4-1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	110
〈표 4-1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	111
〈표 4-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12
〈표 4-13〉 자녀의 학령단계별 및 자녀규모별 연평균 소비지출 세부항목 .....	113
〈표 4-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	116
〈표 4-15〉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	117
〈표 4-1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	118
〈표 4-1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19
〈표 4-18〉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20
〈표 4-1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사례 수 .....	121
〈표 4-2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	123
〈표 4-2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	124
〈표 4-2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	125
〈표 4-23〉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26
〈표 4-2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	127
〈표 4-25〉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지출 사례 수 .....	129

〈표 4-2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	131
〈표 4-2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	132
〈표 4-28〉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	133
〈표 4-2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구성비 .....	134
〈표 4-30〉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137
〈표 4-31〉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연간 이전 소득 중 기타 정부보조금 세부 항목 .....	138
〈표 4-32〉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40
〈표 4-33〉 동거 부모 수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143
〈표 4-34〉 동거 부모 수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44
〈표 4-35〉 동거 부모 수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44
〈표 4-36〉 월평균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지출 규모 분포 .....	145
〈표 4-37〉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147
〈표 4-38〉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48
〈표 4-39〉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49
〈표 4-40〉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	151
〈표 4-41〉 부모 동거 여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153
〈표 4-42〉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153
〈표 4-43〉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 .....	158
〈표 4-44〉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 .....	160
〈표 5-1〉 사례연구 대상 선정 .....	163
〈표 5-2〉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주요 특성 .....	165
〈표 6-1〉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평가 .....	202
〈표 6-2〉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평가 .....	203
〈표 6-3〉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절대평가 .....	205
〈표 6-4〉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려 요소의 중요도 .....	206
〈표 6-5〉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현재 공사 역할 분담 평가(가족/국가) .....	208
〈표 6-6〉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향후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가족/국가) .....	209

〈표 6-7〉 경제적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 ..... 211  
 〈표 6-8〉 비경제적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 ..... 212  
 〈표 7-1〉 연도별 부양 관계 단절 인정 수급권 보장 현황 ..... 230

**부표 목차**

〈부표 1-1〉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 247  
 〈부표 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 248  
 〈부표 1-3〉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 249  
 〈부표 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 250  
 〈부표 1-5〉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 252  
 〈부표 1-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 253  
 〈부표 1-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 254  
 〈부표 1-8〉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 255  
 〈부표 1-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 256  
 〈부표 1-1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257  
 〈부표 1-1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소득 세부 항목 ..... 259  
 〈부표 1-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 260  
 〈부표 1-13〉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 261  
 〈부표 1-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 262  
 〈부표 1-15〉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변화 ..... 263  
 〈부표 1-16〉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변화 ..... 264  
 〈부표 1-17〉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변화 ..... 265  
 〈부표 1-18〉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변화 266  
 〈부표 1-19〉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내역  
 구성비 변화 ..... 267

〈부표 1-20〉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변화 .....	268
〈부표 1-21〉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변화 .....	269
〈부표 1-22〉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내역 변화 .....	270
〈부표 1-23〉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변화 .....	271
〈부표 1-24〉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변화 .....	272
〈부표 1-25〉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변화 .....	273
〈부표 1-26〉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변화 .....	274
〈부표 1-27〉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변화 .....	275
〈부표 2-1〉 가구 유형별 특성 .....	279
〈부표 2-2〉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자녀 관련 특성 .....	282
〈부표 2-3〉 노부모 부양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노부모 관련 특성 .....	282
〈부표 2-4〉 소득 구성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	283
〈부표 2-5〉 1인당 소득 구성별 월평균 총소득 .....	284
〈부표 2-6〉 소비 항목별 월평균 가구 총지출 .....	284
〈부표 2-7〉 소비 항목별 1인당 월평균 총지출 .....	285
〈부표 2-8〉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	286
〈부표 2-9〉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	287
〈부표 2-10〉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	288
〈부표 2-11〉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	289
〈부표 2-12〉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	290
〈부표 2-13〉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	291
〈부표 2-14〉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별 차이 .....	292
〈부표 2-15〉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구성별 차이 .....	293
〈부표 2-16〉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	294
〈부표 2-17〉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	295
〈부표 2-18〉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	296

〈부표 2-19〉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	297
〈부표 4-1〉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양육 제도 개선 방향 .....	308
〈부표 4-2〉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양육 제도 개선 방향 .....	309
〈부표 4-3〉 부모 부양 제도 개선 방향 .....	310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령별 1인당 평균 사적 이전 및 공적 이전 .....	13
[그림 1-2] 연구 구성 및 내용 .....	19
[그림 2-1] 법률상 연령 기준에 따른 자녀 부양 기간 .....	50
[그림 4-1] 가구주 연령 범위별 자녀 양육 가구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	97
[그림 4-2] 동거 부모 수별 가구주 연령 분포 .....	141
[그림 6-1]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	204
[그림 6-2] 현재와 향후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공적 역할 차이 .....	210

## 부도 목차

[부도 2-1] 가구 유형 .....	277
----------------------	-----

---

## Abstract <<

### **Income and Consumption of Family Support Households and Its Implications**

Project Head · Hwang, Namhu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come and consumption of family support households in Korea. The family support household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hild-rearing households and parent-supporting households. We also look at double-burdened households that support their parents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ducts mainly quantitative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along with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 shows that income and consumption of child-rearing households have been positively related to the age of children(by schoo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of their mothers, income level and so 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higher school level children are in, the higher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consumption become. Households with preschool children have higher public transfer income than other households with school-aged children because of child-care subsidies. Also, higher private transfer ex-

penditure has been to their old parents when households earn higher income. Young parent generation has prioritized child-rearing over parent-supporting.

Meanwhile, income and consumption of households living with their elderly parents are generally low. The reason is that the labor income share is small out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 basic pension and agricultural subsidy of the fishery - takes a bigger share in total household income. Moreover, when higher private transfer has been provided to their old parents, the portion of their food expenses has been small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s of family and government in terms of life cycle. When children are in early age, the government should have bigger responsibilities through child-care policies.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tax benefits to households financially supporting their old parent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그간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은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된 경향이 있다. 가족 부양 관련 연구 또한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가족 부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특성과 함께 가구 내 조세 지출과 수입 구조(정책 수혜와 납세 실태 등)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지와 도구적 지원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이용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부양 실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차(조사 대상 시점 2015년)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았으며, 자녀의 학령 단계와 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12가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연령), 자녀 수, 모의 취업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나며,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 동거 여부와 동거하는 부모 수 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가구 소비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족 부양 가구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혜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 지인을 통해서 얻으며, 정보 접근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취학 자녀 가구는 다른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때문이다. 교육·보육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나, 구성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이었다(약 17%). 교육·보육비 중 미취학 자녀는 보육비, 중고등학생 자녀는 사교육비, 대학생 자녀는 공교육비가 많았다. 또한 사적 이전지출은 대학생 자녀 가구가 미취학 자녀 가구보다 약 2.5배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수와 모의 취업, 가구 소득이 모두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규모와 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령 단계 별로 미취학 자녀 양육 가구는 양육하는 자녀가 많거나 모가 취업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때 양육수당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은 늘어났다. 소비 측면에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자녀가 많거나, 소득수준이 낮을 때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이 줄어들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며,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소비지출이 적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이며 대신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부 보조금-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비지출 면에서,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식료품비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은 많고, 교육·보육비는 작았다. 동거 부모 수가 많을수록(1명→2명) 소득과 조세, 소비가 더 많은데, 동거 부모 수가 많으면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국가유공자보조금 등-을 더 많이 수혜하고 있었다. 또한 동거 부모 수가 많을수록 보건·피복비는 더 많이 지출하고 교통·통신·오락비는 더 적게 지출하였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과 부양 수준은 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모에 대한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규모가 작은 가구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등의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소득 취약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비 규모도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또한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았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자녀는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부모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활비 마련 방법이 무엇인지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 부양 형태나 수준이 다르며,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부양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부모가 아플 때는 의료비 자체보다 간병에 드는

비용이나 직접 간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주거와 관련하여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사례연구 대상 가구는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부모보다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적(trade-off)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였다. 이때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 대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자녀 양육에 방점을 두고,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만약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현행 가족 부양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 정책이 부모 부양 정책보다 중요성이 높고(1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5.7점, 4.3점), 현재 정책 이행 실태도 높다고(잘 이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38%, 18%) 평가하고 있었다.

가족 부양의 공사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모두 가족의 역할이 높는데, 향후 정책 방향성은 부모 부양의 국가 분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 정책은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라 국가의 분담 수준이 다른데,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국가의 분담 수준이,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는 가족의 분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 부양

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한정된 결과이다. 가족 부양에 대한 비경제적인 지원은 부양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가족 부양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성으로 1) 생애 주기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 2) 가족 부양의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 3)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은 가족,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1) 자녀의 학령 단계가 낮을수록 국가의 책임 강화, 2) 자녀 출산 순위에 따른 욕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3)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양 부담 욕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완화 후 폐지, 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검토, 3)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주요 용어: 가구 소비지출, 자녀 양육, 부모 부양, 조세 정책, 이중 부담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애 주기에 따라 연령 집단을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할 경우,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대표적인 부양 대상 집단(피부양 집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 피부양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강조되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자녀 양육 가구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육아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0~5세 영유아의 시설 보육료 지원을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초등학생은 정규학교 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소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주고,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정년 연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후기 노인에 대한 생애 말기 케어 지원 등을 통해 그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졌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가족 부양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정부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을 시설 보육에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고,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확대 개편(동거주택 상속공제 수준 상향 조정,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개편)하는 등 가족 부양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공사 부양 체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1]은 2011년 우리나라 국민 연령별 1인당 평균 사적 이전 금액과 공적 이전 금액이며,<sup>1)</sup> 우리 사회에서 청장년층이 공적·사적 이전 체계를 통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부양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화폐적 가치로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sup>2)</sup>은 모두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며 이들을 부양하는 집단은 이중 부담(dual burden) 혹은 돌봄의 구축 관계(crowding out)를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 집단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도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 복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적·사적 부양 체계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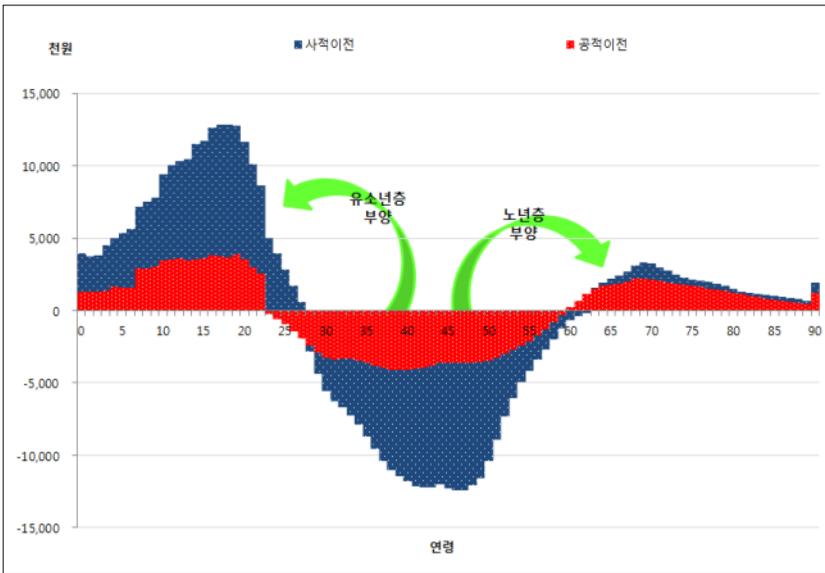
그러나 가족 부양자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정확한 실

---

1)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사적 이전소득을 받은 금액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적 이전지출 금액을 제외한 값임.  
2) 가족 부양 메커니즘에서 3세대(자녀-부모, 성인 자녀-노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 부양 대신 노부모 부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이하 본 연구는 필요에 따라 부모 부양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혼용하고자 함.

태와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가계의 예산 범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 규모 결정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지출 규모 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장년 세대가 부양 대상 중 누구에게 우선 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자녀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 수준이 달라지므로, 국가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가구 단위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 대상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림 1-1] 연령별 1인당 평균 사적 이전 및 공적 이전



주: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1인당 평균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규모를 의미함.  
 자료: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2014). p. 99 [그림 4-12] 연령별 생애 주기 재배분 체계에서 2011년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만으로 재구성함.

본 연구는 가족 부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년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 및 특성과 함께 가구 내 조세 지출과 수입 구조(정책 수혜와 납세 실태 등)를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정책 과제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가족 부양은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역할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대표적인 피부양 집단인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모두 포괄하여 가구의 소득과 소비 등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관심 대상 가구 혹은 인구 대상별로 구분하여, 자녀 양육 가구 또는 노부모 부양 가구에 한정하여 단편적으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복지 수혜, 납세)를 파악하여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중심으로 하되, 가능하면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경 등(2015, p. 34)은 가족 부양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자녀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실제로 유소년층과 노년층 부양은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지급 등의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지(걱정거리와 문제점 상담, 따로 사는 가족과의 왕래, 연락 등)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청소와 세탁, 장보기 등의 도움, 병원 동행, 간병 등)이 있다. 가족 정책 방향이 과거에는 경제

적인 지원에 집중되었던 반면,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부양 의식도 증가하고 있다(김혜경, 박천만, 2010; 김종남, 2014; 김유경, 2016; 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유계숙, 김제희, 2017). 김혜경, 박천만(2010)에 따르면, 정서적 부양 의식이 수단적 부양 의식(경제적 지원 등)보다 높게 나타나 장기요양, 기초연금 등의 주요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서적 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 부모 세대에서는 정서적 지원을 가장 좋은 노부모 부양 방식이라고 인식하였으며(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베이비붐 부모 세대의 부양 기대는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 순으로 나타났다(김종남, 2014). 그러나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 분석은 경제적인 지원에 속한 것이며, 정서적인 지지와 도구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양적 자료를 통한 실증 분석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가족 부양 가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이용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는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부양 실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녀 양육 가구는 대학 재학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이다. 자녀 양육 가구와 관련한 상당수의 연구는 0~5세 영유아,<sup>3)</sup> 즉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분석하거나 초중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것은 과도한 양육비가 주요 원인이며, 양육비의 대부분은 교육비가

3) 이하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자녀의 범위를 대학 이하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를 ‘대학생’까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b, p. 260)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 범위를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자녀 부양 의식을 반영하여 미취학 자녀나 초중고교생이 있는 가구뿐 아니라 대학생이 있는 가구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가구(부모 동거 부양 가구)’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가구(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경제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며, 전통적인 가구 형태인 확대 가구에서 사적 부양 체계가 더욱 잘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2016, p. 28)에 의하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8.5%, ‘자녀 또는 친척 지원’ 28.6%, ‘정부 및 사회단체’ 12.8% 순이었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 생활비 지원자와 동거하고 있는 지를 구분한 결과, 48%만이 함께 살고 있으며 52%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 가구의 범위를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비록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사적 이전지출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구도 포함한다.

넷째, 부모 부양 지원 정책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다룬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그 경로가 서로 달라서,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표 1-1 참조).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대상은 부모지만,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은 부양 책임자인 자녀와 노부모 본인으로 구분된다. 자녀 양육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당수가 18세 미만이므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 양육 정책의 대상은 친권이 있는 부모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sup>4)</sup> 그러나 부모 부양 정책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직접적인 형태 외에도, 정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의 간접적인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에 모두 포함한다. 또한 부모 부양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이다.

〈표 1-1〉 가족 부양 정책별 정책 대상 및 실질 수혜자

구분	정책 대상	실질 수혜자	비고
자녀 양육 지원	부모	자녀	
노부모 부양 지원	자녀	노부모	직접 지원
	노부모	노부모	간접 지원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법적 의미, 가구의 소득과 지출 특성,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다. 현행 법령상에서 가족부양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구 유형별 혹은 생애 주기별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에 따른 정책 지원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

4) 부양에 대한 법적 검토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대학생은 독립적인 법적 행위가 가능한 나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이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사교육비 감소 대책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노인 대상 정책인 기초연금과 경로우대 등의 제도와 함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부양기간, 이중부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3장은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가족 부양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정책 분석은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현행 법령에서의 가족 부양 의무를 검토해 보고, 한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복지포(<http://www.bokjiro.go.kr>),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한다. 또한 조세법을 통한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 가족 부양 가구를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과 소비, 조세 규모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 단계, 자녀 수, 모의 취업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구 유형별 소득과 소비, 조세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 동거 여부와 동거하는 부모 수 등에 따른 특성을 점검할 것이다.

제5장은 가족 부양 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자녀의 학령 단계, 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례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조사 내용은 가족 부양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적 접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등도 포함하고자 한다.

제6장은 가족 부양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4장의 2차 자료 분석(양적 접근)과 제5장의 사례 조사(질

적 접근) 결과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장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힘으로써 마무리한다.

이상의 연구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구성 및 내용

서론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 등을 고려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지원 방안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내용 소개		
	연구 내용	연구 자료/모형	연구 방법
문헌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li> <li>• 가구의 소득과 지출 특성</li> <li>•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등</li> </ul>	법령, 국내외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li> <li>• 양적 및 질적 분석</li> <li>• 사례 조사</li> <li>• 전문가 조사</li> </ul>
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li> <li>• 조세법의 가족 부양 지원</li> </ul>	복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조세법 등	
부양 실태 및 요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 지출과 조세를 통한 부양 실태 파악</li> <li>• 가족 부양 가구의 부양 부담과 정책 욕구 파악</li> </ul>	한국복지패널조사 심층 면접 자료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부양 정책에 대한 평가, 방향성, 개선 방안 등 파악</li> </ul>	전문가 설문지	
결론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제 2 장

#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제6절 소결



##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 1. 가족의 부양 의무

가족은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민법 제975조)에 대한 생활비의 지급, 현물 제공 등 경제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은 사적 부양(사법상 부양)과 공적 부양(공법상 부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부양이라고 하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부양을 의미한다. 공적 부양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규정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부양은 이론상 두 가지로,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 의무'와 생활 부조의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 의무'이다.

#### 가. 가족의 범위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가정이라고도 한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로서 개인과 더불어 법률행위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가족 관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기본적인 가족으로 설정하고, 덧붙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보고 있다. 즉, 가족은 혈연 및 혼인, 입양 등으로 맺어진 2촌 이내의 친족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보다는 작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보고 있다.

## 나. 1차적 부양 의무

1차적 부양 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다(민법 제974조 제1호). 다시 말해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로 현실적인 공동생활에 근거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부양은 공동생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친자에 대한 1차적 부양 의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이 직계혈족 간 부양 의무를 1차적 부양 의무로 보지만, 1차적 부양 의무는 ‘현실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분가한 자녀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년 자녀는 1차적 부양 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19세에 도달하여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등 독립적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19세의 성년 자녀는 2차적 부양 의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부양 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 다. 2차적 부양 의무

2차적 부양 의무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의된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민법 제974조 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이유는 친족 간의 부양이 공적인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구도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친족을 부양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5)</sup> 부양 의무를 제공해야 하는 친족이 여러 명이면 우선 당사자들 간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동법 제976조 제1항 전단),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여러 명을 공동 부양의무자로 선정할 수 있다(동법 제976조 제2항).<sup>6)</sup>

분가한 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은 2차적 부양 의무에 해당한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와 분가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우선 부양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2 제2항 7호)’<sup>7)</sup> 공적 부양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이러한 가치를

5)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 의무이다(대판).

6)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7) 민법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부양의 내용과 수준

부양의 내용은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식주에 필요한 현물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민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

### 가. 부양의 수준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생존권을 헌법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8)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며,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최저 생활 보장 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동법 제2조 제7호 및 8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종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동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내용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8조).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2조). 의료급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2조의3).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생활비의 지급 등 경제적 급여를 제공하는 부양의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양 대상별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데<sup>9)</sup> 발생하는

9) 보호는 주로 신체에 대한 보호이고, 교양은 정신의 발달을 꾀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정신·육체 모두 건전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임. 여기서 자녀의 보호·교양은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비용의 부담을 수반한다는 뜻은 아님(김주수, 1992).

28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비용, 즉 돌봄·교육·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 주거, 교육(오락·문화 포함), 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부양 금액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17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6만 1172원, 2인 가구 112만 5780원이다. 여기에는 교육비(오락·문화 포함), 주거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보장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많다.

〈표 2-1〉 2017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선정 기준	생계 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의료 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주: 1) 생계 급여액 =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2) 시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 의료 급여 선정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 지역, 물가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2인 가구 기준으로 168만 867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생애 주기 또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소비 구조의 변화 추이와 상이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일한 생애 주기라 하더라도 가구 유형이 다르면 소득·소비 지출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최홍철, 최현자, 2014, p. 95; Kolasa, 2012, p. 2)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가구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을 토대로 소득과 소비 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가구 유형별로 소득·지출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범식, 2011; 성혜영, 이은영, 2015; 여유진 등, 2015; 최홍철, 최현자, 2014). 여유진 등(2015)은 생애 주기와 가구 유형을 고려하여 2003~2011년 소득, 재산, 소비 구조와 행태를 분석하였다. 장년 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소득, 재산, 소비 구조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7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 청년 단독 가구가 청년 부부 가구로 전환될 때 재산이 대폭 증가하고 반대로 노인 부부 가구가 단독 가구로 전환될 때 재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김재호(2015)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 주기 관점에서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소득의 연령대별 상대적 불평등도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았다. 또 50~64세 중고령자 및 65~79세 노인의 근로 소득 상대적 불평등도도 2004~2014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시기 소득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소득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최홍철, 최현자(2014, pp. 116-117)는 생애 주기와 가구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애 주기를 16단계로 구분한 결과, 지출 양식이 생애 주기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 전의 자녀와 동거하는 40~59세 중장년 부부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급증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은퇴기 가구는 소비지출 중 생필품과 보건비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범식(2011, pp. 13-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울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 가구 유형, 소득 계층별로 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40대의 중장년 가구는 교육 관련 지출에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인 가구는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집중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성혜영, 이은영(2015, pp. 51-58)은 가족 생활 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자녀출산·양육기에 감소하다가 자녀 성년기까지 증가한 이후, 은퇴 시기인 노년 전기에 크게 감소함을 밝혔다. 반면 소비지출은 가족 형성기부터 자녀 학령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노년 전기에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득 패턴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가구의 소득은 생애 주기상 50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소득이 증가하는 미국과는 달리 폴란드는 25~30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며, 가구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losa, 2012; Deaton & Paxaon, 1994).

한편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삼아 더욱 심층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자녀 양육 가구, 노인 가구 등을 연령에 따라 세분하거나 소득, 가구 구성원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육비가 아닌 양육비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박종서, 2015;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 2013; 이성림, 2010; 한경남, 2010). 이성림(2010, p. 19)에 따르면, 연평균 자녀 양육 비용 중 39.9%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나머지 60.1%는 소비지출에 쓰여 자녀 양육비에서 소비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미혼 학업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 구조를 분석한 박종서(2015, p. 1)의 연구 결과, 저소득 가구에서는 2010년 이후 주거비의 비중이 교육비를 초과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실질 교육비 지출액은 상위 소득 가구가 하위 소득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2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지원 외에도 주거 지원, 세액 공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노인, 중고령 또는 베이비붐 세대 가구 등 연령 기반의 연구와 독신 또는 부부 가구 등 가족 구성원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지출 구조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부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또는 부담감의 정도 등 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 접근(박근수, 김태일, 2016)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 자녀가 함께 살

지 않는 노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적 이전지출, 반대로 노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성인 자녀에게서 제공받은 사적 이전소득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김지경, 2010; 강성호, 2011; 전승훈, 박승준, 2011; 김유경, 2016). 우리나라 부모 부양 가구의 부양비는 월평균 34만 8000원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3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64세는 15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부양 부담이 더 컸다. 또한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부양비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40세 이상부터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부담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경, 2016, pp. 75-76).

###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양육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생각하여 자녀 양육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2010, pp. 6-7). 0~17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 1명당 월평균 약 119만 원(2012년 기준)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김연우, 2013, p. 59), 1명의 자녀를 출생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데 2억 6204만 4000원(김승권, 2010, p. 6)을 지출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사교육비 등 높은 자녀 양육비가 지목되며(윤자영, 2010, p. 23),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생활 준비마저 위협받고 있다(김승권, 2010, p. 6).

본 절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양육비 규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1인당 월평균 0~5세 92만 원, 6~11세 105만 원, 12~17세 123만 원, 18세 이상 161만 원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김연우, 2013, p. 62). 이는 학령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정부 정책

도 이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본 절은 크게 취학 여부로 구분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파악한다.

## 1. 영유아<sup>10)</sup>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0~5세 영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비를 지원받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무상 보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무상 보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무상 보육이란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연령별로 정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이혜원, 2013, p. 12)이다. 이러한 무상 보육의 핵심인 시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해 살펴보면, 1991년 0~4세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해 도입한 정부의 시설 보육료 지급은 2006년부터 차상위계층 대상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0~2세와 5세 전체 소득 계층 전액 지원, 2013년 0~5세 전체 소득 계층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어 보편적 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표 2-2 참조).

영유아 대상 보육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양육수당은 시설 보육료보다 늦은 2009년 7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의 0~1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0~1세에게 10만~2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2013년부터 0~5세 전체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여 지

10) 영유아에 대한 연령 범위는 대부분 0~5세이나 일부 연구에서는 0~6세로 분석하기도 함. 또한 연구 대상을 세분하여 영아(0~2세)만 혹은 유아(3~5세, 3~6세)로 한정하여 분석하기도 함. 그러나 최근의 보육 정책은 0~5세를 대상으로 시설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영유아의 연령을 0~5세로 봄.

3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급하고 있다(표 2-3 참조).

이러한 보육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영유아 보육 지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전국 단위 조사가 실시되면서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정책의 효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주로 가계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출산을 제고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김은정, 이해숙, 2016, p. 19).

〈표 2-2〉 영유아 시설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변화(2009~2017년)

연령 연도	0~2세	3~4세	5세
2009~2010년	- 소득 하위 50% 이하, 전액 지원 - 소득 하위 60% 이하, 60% 지원 - 소득 하위 70% 이하, 30%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2011년	소득 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2012년	전 계층, 전액 지원	소득 하위 70%, 전액 지원	전 계층, 전액 지원
2013~2017년	전 계층 전액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표 2-3〉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변화(2009~2017년)

연령 연도	0~1세	2세	3세	4~5세
2009년 7월 ~2010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월 10만 원			
2011년	월 가구 소득(4인 기준) 173만 원 이하, 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 2세 월 10만 원			
2012년	월 가구 소득(4인 기준) 180만 원 이하, 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 2세 월 10만 원 [농어촌] 농가 소득 연간 4000만 원 미만,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의 45% [장애 아동] 소득 무관, 0~2세 월 20만 원, 3세~취학 전 5세 월 10만 원			
2013~2017년	전 계층, 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 2~5세 월 10만 원 (단, 농어촌은 1세 17만 7000원, 2세 15만 6000원, 3세 12만 9000원, 장애 아동은 0~2세 20만 원, 3~5세 1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먼저 보육 정책은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김은정, 이해숙, 2016, p. 75-76; 박미경, 조민호, 2014, p. 260; 정수지, 박운현, 송지나, 김대웅, 이순형, 2016, p. 32)와 시설 이용료 외의 사교육비를 고려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이상록, 조은미, 2016, p. 154; 이해원, 2013, p. 24; 조운영, 2008, p. 58)가 공존한다.

또한 소득 계층별로 보육 정책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상록, 조은미, 2016, p. 155, p. 157; 이해원, 2013, p. 22), 연령별로 효과가 다르다는 점(김은정, 이해숙, 2016, p. 89; 이상록, 조은미, 2016, p. 17), 이용 시설의 유형(민간, 국공립)별로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해원, 2013, p. 20),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효과가 다르다는 점(김은정, 이해숙, 2016, p. 82)<sup>11)</sup>을 주장하고 있다.

양육(보육료) 지원 정책 목표 중 일·가정 양립 지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허남재, 석재은, 2011, p. 156; 최성은, 우석진, 2009, p. 93)이나 자녀 수, 가구원 수(최성은, 우석진, 2009, p. 93)에 따라 여성의 취업 제고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보육료의 지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다는 것(김은정, 이해숙, 2016, p. 105; 송헌재, 우석진, 2015; 서문희, 이해민, 2014; 조운영, 2008, p. 55),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허남재, 석재은, 2011, p. 151; 최성은, 우석진, 2009, p. 92)으로 확인되었다.<sup>12)</sup>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우 보육 지원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에 관계없이

11) 영아기 취업모 가구는 보육비 및 교육비가 1.3%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비취업모 가구는 1.24%포인트 감소함(김은정, 이해숙, 2016, p. 82).

12) 반면 김정호, 홍석철(2013)은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줌.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의 보육 지원 정책이 여성의 노동력 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은정, 이혜숙, 2016, p. 27)라고 해석된다.

보육 정책의 효과 중 출산율 제고 또한 연구자에 따라 긍정적이다(송헌재, 우석진, 2015; 민연경, 이명석, 2013; 유계숙, 2009; 이삼식 등, 2016; 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2016), 인구사회학적 계층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김은정, 이혜숙, 2016, p. 125), 보육료 지원과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다(김정호, 홍석철, 2013; 서문희, 2010) 등으로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sup>13)</sup> 또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분야의 체감도가 높지 않으며, 그로 인해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은나, 이소영, 오신희, 이재량, 2015, p. 309).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출산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둘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2016, p.143; 이삼식 등, 2016, p.219).

한편 보육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영향은 실제 출산율이 아닌 이상 자녀 수나 추가 출산 계획, 추가 출산 의향 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진정한 정책 효과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출생 자녀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이상 자녀 수와 실제 출생 자녀 수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이삼식, 최효진, 윤희식, 2015a, pp. 186-190),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

13) 출산율 제고를 측정하는 변수는 추가 출산 의사·계획을 주로 활용하며 합계출산율이나 출산 여부를 활용하기도 함.

세이므로 이러한 분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보육, 돌봄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저출산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돌봄 지원 정책 추진만으로 출산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이삼식 등, 2016, p. 120)가 있기 때문이다.

## 2. 취학 자녀의 양육 지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비<sup>14)</sup> 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사교육비가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 등(2012, p. 41)에 의하면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2017a, p. 5)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sup>15)</sup>는 37만 8000원이며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도 증가(2016년 기준 초등학교 30만 2000원, 중학생 43만 1000원, 고등학생 49만 9000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약 18조 1000억 원(통계청, 2017a, p. 4)으로, 국민총생산 1637조 4000억 원<sup>16)</sup>의 1.1%를 차지한다.

취학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2014년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이 시작되면서 취학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이 크

14) 사교육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보충적인 교육을 위해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임. 좀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비는 개인 과외비와 학원 수강료, 인터넷 강의로 등임.

15)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평균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이며, 학령 단계별로는 초등학교 24만 1000원, 중학교 27만 5000원, 고등학교 26만 2000원임(통계청, 2017a, p. 5).

16)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임(한국은행, 2017, p. 2).

게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그동안 영유아인 미취학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정책의 다양화와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김은정, 2017, p. 16)으로 평가된다.

초등돌봄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방과 후 교실’이 2010년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 대상은 2010년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 중심에서 2014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으로 전면 확대하였다(이삼식 등, 2016, p. 123). 그러나 학교의 초등돌봄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정책 대상을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으로 전환하였으며, 3~6학년은 학년 특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이삼식 등, 2016, p. 124).

2016년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23만 8480명이며(교육부, 2017, p. 5), 이 중 1~2학년이 87.3%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3학년 7.7%, 4~6학년 5%이다(이삼식 등, 2016, p. 126). 또한 교육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의 95%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84.0%),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89.9%), ‘여성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94.1%),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96.7%)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삼식 등, 2016, p. 128).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등록금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공교육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와 학원 수강 등에 드는 사교육비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정영수, 2008, p. 17). 2007년 학생이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 종합전형)를 도입하였으나, 사교육비 완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사교육 없는 세상, 2017. 8. 4. 인출;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이희숙, 2006). 여기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이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교수학습평가 개선 방안'과 '입학전형 개선 방안' 등 학생부 중심 입학 전형 체제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안선희, 2015, p. 47).<sup>17)</sup> 그 외에도 '사교육 수요 대체(EBS 활용 방안), 사교육 관리·규제, 사회 문화 풍토 개선 방안'도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 과정이 아닌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방안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안선희, 2015, p. 4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2013~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미국 다음이다(OECD, 2015, p. 307). 2001~2010년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 7%, 사립대 5%로, 연평균 물가상승률 3.2%보다 높은 수준이며(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희, 2013, p. 113), 2007년 한나라당이 선거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한 이후, 대학 등록금

17) 노무현 정부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중 확대, 이명박 정부는 비교과를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박근혜 정부는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학생부 중심 입학전형 체제 구축이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부담 완화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등록금 감면 형태인 국가장학금 정책과 간접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형태인 대여 학자금으로 구분된다(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휘, 2013, p. 100). 국가장학금은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도입하고, 이어서 2009년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금 신설, 2011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을 신설하였다(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휘, 2013, p. 114). 이어 2014년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여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자를 ‘대출 즉시’ 납부하도록 한 기존의 일반 상환 학자금 제도를 보완하여 ‘졸업 등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때’ 납부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든든학자금 제도)’를 2010년 도입하였다(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휘, 2013, p. 114).

##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 1. 노부모 부양에서 공적 역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이며,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주를 이루었다. 노부모가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대표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해 대가족제도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시는 노부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대가족의 구심점이었으며, 동거 부양이 당연한

시대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어 노부모는 자녀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붕괴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노부모의 부양 형태는 동거 부양이 아닌 급여 부양의 형태로 바뀌었다. 노인 부부 또는 노인 혼자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1998년 41.7%에서 2014년 67.5%로 증가한 반면, 자녀 동거 가구는 같은 기간 53.2%에서 28.4%로 감소하였다(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p. 68; 정경희 등, 2014, p. 104).

대가족제도가 유지되던 시대에 가족의 부양은 가족 내부에서 책임졌다. 그러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어 가족 부양을 가족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국민 개개인의 부양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주에서 이탈한 노인 부부 가구·1인 가구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 즉 공적 부양은 여전히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적 부양이 우선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가족 단위 감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점차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6%이며, 자녀 또는 친척 지원 23.0%, 정부 및 사회단체 10.4%, 기타 0.1%로 나타났다(통계청,

42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2015b). 이 중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소득 재원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 54.4%, 재산 소득 11.7%, 연금·퇴직금 27.6%, 예·적금 6.3%이다(통계청, 2015b).

현재 노인 가구의 3분의 2는 자력으로 생활하고 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가구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노인 가구의 최대 3분의 1만<sup>18)</sup>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향후 노인 가구의 최대 3분의 2는 가족이나 정부의 부양이 필요한 가구가 될 수 있다.

<표 2-4>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2015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비율(%)	66.6	23.0	10.4	0.1

자료: 통계청. (2015. 11. 26.).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p. 14.

노인 부부 가구의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는 연간 1013만 2020원이다.<sup>19)</sup> 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의 수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사업 참여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적 이전 등 다른 방식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인 가구의 기초연금 월 수급액(2017년 4월 기준)은 32만 9680원이며, 연간 수급액은 395만 6160원이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수당이 월 22만 원(공익형 기준)이며, 통상 참여 기간도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부부가 모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연간 396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양자를 합산하면 연간 791만 6160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인 가

18) 노인 가구의 66.6%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54.4%는 근로·사업 소득이 주된 재원임.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중단되고 다른 소득원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임.  $2/3(66.6%) \times 45.6(100\% - 54.4\%) \approx 1/3$

19) 최저생계비 월 84만 4335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연간 1234만 7880원의 적자가 발생한다.<sup>20)</sup> 자력으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는 노인 가구는 국가의 공적 부양 또는 자녀의 사적 부양이 개입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 2. 노부모 부양 지원 제도

부양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7. 4. 29. 인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지 등을 제공해주는 때에도 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미혜 등, 2006, pp. 619-620).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이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개인 또는 가구)’을 대상으로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양 부담의 경감’이라는 정책의 목표 달성만을 고려한다면, 정책 대상을 기준으로 간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과 직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으로 이분화 할 수 있다. 즉 ‘노부모(노인)’에게 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과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공적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공적 노인복지정책이 해당하며,<sup>21)</sup> 후자에는 세금 감면, 노인 주택 지원 사업, 부양가족 연금액 등, 공적 지원 정책을 통해 사적 부양을 지지하는

20) 보건복지부 2인 가구 월 168만 867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최저생계비는 2026만 4040원임.

21) 노인복지정책은 이 외에도 소득, 건강, 고용, 여가 문화, 주거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 간접적 노인 부양 지원 정책으로 세부 정책을 다루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좀 더 자세한 정책 현황 및 분석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들이 해당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효 사상,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노후 생활 및 간병 등에 대해 자식의 책임이나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김나래, 2016; 송다영, 2004; 정진경, 황정임, 김영자, 이민영, 2002). 이에 따라 직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부양가족의 의무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학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반면, 간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은 1차 목표가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보다는 노후 소득 보장, 건강한 노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과성 및 평가와 관련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효과성은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 상이하나, 이러한 공적 체계가 노부모 부양 부담 완화에는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보장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수익률 또는 소득대체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권문일, 2000; 김희삼, 2011; 석상훈, 2010; 석재은, 김용하, 2002; 황남희, 2016).

권문일(2000)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빈곤 완화 효과, 수익, 한국의 소득대체율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미성숙으로 노후 빈곤 완화 역할이 미약하므로 추가적인 사적 부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석재은, 김용하(2002, p. 98) 또한 연금제도 유무에 따른 생애 소득 크기 비교, 수익비 분석, 소득대체율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성숙될수록 소득대체율은 개선되나 개인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석상훈(2010)은 가계조사를, 김희삼(2011)은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일정 정도 노인 빈곤을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소득 보장 수준 향상이 아닌 노인 빈곤을 감소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황남희(2016, pp. 30-33)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의 수급 현황 및 소득대체율, 수급률을 분석하여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 부양 체계 강화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동일하지 않고, 효과성 지표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간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인 공적연금제도 등은 노후 소득 보장을 완화하는 데 충분치 않으며, 공적 체계의 강화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직접적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23)</sup>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 의한 요양이 이루어질 때는 가족요양비 제도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서비스와 휴식지원을 위한 단기보호서비스도 제도화하고 있다.

22)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55세 이상 등으로 다양하며, 효과성 지표 또한 수급률,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빈곤갭 등으로 다름.

23)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으로 하는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도 도입 이후, 등급 인정자는 2009년 25만 8476명에서 2015년 46만 7752명으로 1.8배가량 증가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015), 2015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의 7.1%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라는 맥락 하에 다양한 정책적 개편 방안 및 정책제언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찬우, 2015; 이윤경 등, 2012, 2013, 2016; 한은정, 이정면, 조정완, 김도훈,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치매 가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2013년 등급 인정 점수를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전환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반면 직접적 노인 부양 지원 정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우 드문 실정이며, 부양가족의 의무와 기준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학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김인유(2017, p. 361)는 민법상 부양 제도 및 노부모 부양을 근거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효행장려법 등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사적 부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운(2004, p. 205)은 사회보장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또는 가정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를 민법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나래(2017, pp. 297-304)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부양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 부양 관련 국내 법안과 외국 법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선택 가이드 제시 등의 공적 부양 개선점과 노부모 부양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한 민법 개정, 공공 후견인 제도 확대 등 사적 부양 체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으며,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 1. 부양 가치관

우리나라의 가족 부양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부모 부양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혜경, 박천만, 2010; 석재은, 2009; 유계숙, 김제희, 2017, 김유경, 2016). 특히 부양의 사회화 의식이 강해지면서, 경제적 부양 외에 신체적, 정서적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박천만(2010, pp.187-188)이 대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적 부양 의식(부모 상담, 교류, 건강에 신경 등)이 수단적 부양 의식(경제적 지원, 부양 요구 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년층 부모 세대에서는 정서적 지원을 가장 좋은 노부모 부양 방식이라고 인식하였으며(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pp.471-472), 베이비붐 부모 세대의 부양 기대는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종남, 2014).

통계청(2016, p. 8)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또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족이 져야 한다는 응답이 2006년 67.3%에서 2014년 23.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14.9%에서 35.7%로 증가하였다.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2016년 52.6%로 상승한 반면, 자녀가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52.9%에서 47.4%로 감소하였다.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7)가 부모를 직

접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 4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년층의 부모 의료비 부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높은 책임 의식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본인의 노후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73.9%), 싫다(61.6%), 당연하지 않다(60.2%)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이는 현재의 중년층이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정부와 사회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 소득 이전은 자녀로부터의 사적 소득 이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의 노후 보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소득 이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삼, 2006; Kim, 2010).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2014, pp. 95-101)에 의하면, 청장년층은 공적·사적 부양 체계를 통해 유소년층(자녀)과 노년층(노부모)을 부양하는 세대이며, 특히 유소년층은 사적 부양 체계, 노년층은 공적 부양 체계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노부모 부양 역할 강화는 가족의 기능 약화를 가속화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복지 수요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김희삼, 2015).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서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김혜경, 박천만, 2010; 김유경, 2016).

한편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생애 과정에서 비독립적 또는 독립적 자녀를 지원하면서 동거 또는 비동거 부모를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며, 외국에도 유사한 연구들(Ingersoll-Dayton, Neal, Hammer, 2001; Taylor, 2013)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서구와 비교해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전혜성, 김미영, 2012; 박근수, 김태일, 2016).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 생활, 여가 생활과 관련한 노후 준비 수준이 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박근수, 김태일, 2016). 이는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정서적 여유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심층적으로 행태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 사교육비 지출의 상호 영향과 이중 부담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지경, 2010, p. 24). 이에 따르면,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구주 또는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5.3%였고, 해당 가구의 연평균 지원금은 159만 4000원 정도였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액은 연평균 소득의 평균 4.7%인 반면 월 생활비의 17.5%(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14.5%(대학생 자녀)를 차지하는 자녀 사교육비는 가족 부양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에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놓고 경제적인 우선순위를 매기게 된다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삼식 등(2013)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없는 경우가 37.0%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경제연구원(2007)에서 사교육비로 인해 줄어든 지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노후 대비(저축, 재테크)가 52.7%로 가장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 부양 대상별 부양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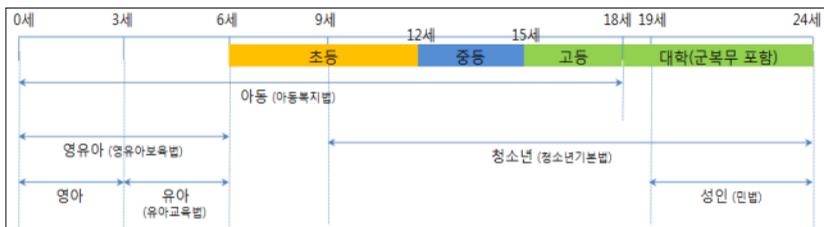
### 가. 현행법상 자녀 양육 기간: 자녀의 연령 기준

자녀의 양육 기간은 부모의 부양 의무 면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913조). 이 규정은 친권의 근본 취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19세에 달하면 성년이 되며, 이때부터 법률상 온전한 행위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sup>24)</sup> 즉 이때부터 본인의 의사와 책임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보호·교양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률이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정의 책임을 담고 있는 법은 민법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기본법은 9~24세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 법률상 연령 기준에 따른 자녀 부양 기간



24) 미성년자는 19세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조, 5조).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고, 좀 더 세분하여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4항).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 의무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6조 제4항).

민법상으로는 자녀가 19세에 도달하면 보호·교양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24세까지 자녀의 자기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 의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상으로는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는 보호·교양 의무를 여전히 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학령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4세가 현실적 보호·교양 기간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노부모 부양 기간

노부모 부양 기간이나 부양 시작 시기에 관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노인 관련 법인 노인복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 없이 개별 조문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별 대상에 대한 연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65세 이상이다.

먼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 제1조의 2, 5호), 정부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 또한 65세 이상은 정부의 수송 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를 명문화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또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동법 제27조),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그 보호자를 관계 공무원이나 노인 복지 상담원이 상담·지도하도록 조치하고, 65세 이상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면 노인 주거 복지시설 또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위탁)토록, 65세 이상으로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항상 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면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 입소(위탁)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노인 복지 주택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5〉 노인복지법상 노인 복지 서비스별 부양 대상 연령

구분	노인 복지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학대(제1조의 2), 생업 지원(제25조), 경로 우대(제26조), 건강진단 등(제27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60세 이상	노인 복지 주택 입소(제33조의 2)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공제에서 70세 이상에 대해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0조 제2항). 이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한편 노부모 부양은 노부모의 상태와 성인 자녀의 부양 여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양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령상 노인이라 하여 바로 부양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노인 가구가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노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지,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사회는 노부모 부양 시작 기간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 다. 자녀 부양(양육)과 노부모 부양 의무의 중첩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는 연령 집단은 청장년이다. 평균적인 가족 부양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 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녀 부양 의무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자녀 부양 기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평균 30세에 결혼하고 평균 1.8명의 자녀가 있다.<sup>25)</sup> 출산 연령은 첫째 자녀는 31세이며 둘째 자녀는 33세이다. 기혼 여성이 둘째 자녀가 취업하여 독립하기 이전(23세)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56세까지, 그리고 자녀가 초혼을 하기 전(30세)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62세까지 자녀를 부양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혼수까지 지원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본인들의 노후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표 2-6〉 한국 여성의 출산 종결까지의 평균적 삶

구분	취업 <sup>1)</sup>	초혼 연령 <sup>2)</sup>	첫째 자녀 <sup>3)</sup>	둘째 자녀 <sup>3)</sup>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sup>4)</sup>
연령, 출생아 수	24세	30세	31.2세	33.0세	1.75명

주: 1) 대학 학령기는 2015년 기준으로 18~21세,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0.4개월,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1.0개월임.

2) 2016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79세, 여성 30.11세임.

3) 2015년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첫째 자녀 31.20세, 둘째 자녀 33.01세, 셋째 자녀 이상 34.73세임.

4) 2015년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이며, 기혼과 미혼 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보다 높음.

자료: 1) 통계청. (2015. 7. 23).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2) 통계청. (2017. 3. 22.).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3) 통계청. (2016).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8. 2. 인출.

4)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b).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미혼 여성은 제외하고,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균 출생아 수임. 따라서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보다 높음.

기혼 여성은 자녀 양육뿐 아니라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도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 연령은 53세로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 60~65세<sup>26)</sup>보다 이르고,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은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며 일을 한다. 2016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016, p. 29)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42.3%가 공적연금<sup>27)</sup>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여 55~79세의 고령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 원에 불과하여,<sup>28)</sup>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연령이 높은 이유를 생계비 마련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15년 생명표에 의하면, 여성의 기대여명은 85세이다.

따라서 청장년층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은 짧게 계산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71세부터 기대여명 85세까지의 차이인 15년이며, 길게 계산하면 노년기가 시작되는 65세부터 기대여명 85세까지의 차이인 21년이다. 즉 노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을 몇 세부터 보느냐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최대 21년을 부양하게 된다.

〈표 2-7〉 한국 여성 노인의 평균적 삶

구분	실질 은퇴 연령 <sup>1)</sup>	기대여명 <sup>2)</sup>
연령	70.6세	85.2세

주: 1)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이 남자 72.9세, 여자 70.6세임.

2) 2015년 생명표, 0세 기준으로 기대여명은 남성 79.0년, 여성 85.2년(전체 82.1년)임.

자료: 1) OECD. (2016). Effective Age of Retirement. <http://www.oecd.org/els/public-pensions/ageingandemploymentpolicies-statisticson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에서 2016. 10. 19. 인출.

2) 통계청. (2017). 생명표.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8. 2. 인출.

26) 국민연금 개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됨.

2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됨.

28)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면 더욱 낮은 금액일 것임.

이와 같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 기준으로 최단 기간은 40세부터 54세에 이르는 동안에, 최장 기간은 34세부터 54세에 이르는 동안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혼 여성은 <표 2-8>과 같이 40~54세에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해 15년 동안 고스란히 자녀 부양과 부모 부양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sup>29)</sup> 따라서 이중고를 겪는 사이에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2-8> 한국 청장년의 가족 부양 기간 계산 결과

청장년 연령	31세	40세	54세	63세
자녀 부양 기간	첫째 자녀 출산에서 둘째 자녀 혼인까지			
노부모 부양 기간	노부모 은퇴에서 사망까지			

주: 1) 한국의 평균적인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자녀 부양 및 노부모 부양 기간을 산출한 것임.  
 2) 노부모 부양 기간은 최소 기준임.

## 제6절 소결

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는 생애 주기 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중장년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다. 소비지출은 자녀와 동거하는 중장년 부부 가구는 교육비, 은퇴기 노인 가구는 생필품과 보건비의 규모가 컸다. 좀 더 심층적으로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가구, 노인 가구 등을 연령이나 소득, 가구 규모 등으로 세분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양육 및 교육비, 노인 가구는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최소 기준임. 최대 기준은 이중 부담 기간이 21년으로 확장됨.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무상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시설 보육료 지원과 가정 내 양육수당 지급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다. 취학 아동은 학령 단계별 특성에 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초중고교생의 방과 후 돌봄, 공교육 정상화, 대학생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가족 규모 축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점차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노부모 지원 정책은 공적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부모 지원을 통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와 노부모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세금 감면, 노인 주택 지원 사업, 부양가족 연금액 등 사적 부양을 지지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원 제도의 구분에 상관없이 노부모와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 지원 정책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반 정책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양 대상별로 부양 기간을 살펴보면, 민법상으로는 자녀가 19세에 도달하면 보호·교양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24세까지 자녀의 자기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 의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교양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부모의 부양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노인복지법에의 개별 조문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별 대상 연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65세 이상이다. 또한 소득세

법은 종합소득공제에서 70세 이상에 대해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0조 제2항).

한편 현재 청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청장년층의 이중 부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문헌의 주요 수치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평균적인 기혼 여성은 40~54세에 약 15년 동안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장년층의 이중 부담 기간 중 부양 대상별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는 추후 이루어지는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3 장

##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현황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 3

##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 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을 자녀 양육 지원과 노부모 부양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은 조세법에 규정된 정책 현황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 1.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강화

사회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정책 환경도 달라진다. 이는 가족 부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양은 기본적으로 가족, 즉 친족 공동체의 책임이지만 사적 부양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적 부양이 개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는 2가지 유형의 부양 제도만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초적인 생존권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상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등장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육 부담 경감, 노후 생활 지원 강화 등 직간접으로 가계의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령 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가계 내·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개별 가계의 자율에 맡겨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부양 부담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1).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 지침”이며, 정책의 내용과 유형 및 대상자 등에 따라서 그 정책 목표가 단일할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권기현, 2010). 비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유소년층의 인구 자질 향상과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차적으로 개별 가계의 부양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세부 정책들 중 개별 가계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는 정책이라면 모두 부양 지원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2.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부양의 형태는 동거 부양과 급여 부양이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부양은 당연히 동거 부양이며 미성년 자녀 양육은 대부분 동거 부양이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부양하는 것은 급여 부양에 해당하며, 분가한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양 지원 정책은 개인 단위 또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육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분명하지만, 노부모에 대한 지원은 성인 자녀를 거치지 않고 노인 개인 또는 가구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부양 지원 정책인지 단순한 복지정책인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면 성인 자녀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부양(양육) 지원 정책임은 분명하다. 성년 자녀와 노부모는 법률상 행위 능력 여부, 동거·비동거 여부, 직·간접 여부에 따라 급여가 귀속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sup>30)</sup>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100세 부양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 외 노부모 부양 지원, 효행 장려 세제 도입(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만을 노부모 부양 정책으로 본다면, 정책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정책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노인 가구의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결국 성인 자녀의 부양 책임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부양(양육) 지원 정책으로 본다.

30)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①사업 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 1.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인 복지로(<http://bokijiro.go.kr>)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국가의 다양한 정책 중 총 98개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속한다. 수적으로는 보호 돌봄 기타 정책이 33개(3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양육 24개(24.5%), 교육 19개(19.4%), 의료 19개(19.4%), 주거 3개(3.1%) 등의 순이다. 그리고 양육 지원 정책은 양육과 돌봄에 역량을 집중했고,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의무와 결부되어 있다.

〈표 3-1〉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정책 분류

(단위: 개, %)

구분	계	양육(생계)	주거	의료	교육 (오락문화 포함)	보호 돌봄 기타
정책수	98	24	3	19	19	33
비율	100	24.5	3.1	19.4	19.4	33.7

주: 지원의 특성이 여러 유형에 중복된 경우에도 하나의 주된 유형으로 분류.

자료: 복지로(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i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가. 양육(생계)

양육(생계) 부문의 정책은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의 가정 또는 시설 보육을 위한 정책 사업을 포함하여 24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2〉 자녀의 양육(생계)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입양 비용 지원	○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장애 아동 수당	○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출산 육아기 고용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사업	○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급식비	○				
방과후보육료 지원	○				
학교 우유 급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			○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 사업	○				
양곡 할인	○				

주: ○ 해당, △ 부분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나. 주거

주거 부문의 정책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 등 취약 계층 한부모의 시설 보육을 위한 정책 사업 위주로 3개의 현물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66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3-3〉 자녀 양육의 주거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다. 의료

의료 부문의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영유아·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위주로 19개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금성 또는 서비스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4〉 자녀 양육의 의료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	○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	○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				
어린이 건강 보호 종합 대책 지원 사업					○
발달 재활 서비스			○		
언어 발달 지원 사업			○		
입원 격리 치료 명령 결핵 환자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의료급여(요양비)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		
정신보건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포함)					○

주: ○ 해당, △ 부분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라. 교육

교육 부문의 정책은 고교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 위주의 19가지 정책 사업이 있다. 지급 형태는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다양하다.

〈표 3-5〉 자녀 양육의 교육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사랑의 그린PC 보급		○			
아동 발달 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통합 문화이용권				○	
고교 학비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운영 지원					○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
국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
긴급 복지 교육 지원	○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온라인 정보화 교육			○		
청소년 국제 교류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마. 보호·돌봄·기타

보호·돌봄·기타 부문의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 사

업 위주로 33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기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3-6〉 자녀 양육의 보호·돌봄·기타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취약 위기 가족 돌봄 지원(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		
모성 보호 육아 지원(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
보육 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운영 지원)					○
육아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	○		
초등돌봄교실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		
지역 아동센터 지원			○		
청소년 활동 지원					○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 쉼터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		
아동 안전 지킴이					○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지원					○
중앙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운영 지원					○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
청소년 특별 지원	○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	○		○
WEE 클래스 상담 지원			○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지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청소년 전화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 기관 운영					○
알코올 상담 센터 운영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2. 노부모 부양 관련 정책

〈표 3-7〉은 현재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 중 총 55가지 정책과 노인(노부모) 부양 관련 정책이다. 수적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이 15개(27.3%)로 가장 많고, 돌봄 기타 14개(25.5%), 주거 12개(21.8%), 의료 10개(18.2%), 교육(오락문화 포함) 4개(7.3%) 순이다. 교육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7〉 노부모 부양 관련 지원 정책 분류

(단위: 개, %)

구분	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오락문화 포함)	돌봄 기타
정책 수	55	15	12	10	4	14
비율	100	27.3	21.8	18.2	7.3	25.5

주: 지원의 특성이 여러 유형에 중복된 경우에도 하나의 주된 유형으로 분류.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가. 생계

생계 부문의 정책은 기초연금,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등 노인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 사업을 포함하여 15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다.

〈표 3-8〉 노부모 부양의 생계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기초연금	○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
고령자 다수 고용 지원					○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
아동 안전 지킴이	○				
국세 감면(34종 중 3종)	○				
긴급 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생계 지원, 장제비 지원	○				

70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3-8〉 생계 부문 지급 형태 구분(계속)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생계 급여(맞춤형 급여)	○				
양곡 할인	○				
지방세 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사업, 희망키움통장	○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나. 주거

주거 부문의 정책은 영구 임대주택 공급,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 노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을 위주로 12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물성 지원이다.

〈표 3-9〉 노부모 부양의 주거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에너지 바우처				○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사회 취약 계층 실내 환경 진단 개선 사업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			
에너지 취약 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바닥 시공 및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			
긴급 복지 주거 지원		○			
영구 임대주택 공급		○			
장기 전세 주택 공급		○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 현물 급여 주거 복지사업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다. 의료

의료 부문의 정책은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노인 의치 보철 등 노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을 위주로 10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급 형태별로는 현금성 또는 서비스 지원이 많은 편이다.

〈표 3-10〉 노부모 부양의 의료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		
노인 의치 보철(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		
생애 전환기건강진단(만 40세, 만 66세)			○		
시설 급여		○			
심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시범 사업					○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라. 교육(오락·문화 포함)

교육(오락·문화 포함) 부문의 정책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노인 여가 복지 지원 등 노인의 무위, 고독을 해소해 주기 위한 여가 활동 지원 등의 정책 사업을 위주로 4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급 형태는 서비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72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3-11〉 노부모 부양의 교육(오락문화 포함) 부문 지급 형태 구분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고령층 정보화 교육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여가 복지 지원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마. 보호·돌봄·기타

보호·돌봄·기타 부문의 정책은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등 취약 노인을 돌보기 위한 정책 사업을 위주로 14가지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급 형태는 현물, 서비스와 기타 등 고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12〉 노부모 부양의 보호·돌봄·기타 부문 지급 형태 구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기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		
재가 급여			○		
특별 현금 급여(가족 요양비)	○				
기타 재가 급여(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			
노인 복지 민간단체 지원					○
노후 설계 서비스			○		
독거노인 종합 지원 센터 운영					○
양로 보호(국가유공자 등)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			
장제 급여	○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경로 우대 제도				○	

주: ○ 해당.

자료: 복지포(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 15. 인출하여 정리.

### 3. 정책 예산 현황(2015년 기준)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가운데 자녀 양육 또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예산은 25조 5933억 원이며, 이 중 영유아 관련 예산은 12조 2392억 원(47.8%),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1조 4673억 원(5.7%), 노인 관련 예산은 11조 8868억 원(46.4%)으로 자녀 양육 지원 예산이 노부모 부양 지원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다.

〈표 3-13〉 양육·부양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단위: 억 원, %)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양육)	주거	의료	교육	돌봄기타
합계	119[29]	255,933 (100.0) <sup>3)</sup>	133,095 (52.0)	646 (0.3)	11,747 (4.6)	43,135 (16.9)	67,309 (26.3)
영유아	49[16] (41.2)	122,392 (47.8)	24,887 (18.7)	- (-)	4,225 (36.0)	39,410 (91.4)	53,870 (80.0)
아동 청소년	33[ 1] (27.7)	14,673 (5.7)	168 (0.1)	- (-)	797 (6.8)	3,144 (7.3)	10,565 (15.7)
노인	37[12] (31.1)	118,868 (46.4)	108,040 (81.2)	646 (100.0)	6,725 (57.2)	582 (1.3)	2,875 (4.3)
계(%)	(100.0)	(100.0) <sup>4)</sup>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부양(양육)과 관련된 과제별 예산액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류함.

2) [ ]는 비예산 과제 수이며, 교육은 오락문화 포함임.

3) 전체 예산 대비 서비스 영역별(생계,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예산 비율.

4) 서비스 영역별 예산 대비 서비스 대상(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예산 비율.

자료: 이소영 등. (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로 2016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전체 인구 대비 5.3%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3.6%이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전체 인구 대비 18.4%이다. 따라서 전체인구 대비 정책

대상 인구 비율을 감안한다면, 즉 1인당 예산을 감안한다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예산이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예산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정책 영역별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예산 규모가 가장 많고(52.0%), 그 다음으로 돌봄(26.3%), 교육(16.9%), 의료(4.6%) 순이다. 한편 생계유지를 위한 예산(81.2%)과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57.2%)은 자녀보다는 노부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 예산(91.4%)과 돌봄 예산(80.0%)은 영유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영유아 관련 예산은 돌봄 기타 비중이 가장 높고(44.0%), 그 다음은 교육(32.2%), 양육(20.3%) 순이다. 과제별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예산이 8조 6281억 원(70.5%)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예산 1조 9128억 원(15.6%),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 제도 확대 개선 예산 5351억 원(4.4%) 순이다.

〈표 3-14〉 영유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단위: 억 원, %)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계	49[16]	122,392 (100.0)	24,887 (20.3)	0 (-)	4,225 (3.5)	39,410 (32.2)	53,870 (44.0)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및 기저귀 분유 지원(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중)	2	3,917	-	-	3,839	-	78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3	567	-	-	387	-	181
산모·산생아 도우미지원	1	493	-	-	-	-	493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	86,281	-	-	-	39,410	46,871
양육수당 지원 확대	2	19,128	19,128	-	-	-	-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확대	3[2]	1,228	-	-	-	-	1,228
수요자 중심의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시간 연장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	5[1]	1,773	-	-	-	-	1,773
취약 지역 국공립 보육 시설 지속 확충	2	720	-	-	-	-	720
민간 육아 시설 서비스 개선(평가 인종, 공공형 등)	4	938	-	-	-	-	938

31) 통계청. (2017). 2016년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9. 21. 인출.

〈표 3-14〉 영유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계속)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가족 친화 직장 사회 환경 조성(직장 보육 시설, 가족 친화)	8[5]	1,532	-	-	-	-	1,532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7[3]	463	408	-	-	-	55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 제도 확대 개선	6[2]	5,351	5,351	-	-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3[3]	-	-	-	-	-	-

주: 1)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부양(양육)과 관련된 과제별 예산액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류함.

2) [ ]는 비예산 과제 수이며, 교육은 오락문화 포함임.

자료: 이소영 등. (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역시 돌봄 기타 비중이 가장 높고(72.0%), 그 다음은 교육(21.4%), 의료(5.4%) 순이다. 과제별로는 취학 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가 7444억 원(5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 개발 지원(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등) 예산 2060억 원(14.0%),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예산 1430억 원(9.7%) 순이다.

〈표 3-15〉 아동·청소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단위: 억 원, %)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계	33(1)	14,673 (100.0)	168 (1.1)	- (-)	797 (5.4)	3,144 (21.4)	10,565 (72.0)
취학 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5(1)	7,444	-	-	-	767	6,677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 개발 지원(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등)	5	2,060	-	-	-	2,060	-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4	1,430	-	-	-	289	1,141
유해 환경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6	812	-	-	65	-	747
아동 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 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2	742	-	-	732	-	11

76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3-15〉 아동·청소년 양육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계속)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아동 학대 예방 보호 체계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	736	-	-	-	-	736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1	681	-	-	-	-	681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2	328	168	-	-	-	160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확대	1	216	-	-	-	-	216
아동·청소년 생활 안전 강화	3	206	-	-	-	10	196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1	18	-	-	-	18	-

주: 1)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부양(양육)과 관련된 과제별 예산액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류함.

2) ( )는 비예산 과제 수이며, 교육은 오락문화 포함임.

자료: 이소영 등. (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16〉 노인 부양 관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2015년)

(단위: 억 원, %)

구분	과제 수	예산액					
		계	생계 (부양)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기타
계	37[12]	118,868 (100.0)	108,040 (90.9)	646 (0.5)	6,725 (5.7)	582 (0.5)	2,875 (2.4)
노인 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1	6,898	6,898	-	-	-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 내실화	2[1]	100,090	100,090	-	-	-	-
농어촌 고령자 소득 보장	2	993	993	-	-	-	-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 체계 구축	5[3]	270	-	-	270	-	-
치매 노인 관리 체계 구축	1	453	-	-	453	-	-
장기 요양보험 내실화	4[3]	5,972	-	-	5,972	-	-
노령기 기초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사업 활성화	3[1]	439	-	-	-	439	-
의료비 지출 적정화	2[1]	30	-	-	30	-	-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4[1]	646	-	646	-	-	-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 가구의 보호 강화	3	2,149	60	-	-	-	2,089
고령 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3[1]	638	-	-	-	24	614
고령자 자원 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	53	-	-	-	53	-
고령자의 여가 문화 향유 기반 확대	2	66	-	-	-	66	-
학대 노인의 보호 강화	1	119	-	-	-	-	119
노인 공경 및 복지 기반 마련	2	53	-	-	-	-	52

주: 1)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부양(양육)과 관련된 과제별 예산액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류함.

2) [ ]는 비예산 과제 수이며, 교육은 오락문화 포함임.

자료: 이소영 등. (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관련 예산은 생계 부문이 압도적인 9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의료 예산 5.7%, 돌봄 기타 예산 2.4% 순이다. 과제별로는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 내실화 예산이 10조 90억 원(84.2%)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은 노인 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예산 6898억 원(5.8%), 장기 요양보험 내실화 예산 5972억 원(5.0%) 순이며,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 가구의 보호 강화 예산으로 2149억 원(1.8%)을 투입하고 있다.

###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법에서 가족 부양 지원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행 조세 체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가족 부양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 1. 조세 개요<sup>32)</sup>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며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조세는 <표 3-17>과 같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로 총 25개이다. 조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이 총 13개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만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1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는 개별 조세마다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방세법 내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정한 조세가 아닌 전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과 관련

32) 기획재정부(2016)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78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된 조세 특례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표 3-17〉 우리나라 현행 조세 및 관련 법령

구분	세부 내용
국세 [14개]	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개별 소비세(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주세법), 인지세(인지세법),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교육세(교육세법), 농어촌 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관세(관세법)
지방세 [11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주: ( )는 관련 법령을 의미함.

## 2.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조문

가족 부양 지원에 대해 규정한 조세법은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는 재산 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부양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소득세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소득세법은 가족 부양 지원과 관련하여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1).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일

시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이다. 다만 퇴직 이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연금 소득)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기획재정부, 2016, p. 107)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비과세 소득), 납부해야 하는 소득에서 차감(소득공제)하거나 세금의 일부를 차감(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소득 중 가족 부양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의 3의 머)이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의 하나인 근로소득에서 월 10만 원까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라고도 하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공제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sup>33)</sup>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50조 제1항)하는 것이다.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 외에도 거주자의 배우자와 그 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구분되는데, 배우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제2호)이다. 그 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거나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 형제자매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제3호).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3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의 2).

범위는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동법 제5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②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③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배우 세대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 원, ④ 무배우자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의 제1~6호).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이하 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 자녀당 1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다시 말해 자녀가 4명인 종합소득자라면, 자녀 별로 각각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을 합산하여 총 9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에는 이와 같은 일반공제와 더불어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2항).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이면 50만 원, 셋째이면 7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3항).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에 각각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를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다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이때 의료비의 공제 한도를 정하여 700만 원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다만 난임 수술비로 지급한 의료비는 100분의 20을 공제하며, 난임 수술비로 지급한 의료비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또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에 한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7).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이때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모두 합산하며,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 원의 한도를 둔다(소득세법 제 59조의 4 제3항). 또한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표 3-18〉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관련 내용

법령	내용	세부 내용	관련 조문
	비과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세 이하 자녀의 보육료</li> <li>-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li> </ul>	-제12조의 3-머
	종합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공제</li> <li>-기본 공제: 거주자와 배우자(60세 이상 중 연 소득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1명당 150만 원.</li> <li>*생계를 같이 하는 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중 연 소득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li> <li>-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종합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배우 세대주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 원, 무배우자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li> </ul>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소득세법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세액공제</li> <li>-일반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당 15만 원 공제(3자녀 이상인 경우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li> <li>-추가 공제: 6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6세 이하 1명당 15만 원 공제. 해당 과세 기간 출생/입양 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며, 그 자녀가 첫째라면 30만 원, 둘째라면 50만 원, 셋째라면 70만 원 공제.</li> <li>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해당)</li> <li>-항목별 세액공제</li> <li>①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12%(한도 12만 원).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한도 15만 원).</li> <li>②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또는 65세 이상/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15%(한도 700만 원). *난임 수술비 20% 공제 및 한도 미적용. *단,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의료비 한도 미적용.</li> <li>③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대학원, 학자금 대출 제외)×15%.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대학생 미만 1명당 300만 원 한도.</li> </ul>	-제59조의 2 제1항  -제59조의 2 제2,3항  -제59조의 4 제1항  -제59조의 4 제2항  -제59조의4 제3항

〈표 3-18〉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관련 내용(계속)

법령	내용	세부 내용	관련 조문													
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 동거 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li> <li>-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규정 적용.</li> <li>[비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li> </ul>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000만 원 공제.</li> <li>-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19세까지의 연수×1000만 원 공제.</li> <li>-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 공제.</li> </ul> </li> <li>물적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거 주택 상속공제: 상속 주택 가액의 80%(한도 5억 원) 공제</li> <li>*단,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로 1세대 1주택인 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li> </ul> </li> </ul>	-제20조 제1항  -제23조의 2 제1항													
	증여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여 재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 원</li> <li>-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5000만 원</li> <li>*단, 미성년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2000만 원</li> <li>-그 외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1000만 원</li> </ul> </li> </ul>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li> </ul>	-제106조 제1항의 11													
	자녀장려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li> <li>신청 자격: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당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총재산 2억 원 이하).</li> <li>자녀 장려금의 산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총급여액</th> <th>자녀 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홀벌이 가구</td> <td>2100만 원 미만</td> <td>부양 자녀의 수×50만 원</td> </tr> <tr> <td>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 <td>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100만 원)×20/1900]</td> </tr> <tr> <td rowspan="2">맞벌이 가구</td> <td>2500만 원 미만</td> <td>부양 자녀의 수×50만 원</td> </tr> <tr> <td>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td> <td>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500만 원)×20/1500]</td> </tr> </tbody> </table>	구분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100만 원)×2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500만 원)×20/1500]	-제100조의 27~31
		구분	총급여액	자녀 장려금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100만 원)×2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50만 원-(총급여-2500만 원)×2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 적용 배제: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li> </ul>															

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취지상 가족 부양에 따른 세제상 혜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밝힘.

소득세법은 주택이나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을 인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sup>34)</sup>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보는 것과 비교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취지상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과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을 일부 차감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가족 부양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재산 상속과 증여는 가족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것이, 국가의 개입으로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지나친 부의 대물림, 부의 쏠림 현상을 예

34) 2017년 8월 2일 자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세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방하고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속과 증여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를, 가족 간의 부양에 대한 반대급부 혹은 부양을 위한 재산 거래의 한 형태로 본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부양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을 통해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가족 부양 지원을 위한 세제로 보고,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에 별도의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의 2억 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표 3-19>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sup>35)</sup>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자녀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000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연로자공제)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또한 동거 주택은 5억 원의 한도에서 상속 주택가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그러나 이때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자는 무주택자로 1세대 1주택인 상속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과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5)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최대 30억 원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표 3-19〉 배우자 상속 공제

구분	내용
	$(A-B+C) \times D - E$
한도 금액 1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 재산의 가액. B: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 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공동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 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금액 2	30억 원

주: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임.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0만 원), 이 외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의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증과 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동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육아 비용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11). 이 법의 적용 기한이 2017년 말까지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31).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자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총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이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며,<sup>36)</sup>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고용 시장 악화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자녀 및 노부모 부양 기간이 동시에 길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은 초저출산 현상 극복의 일환으로 영유아,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부양 인구 집단인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은 성인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취약 노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반사적 효과-부양 부담 완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인 '복지로' 기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현재 98개이며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은 절반 수준인 55개의 정책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수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호 돌봄 기타 정책이 33개(3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육 24개(24.5%), 교육 19개(19.4%), 의료 19개(19.4%), 주거 3개(3.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양육과 돌봄에 역량을 집중하

36)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임.

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의무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은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이 15개(2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돌봄 기타 14개(25.5%), 주거 12개(21.8%), 의료 10개(18.2%), 교육(오락·문화 포함) 4개(7.3%) 등의 순이다. 교육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편이다.

한편 가족 부양 지원에 대해 규정한 조세법은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는 재산 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부양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 중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공제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인적공제와 70세 이상의 자를 추가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 보장성 보험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 직계존속 동거 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취지상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세법상에서도 노부모 부양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간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적 부양 체계가 강하게 작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산업화의 진전과 핵가족화의 보편화 등을 겪으면서 부모 부양 의식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현재 중장년 세대는 본인의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병 장수하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국가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부모 부양 정책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 제 4 장

##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제4절 소결



# 4

## 가족 부양 가구의 << 소득·소비·조세 분석

###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 1. 가구 유형과 분석 방안

본 장에서는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부양 가구는 부양 대상이 자녀인지, 부모인지 등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본 연구는 가족 부양 가구를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sup>37)</sup>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특성이 매우 다르고 그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도 학령 단계별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부양 가구는 자녀 학령 단계별로 구분하여 자녀 수와 소득수준, 모의 취업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지, 그렇지 않고 따로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를 위해 자녀가 지출한 비용은 산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함께 사는 부모가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등을 수혜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의 동

37) 본 연구는 가구 유형을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른 구분 없이 4가지-①양육하는 자녀가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가구(준거 가구), ②0~18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자녀 양육 가구), ③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가구(노부모 부양 가구), ④0~18세 자녀를 양육하며 노부모와도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구(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로 구분한 비교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으나, 가구 유형보다는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른 비교 분석, 부모의 부양 형태에 따른 비교 분석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함. 따라서 당초 4가지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록 2>에 참고로 제시함.

거 여부별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득과 소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소득은 가구의 경제 수준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널리 사용되지만, 가구의 욕구를 보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소득의 대리 변수로 이용된다. 소비는 소득에 비해 단기적인 변화가 적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구의 욕구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현주, 강신욱, 김현경, 이병희, 주상영, 전지현, 2016, p. 12). 따라서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함께 소비지출을 심도 깊게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가구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각자 처한 사회적 위험 정도에 따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세의 부담과 수혜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연령, 경제활동 상태, 가구 형태, 가구소득 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 집단별로 가구 단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까지도 포함하여 파악하며, 정부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정부 복지제도 수혜 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16년에 실시된 11차 연도 자료이며, 소득과 소비 등에 대한 조사 시점은 2015년이다. 조사 대상 가구는 전체 6723가구이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가구 수는 분석 목적에 따

라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표 4-1>에서 분석에 활용한 가구 유형별 사례 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한국 복지패널조사에서 자녀 양육 가구는 10.9%(4인 가구 기준, 730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는 동거 부양 0.8%(3인 가구 기준, 52가구), 비동거 부양 12.2%(3인 가구 기준, 822가구)이다.

<표 4-1> 분석 대상 사례 수

(단위: 가구)

구분		가구 설명	사례수
자녀 양육 가구 비교 분석 (4인 가구 기준)	전체 가구	가구주 연령이 23~57세인 4인 가구.	957
	자녀 양육 가구	부부와 대학 재학 이하 자녀 2명 이하로 구성된 4인 가구.	730
	(자녀 1명)	(자녀 규모에 따른 분석) 부부와 대학 재학 이하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351)
노부모 부양 가구 비교 분석 (3인 가구 기준)	전체 가구	부부와 부모가 아닌 가구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729
	부모 동거 부양 가구	부부와 부모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52
	(동거 부모 1명)	(동거 부모 규모에 따른 분석) 사례 수가 적어서 가구 규모 미적용.	(360)
	(동거 부모 2명)	(동거 부모 규모에 따른 분석) 부부와 부모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	(43)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	부부와 부모가 아닌 가구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이면서, 따로 사는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	822

주: 가구 규모가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 양육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노부모 부양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함. 다만, ( )로 구분한 가구는 비교 분석을 위해 또는 사례 수의 한계로 가구원 수 기준이 다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과 소비, 조세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자녀 양육 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녀 수가 가구 경제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3인 가구(부모와 자녀 1명)와 4인 가구(부모와 자녀 2명)를 비교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 1. 전체 가구 대비 자녀 양육 가구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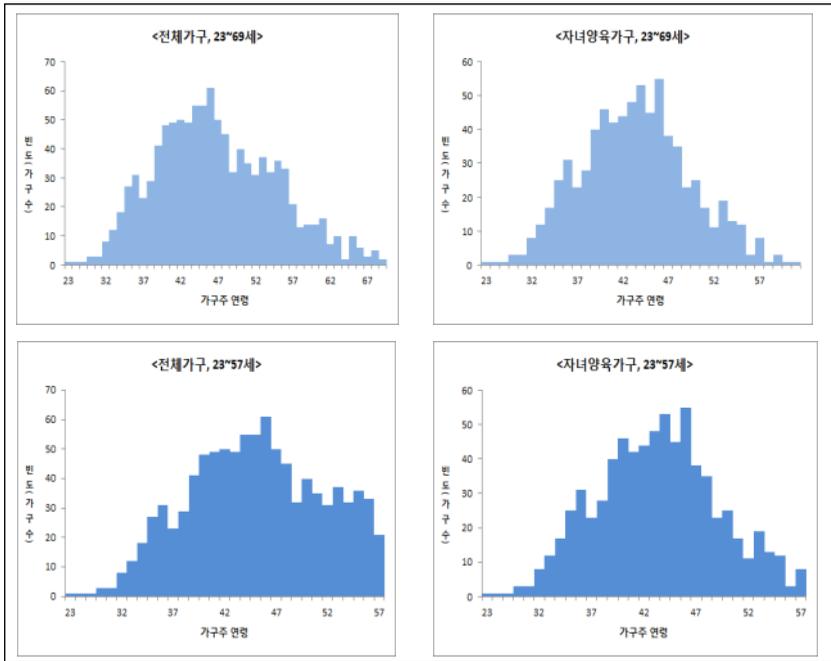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이삼식 등, 2015b, p. 159)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자녀 양육 가구이다. 본 장에서 ‘자녀 양육 가구’는 부부와 대학 재학 이하의 자녀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부부가 첫째, 둘째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셋째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는 1년 중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구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하는 ‘전체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3~57세인 4인 가구이며, ‘자녀 양육 가구’도 포함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소득과 소비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최연소자는 23세이며 최고령자는 69세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 총 736명 중 60대는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50대 사례 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57세를 가구주 최고령으로 보았다.

[그림 4-1] 가구주 연령 범위별 자녀 양육 가구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최종 분석 대상은 자녀 양육 가구 730가구,<sup>38)</sup> 전체 가구 957가구가  
다. 즉 4인 가구 중에서 76.3%가 자녀 양육 가구에 해당한다. [그림 4-1]

38) 자녀 양육 가구 중 59세 이상 총 6가구(59세 1가구, 60세 3가구, 61세 1가구, 69세 1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됨.

은 가구주 연령 범위별 자녀 양육 가구와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를 보여 준다. 전체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 간 분석에서 생애 주기상 특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전체 가구는 상대적으로 50, 6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과 조세, 소비지출의 규모 차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과 지출하는 조세, 소비지출 규모가 더 높은 수준이다.

〈표 4-2〉 전체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가구(A)		자녀 양육 가구(B)		차이(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517.6	90.7	528.4	91.1	10.8	0.4
	재산소득	9.8	1.7	9.3	1.6	-0.5	-0.1
	사적 이전소득	20.4	3.6	20.8	3.6	0.4	0.0
	공적 이전소득	23.1	4.0	21.3	3.7	-1.8	-0.3
	소계	570.9	100.0	579.8	100.0	8.9	-
조세 (B)	세금	27.0	44.4	28.5	45.2	1.5	0.8
	사회보장 부담금	33.8	55.6	34.5	54.8	0.7	-0.8
	소계	60.8	100.0	63.0	100.0	2.2	-
가처분소득(C=A-B)		510.0	-	516.8	-	6.8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102.8	22.7	101.5	22.3	-1.3	-0.4
	주거광열·가사용품비	40.9	9.0	42.6	9.3	1.7	0.3
	교육·보육비	66.5	14.7	76.4	16.8	9.9	2.1
	사적 이전지출	26.3	5.8	26.1	5.7	-0.2	-0.1
	보건·피복비	32.9	7.3	31.1	6.8	-1.8	-0.5
	교통통신·오락비	95.0	20.9	93.2	20.5	-1.8	-0.4
	기타 소비지출	89.2	19.7	84.9	18.6	-4.3	-1.1
	소계	453.7	100.0	455.8	100.0	2.1	-
흑자액(C-D)		56.3	-	61.0	-	4.7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가구 경상소득은 자녀 양육 가구가 58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71만 원보다 약 9만 원 많고, 조세는 자녀 양육 가구가 63만 원으로 전체 가구 61만 원보다 2만 원 더 많다. 가구 경상소득에서 조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은 자녀 양육 가구가 517만 원으로 전체 가구 510만 원보다 약 7만 원 많다. 가구 소득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90% 내외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각각 4%대, 재산소득이 약 2% 수준이다.

소비지출은 자녀 양육 가구가 456만 원으로 전체가구의 454만 원에 비해 2만 원 더 많다. 이는 두 가구 유형 간의 소득 차(약 11만 원)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소비지출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교육보육비는 자녀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약 10만 원 더 많이 든다(각각 76만 원, 67만 원).

전체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는 소득이 소비보다 더 많아 흑자를 보인다. 자녀 양육 가구의 흑자액은 61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6만 원보다 약 5만 원 많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가구에서 자녀 양육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6.3%에 이른다. 그러므로 전체 가구에서 자녀 양육 가구를 제외하고, 자녀 양육 유무별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가구 경상소득과 조세, 소비지출 규모가 큰데, 두 집단 간 차이는 전체 가구 대비 자녀 양육 가구 간 차이보다 더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보다 가구 경상소득이 37만 원 더 많고, 조세는 28만 원을 더 부담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29만 원으로 자녀 양육 가구의 21만 원보다 약 8만 원 더 많다. 이는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는 주된 노

동 연령층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수준이 높고 따라서 조세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근로소득 금액과 소득세의 비례 관계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회보장 부담금은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액도 증가하지만, 사회보장 부담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 수준에 따른 상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규모가 높은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비양육 가구에 비해 세금,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표 4-3〉 자녀 양육 유무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자녀 비양육(A)		자녀 양육(B)		차이(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483.0	89.1	528.4	91.1	45.4	2.0
	재산소득	11.5	2.1	9.3	1.6	-2.2	-0.5
	사적 이전소득	19.1	3.5	20.8	3.6	1.7	0.1
	공적 이전소득	28.8	5.3	21.3	3.7	-7.5	-1.6
	소계	542.4	100.0	579.8	100.0	37.4	0.0
조세 (B)	세금	22.2	41.2	28.5	45.2	6.3	4.0
	사회보장 부담금	31.7	58.8	34.5	54.8	2.8	-4.0
	소계	53.9	100.0	63.0	100.0	9.1	-
가처분소득(C=A-B)		488.5	-	516.8	-	28.3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106.9	23.9	101.5	22.3	-5.4	-1.6
	주거광열·가사용품비	35.7	8.0	42.6	9.3	6.9	1.3
	교육·보육비	34.5	7.7	76.4	16.8	41.9	9.0
	사적 이전지출	27.0	6.0	26.1	5.7	-0.9	-0.3
	보건·피복비	38.8	8.7	31.1	6.8	-7.7	-1.9
	교통통신·오락비	101.0	22.6	93.2	20.5	-7.8	-2.2
	기타 소비지출	103.3	23.1	84.9	18.6	-18.4	-4.5
	소계	447.1	100.0	455.8	100.0	8.7	-
흑자액(C-D)		41.4	-	61.0	-	19.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보다 약 9만 원 더 소비한다. 소비지출 항목 중 교육보육비의 특성이 두드러져서 자녀 양육 가구(전체 소비지출의 16.8%, 76만 원)는 자녀 비양육 가구(전체 소비지출의 7.7%, 35만 원)보다 교육비를 약 42만 원 더 소비한다. 그 외에도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교통통신·오락비와 보건·피복비, 식료품비를 각각 8만 원, 8만 원, 5만 원 적게 쓴다. 이는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행동반경이 일반 성인에 비해 좁아서 교통비 부담이 적고, 미취학 자녀 또는 저학년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낮거나 저렴한 통신요금을 이용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 비양육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 월 연령이 낮아서, 보건의료비가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비교 분석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녀 양육 가구를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730가구 중 학령 단계별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취학 자녀 137가구(19%), 초등학생 자녀 231가구(32%), 중고등학생 자녀 249가구(34%), 대학생 자녀 113가구(15%)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 양육 가구는 부부와 함께 2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므로, 자녀의 학령 단계 구분은 선행 연구와 같이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이 많고 조세 부담액도 많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생애 주기상 가구주의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자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589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의 491만 원보다 98만 원 더 많다. 그러나 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은 미취학 자녀 가구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미취학 자녀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58만 원으로 가구 소득의 11%를 차지하는데, 보육료 지원(연간 493만 원, 월평균 41만 원)과 양육수당(연간 77만 원, 월평균 6만 원)이다(표 4-7 참조).

〈표 4-4〉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 (A-B)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미취학 자녀	545.7	460.1	5.7	21.5	58.4	55.2	22.6	32.6	490.5
	(100.0)	(84.3)	(1.00)	(3.9)	(10.7)	(100.0)	(40.9)	(59.1)	
초등학생 자녀	555.5	516.3	5.1	20.1	14.0	59.1	26.2	32.9	496.4
	(100.0)	(92.9)	(0.9)	(3.6)	(2.5)	(100.0)	(44.3)	(55.7)	
중고등 학생자녀	581.8	544.7	12.1	15.6	9.4	64.4	28.6	35.8	517.4
	(100.0)	(93.6)	(2.1)	(2.7)	(1.6)	(100.0)	(44.4)	(55.6)	
대학생 자녀	666.3	599.9	16.2	32.4	17.8	77.4	40.4	37.0	588.9
	(100.0)	(90.0)	(2.4)	(4.9)	(2.7)	(100.0)	(52.2)	(47.8)	

주: 1) 미취학 자녀 137가구, 초등학생 자녀 231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249가구, 대학생 자녀 113가구임.

2)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소득의 대리변수인 소비지출 또한 동일한 모습이나,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 규모가 더욱 증가한다. 대학생 자녀 가구의 소비지출이 550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의 421만 원보다 129만 원 더 많다. 소비지출 구성 항목 중 교육·보육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보육

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지만, 구성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약 17% 수준으로 유사하다. 교육보육비는 대학생 자녀 가구 95만 원(17%),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 81만 원(18%), 미취학 자녀 가구 73만 원(17%), 초등학생 자녀 가구 65만 원(15%)이다. 교육보육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가구는 보육비(43만 원, 10%),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사교육비(66만 원, 14%), 대학생 자녀 가구는 공교육비(72만 원, 13%)가 많은 편이다(표 4-8 참조).

사적 이전지출은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데, 대학생 자녀 가구의 사적 이전지출 50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 20만 원보다 약 2.5배이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이 증가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기타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표 4-8 참조).

〈표 4-5〉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미취학 자녀	421.2 (100.0)	95.2 (22.6)	44.8 (10.6)	72.6 (17.2)	19.9 (4.7)	27.6 (6.6)	85.7 (20.3)	75.4 (17.9)
초등학생 자녀	425.8 (100.0)	98.5 (23.1)	40.7 (9.6)	65.0 (15.3)	20.9 (4.9)	29.4 (6.9)	95.1 (22.3)	76.3 (17.9)
중고등 학생자녀	459.7 (100.0)	106.3 (23.1)	42.1 (9.2)	80.8 (17.6)	23.7 (5.2)	31.6 (6.9)	89.5 (19.5)	85.6 (18.6)
대학생 자녀	549.9 (100.0)	104.6 (19.0)	44.6 (8.1)	95.0 (17.3)	49.7 (9.0)	37.3 (6.8)	106.4 (19.4)	112.3 (20.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10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4-6〉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임금 소득	사업· 부업 소득	이자 · 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 · 자녀	민간 보험 <sup>1)</sup>	기타 <sup>2)</sup>	사회보험 급여 <sup>3)</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545.7 (100.0)	415.7 (76.2)	44.4 (8.1)	0.9 (0.2)	4.0 (0.7)	0.8 (0.1)	16.9 (3.1)	0.0 (0.0)	4.6 (0.8)	8.8 (1.6)	0.0 (0.0)	49.6 (9.1)
초등 학생자녀	555.5 (100.0)	410.9 (74.0)	105.4 (19.0)	1.9 (0.3)	3.0 (0.5)	0.1 (0.0)	14.6 (2.6)	0.0 (0.0)	5.5 (1.0)	1.4 (0.3)	0.0 (0.0)	12.6 (2.3)
중고등 학생자녀	581.8 (100.0)	438.7 (75.4)	106.0 (18.2)	4.6 (0.8)	6.7 (1.2)	0.7 (0.1)	9.2 (1.6)	0.0 (0.0)	6.5 (1.1)	3.5 (0.6)	0.5 (0.1)	5.4 (0.9)
대학생 자녀	666.3 (100.0)	414.8 (62.3)	185.1 (27.8)	5.8 (0.9)	10.4 (1.6)	(0.0)	8.7 (1.3)	0.4 (0.1)	23.4 (3.5)	3.6 (0.5)	1.2 (0.2)	13.0 (1.9)

주: 1) 개인연금, 퇴직연금.

2)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

3)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7〉 자녀 학령 단계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미취학 자녀	1.9 (260)	0.0 (0.0)	76.5 (183.9)	492.6 (507.4)	0.0 (0.0)	3.6 (500)	3.0 (51.1)	1.7 (76.0)	7.6 (65.1)	0.0 (0.0)	0.2 (6.8)	0.8 (26.0)	7.0 (59.8)
초등학생 자녀	0.0 (0.0)	0.0 (0.0)	11.0 (149.1)	107.5 (250.8)	3.3 (64.1)	1.6 (75.6)	5.4 (139.2)	6.7 (77.5)	10.3 (74.5)	0.5 (26.5)	0.3 (18.8)	0.6 (19.9)	3.4 (55.9)
중고등 학생자녀	1.4 (90.0)	0.0 (0.0)	0.5 (120.0)	6.4 (264.0)	14.9 (176.6)	4.2 (260.3)	8.8 (218.4)	5.5 (98.1)	7.2 (66.8)	9.2 (114.1)	0.6 (15.3)	1.8 (36.4)	4.1 (50.5)
대학생 자녀	5.5 (308.0)	0.0 (0.0)	0.0 (0.0)	0.0 (0.0)	119.6 (355.7)	9.2 (259.0)	0.5 (15.0)	5.0 (112.4)	4.1 (58.0)	3.8 (62.1)	1.0 (22.4)	2.2 (31.3)	5.4 (68.3)

(단위: 만 원)

주: ( )는 해당 보조금을 받은 가구의 월평균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8〉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품비		주거·광열 관리비			추가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진지출		보건·피복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식비	외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 비	사교육 비 <sup>1)</sup>	부모	기타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421.2 (100.0)	57.7 (13.7)	31.5 (7.5)	6.0 (1.4)	4.1 (1.0)	13.8 (3.3)	13.5 (3.2)	13.4 (3.2)	43.4 (10.3)	1.3 (0.3)	27.8 (6.6)	15.6 (3.7)	4.3 (1.0)	14.0 (3.3)	13.6 (3.2)	53.1 (12.6)	14.8 (3.5)	17.8 (4.2)	5.9 (1.4)	6.5 (1.5)	62.9 (14.9)
초등학생 자녀	425.8 (100.0)	58.5 (13.7)	33.0 (7.8)	6.9 (1.6)	3.4 (0.8)	10.9 (2.6)	14.2 (3.3)	(2.8)	9.0 (2.1)	2.2 (0.5)	53.7 (12.6)	16.7 (3.9)	4.2 (1.0)	13.9 (3.3)	15.6 (3.7)	56.2 (13.2)	17.4 (4.1)	21.5 (5.0)	6.6 (1.6)	4.9 (1.2)	64.8 (15.2)
중고등 학생·자녀	459.7 (100.0)	59.2 (12.9)	40.9 (8.9)	6.2 (1.3)	4.1 (0.9)	10.3 (2.2)	14.6 (3.2)	13.2 (2.9)	0.5 (0.1)	14.2 (3.1)	66.1 (14.4)	18.3 (4.0)	5.4 (1.2)	13.4 (2.9)	18.3 (4.0)	52.0 (11.3)	20.8 (4.5)	16.8 (3.7)	6.4 (1.4)	7.4 (1.6)	71.9 (15.6)
대학생 자녀	549.9 (100.0)	56.9 (10.3)	39.0 (7.1)	8.7 (1.6)	4.0 (0.7)	13.4 (2.4)	16.0 (2.9)	11.2 (2.0)	0.1 (0.0)	71.8 (13.1)	23.1 (4.2)	14.6 (2.7)	35.1 (6.4)	16.8 (3.1)	20.5 (3.7)	60.0 (10.9)	25.8 (4.7)	20.7 (3.8)	9.9 (1.8)	5.0 (1.0)	97.5 (17.7)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3.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비교 분석

본 연구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자녀 양육 가구로 정의하였다. 자녀 수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와 대학 재학 이하의 자녀가 1명인 가구를 추출하였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총 351가구이며,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181가구(52%), 초등학생 자녀 73가구(21%), 중고등학생 자녀 46가구(13%), 대학생 자녀 51가구(15%)이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가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각각 4명, 3명) 가구 소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4-9>에 제시된 것처럼,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명에 비해 가구 소득이 더 많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소득(582만 원)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소득(593만 원)보다 약 12만 원 적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의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부(아버지)의 취업률은 96% 수준(자녀 2명 97%, 자녀 1명 96%)이지만 모(어머니)의 취업률은 자녀가 2명인 가구는 71%로 1명인 가구의 78%보다 7%포인트가 낮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소득 항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 초등학생 자녀 가구는 근로소득, 대학생 자녀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에서 차이가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취학 자녀가 2명이면 1명인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22만 원 더 많은데, 소득 항목 중 공적 이전소득이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가구는 58만 원으로 1명인 가구의 34만 원보다 약 25만 원 더 많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양육수당은 적지만 보육료 지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자녀 수가 늘어나면 가정 양육보다는

시설 보육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12 참조).

〈표 4-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 소득(A-B)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미취학 자녀									
1명(A)	524.2 (100.0)	456.1 (87.0)	6.0 (1.1)	28.4 (5.4)	33.7 (6.4)	55.3 (100.0)	22.9 (42.4)	32.4 (58.6)	468.9
2명(B)	545.7 (100.0)	460.1 (84.3)	5.7 (1.0)	21.5 (3.9)	58.4 (10.7)	55.2 (100.0)	22.6 (40.9)	32.6 (59.1)	490.5
차이(B-A)	21.5	4.0	-0.3	-6.9	24.7	-0.1	-0.3	0.2	21.6
초등학생 자녀									
1명(A)	528.9 (100.0)	498.5 (94.3)	9.2 (1.7)	13.0 (2.5)	8.2 (1.6)	65.4 (100.0)	32.3 (49.4)	33.1 (50.6)	463.5
2명(B)	555.5 (100.0)	516.3 (92.9)	5.1 (0.9)	20.1 (3.6)	14.0 (2.5)	59.1 (100.0)	26.2 (44.3)	32.9 (55.7)	496.4
차이(B-A)	26.6	17.8	-4.1	7.1	5.8	-6.3	-6.1	-0.2	32.9
중고등학생 자녀									
1명(A)	593.4 (100.0)	567.5 (95.6)	6.1 (1.0)	14.4 (2.4)	5.5 (0.9)	55.9 (100.0)	25.1 (44.9)	30.8 (55.1)	537.6
2명(B)	581.8 (100.0)	544.7 (93.6)	12.1 (2.1)	15.6 (2.7)	9.4 (1.6)	64.4 (100.0)	28.6 (44.4)	35.8 (55.6)	517.4
차이(B-A)	-11.6	-22.8	6.0	1.2	3.9	8.5	3.5	5.0	-20.2
대학생 자녀									
1명(A)	596.1 (100.0)	547.8 (91.9)	14.3 (2.4)	14.0 (2.3)	19.9 (3.3)	69.7 (100.0)	35.9 (51.5)	33.8 (48.5)	526.3
2명(B)	666.3 (100.0)	599.9 (90.0)	16.2 (2.4)	32.4 (4.9)	17.8 (2.7)	77.4 (100.0)	40.4 (52.2)	37.0 (47.8)	588.9
차이(B-A)	70.2	52.1	1.9	18.4	-2.1	7.7	4.5	3.2	62.6

주: 1) 자녀가 1명인 가구는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181가구, 초등학생 자녀 73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46가구, 대학생 자녀 51가구임.  
 2)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137가구, 초등학생 자녀 231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249가구, 대학생 자녀 113가구임.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27만 원 더 많고, 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은 자녀가 2명인 가구가 516만 원으로 1명인 가구의 499만 원보다 약 17만 원 더 많다. 대학생 자녀가 2명인 가

구는 1명인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70만 원 많은데, 근로소득은 자녀가 2명인 가구(666만 원)가 1명인 가구(596만 원)보다 70만 원 더 많다. 대학생 자녀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자녀가 2명인 가구(32만 원)가 1명인 가구(14만 원)보다 18만 원 더 많다.

한편 조세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자녀 학령 단계별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만 자녀 규모가 커지면서 가구 소득수준과 조세 부담 수준이 함께 증가할 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 가구 가운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조세 부담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 항목 중 세금이 초등학교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6만 원, 1명인 가구는 32만 원으로 6만 원의 차가 있다. 초등학교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세금 세부 항목 중에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초등학교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명인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이 27만 원 적지만, 재산소득은 4만 원 더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과 조세 부담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가구 소비를 살펴보면, 자녀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 항목은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도 오히려 소비 금액과 구성비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미취학 자녀 가구와 초등학교 자녀 가구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비록 소비 금액과 구성비의 차는 크지 않지만 외식비와 주거관리비,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복비가 미취학 자녀 가구와 초등학교 자녀 가구의 자녀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부표 1-4 참조). 추가로 미취학 자녀 가구는 교통비와 통신비, 교양오락비도 자녀 수 증가와 반대로 소비 금액과 구성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녀 가구 중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보다

가구 소득은 적지만, 조세와 소비 규모는 더 많은 특징이 있다(조세 각각 64만 원, 56만 원, 소비 각각 460만 원, 379만 원). 소비 항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 중 자녀가 2명이면 사교육비가 66만 원으로 1명의 41만 원에 비해 25만 원(3.6%포인트) 증가하는 데 불과하여, 자녀 1명당 사교육비는 줄어든다. 소비 항목 구성비 측면에서는,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의 식료품비는 자녀수 2명인 가구는 23.1%로 자녀 1명인 가구의 25.8%보다 2.7%포인트 감소한다.

〈표 4-1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미취학 자녀								
1명(A)	381.1 (100.0)	86.9 (22.8)	43.6 (11.4)	33.8 (8.9)	21.5 (5.6)	30.7 (8.1)	93.4 (24.5)	71.2 (18.7)
2명(B)	421.2 (100.0)	95.2 (22.6)	44.8 (10.6)	72.6 (17.2)	19.9 (4.7)	27.6 (6.6)	85.7 (20.3)	75.4 (17.9)
차이(B-A)	40.1	8.3	1.2	38.8	-1.6	-3.1	-7.7	4.2
초등학생 자녀								
1명(A)	372.4 (100.0)	93.0 (25.0)	40.8 (11.0)	37.6 (10.1)	22.5 (6.0)	30.7 (8.2)	82.1 (22.0)	65.7 (17.6)
2명(B)	425.8 (100.0)	98.5 (23.1)	40.7 (9.6)	65.0 (15.3)	20.9 (4.9)	29.4 (6.9)	95.1 (22.3)	76.3 (17.9)
차이(B-A)	53.4	5.5	-0.1	27.4	-1.6	-1.3	13.0	10.6
중고등학생 자녀								
1명(A)	378.8 (100.0)	97.8 (25.8)	36.4 (9.6)	52.1 (13.8)	17.0 (4.5)	29.3 (7.7)	72.3 (19.1)	74.0 (19.5)
2명(B)	459.7 (100.0)	106.3 (23.1)	42.1 (9.2)	80.8 (17.6)	23.7 (5.2)	31.6 (6.9)	89.5 (19.5)	85.6 (18.6)
차이(B-A)	80.9	8.5	5.7	28.7	6.7	2.3	17.2	11.6
대학생 자녀								
1명(A)	428.2 (100.0)	92.8 (21.7)	39.5 (9.2)	31.5 (7.4)	46.4 (10.8)	32.4 (7.6)	88.1 (20.6)	97.6 (22.8)
2명(B)	549.9 (100.0)	104.6 (19.0)	44.6 (8.1)	95.0 (17.3)	49.7 (9.0)	37.3 (6.8)	106.4 (19.4)	112.3 (20.4)
차이(B-A)	121.7	11.8	5.1	63.5	3.3	4.9	18.3	14.7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1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sup>1)</sup>			공적 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 보험 <sup>2)</sup>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1명(A)	524.2	395.2	60.9	1.0	5.0	0.0	22.4	0.0	6.0	8.8	0.0	24.9
	2명(B)	545.7	415.7	44.4	0.9	4.0	0.8	16.9	0.0	4.6	8.8	0.0	49.6
	차이(B-A)	21.5	20.5	-16.5	-0.1	-1.0	0.8	-5.5	0.0	-1.4	0.0	0.0	24.7
초등학교 자녀	1명(A)	528.9	416.6	81.9	3.1	6.1	0.0	9.8	0.0	3.2	4.7	1.3	2.2
	2명(B)	555.5	410.9	105.4	1.9	3.0	0.1	14.6	0.0	5.5	1.4	0.0	12.6
	차이(B-A)	26.6	-5.7	23.5	-1.2	-3.1	0.1	4.8	0.0	2.3	-3.3	-1.3	10.4
중·고등학교 자녀	1명(A)	593.4	512.6	54.9	5.1	1.0	0.0	6.9	0.0	7.4	0.0	0.2	5.4
	2명(B)	581.8	438.7	106.0	4.6	6.7	0.7	9.2	0.0	6.5	3.5	0.5	5.4
	차이(B-A)	-11.6	-73.9	51.1	-0.5	5.7	0.7	2.3	0.0	-0.9	3.5	0.3	0.0
대학생 자녀	1명(A)	596.1	396.2	151.6	3.6	10.7	0.0	4.5	0.5	9.0	6.4	1.7	11.9
	2명(B)	666.3	414.8	185.1	5.8	10.4	0.0	8.7	0.4	23.4	3.6	1.2	13.0
	차이(B-A)	70.2	18.6	33.5	2.2	-0.3	0.0	4.2	-0.1	14.4	-2.8	-0.5	1.1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타 비유저 지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금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미취학 자녀													
1명(A)	1.5	0.0	80.0	191.4	0.0	0.0	13.3	3.5	3.9	0.0	0.1	0.5	5.2
2명(B)	1.9	0.0	76.5	492.6	0.0	3.6	3.0	1.7	7.6	0.0	0.2	0.8	7.0
차이(B-A)	0.4	0.0	-3.5	301.2	0.0	3.6	-10.3	-1.8	3.7	0.0	0.1	0.3	1.8
초등학생 자녀													
1명(A)	2.6	0.0	0.0	0.0	4.2	0.0	3.2	3.6	3.1	0.5	1.0	3.1	4.9
2명(B)	0.0	0.0	11.0	107.5	3.3	1.6	5.4	6.7	10.3	0.5	0.3	0.6	3.4
차이(B-A)	-2.6	0.0	11.0	107.5	-0.9	1.6	2.2	3.1	7.2	0.0	-0.7	-2.5	-1.5
중고등학생 자녀													
1명(A)	5.7	0.0	0.0	0.0	15.7	0.0	4.8	14.3	8.8	8.7	1.6	3.3	1.3
2명(B)	1.4	0.0	0.5	6.4	14.9	4.2	8.8	5.5	7.2	9.2	0.6	1.8	4.1
차이(B-A)	-4.3	0.0	0.5	6.4	-0.8	4.2	4.0	-8.8	-1.6	0.5	-1.0	-1.5	2.8
대학생 자녀													
1명(A)	14.9	5.7	0.0	0.0	90.0	3.0	7.2	2.9	0.0	0.0	1.1	3.0	14.5
2명(B)	5.5	0.0	0.0	0.0	119.6	9.2	0.5	5.0	4.1	3.8	1.0	2.2	5.4
차이(B-A)	-9.4	-5.7	0.0	0.0	29.6	6.2	-6.7	2.1	4.1	3.8	-0.1	-0.8	-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13〉 자녀의 학령단계별 및 자녀규모별 연평균 소비지출 세부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품비		추가광열 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복비		교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외식비 식비	주류·담배비	주거 월세	주거 광열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사 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사교육비) <sup>1)</sup>	교육비	부모 기타	의료 신발비	보건 의류 신발비	외복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념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1명(A)	381.1	48.6	32.4	5.8	3.6	14.0	12.9	13.1	22.2	0.9	10.7	17.9	3.5	16.6	14.1	15.3	16.0	19.7	7.4	2.9	61.0
	2명(B)	421.2	57.7	31.5	6.0	4.1	13.8	13.5	13.4	43.4	1.3	27.8	15.6	4.3	14.0	13.6	14.8	17.8	17.8	5.9	6.5	62.9
	차이(B-A)	40.1	9.1	-0.9	0.2	0.5	-0.2	0.6	0.3	21.2	0.4	17.1	-2.3	0.8	-2.6	-0.5	-4.6	-1.2	-1.9	-1.5	3.6	1.9
초등학생 자녀	1명(A)	372.4	52.1	35.0	5.8	4.9	11.1	13.3	11.5	0.6	2.5	34.5	18.5	4.1	15.3	15.4	16.2	21.4	6.1	2.0	57.6	
	2명(B)	425.8	58.5	33.0	6.9	3.4	10.9	14.2	12.1	9.0	2.2	53.7	16.7	4.2	13.9	15.6	56.2	17.4	21.5	6.6	4.9	64.8
	차이(B-A)	53.4	6.4	-2.0	1.1	-1.5	-0.2	0.9	0.6	8.4	-0.3	19.2	-1.8	0.1	-1.4	0.2	11.7	1.2	0.1	0.5	2.9	7.2
중고학생 자녀	1명(A)	378.8	54.1	33.6	10.1	5.1	7.9	14.4	9.0	-	11.0	41.0	13.4	3.6	13.7	15.6	39.7	17.8	14.8	6.8	4.7	62.5
	2명(B)	459.7	59.2	40.9	6.2	4.1	10.3	14.6	13.2	0.5	14.2	66.1	18.3	5.4	13.4	18.3	52.0	20.8	16.8	6.4	7.4	71.9
	차이(B-A)	80.9	5.1	7.3	-3.9	-1.0	2.4	0.2	4.2	0.5	3.2	25.1	4.9	1.8	-0.3	2.7	12.3	3.0	2.0	-0.4	2.7	9.4
대학생 자녀	1명(A)	428.2	49.2	35.2	8.4	3.6	9.8	14.9	11.3	-	30.5	0.9	12.0	34.4	13.7	18.6	46.2	20.1	21.8	9.0	5.0	83.6
	2명(B)	549.9	56.9	39.0	8.7	4.0	13.4	16.0	11.2	0.1	71.8	23.1	14.6	35.1	16.8	20.5	60.0	25.8	20.7	9.9	5.0	97.5
	차이(B-A)	121.7	7.7	3.8	0.3	0.4	3.6	1.1	-0.1	0.1	41.3	22.2	2.6	0.7	3.1	1.9	13.8	5.7	-1.1	0.9	0.0	13.9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여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 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비교 분석

자녀가 2명인 가구(730가구) 중 모가 취업 중인 가구(431가구)는 전체의 약 59%이다.<sup>39)</sup> 모가 취업 중인 가구는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52가구(38%), 초등학생 자녀 120가구(52%), 중고등학생 자녀 176가구(71%), 대학생 자녀 83가구(74%)이다. 즉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취업 중인 모의 비율이 증가한다.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모가 취업한 가구는 미취업인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더 많고 소비지출도 더 많은데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액의 차가 크다(각각 180만 원, 103만 원). 가구 소득의 차는 소득 항목 중 근로소득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미취학 자녀 가구의 취업 여성은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과 소비 규모의 차가 가장 작다(각각 77만 원, 14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방과 후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비록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취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모가 취업한 가구는 미취업인 가구에 비해 사적 이전소득이 줄어드는데, 대학생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한 경우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 규모가 가장 두드러진다(37만 원). 재산소득의 경우, 작은 차이지만, 모가 취업한 가구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보다 더 많은 편이나 대학생 자녀 가구는 반대로 모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 재산소득(임대료)이 5만 원 더 많다. 이러한 특성은 소득 구성비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39) 분석 가구의 96%는 부(아버지)가 취업 중이므로 부의 취업 여부별 비교 분석은 하지 않음.

유지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여성의 취업 결정이 부분적으로 가구의 재산 수준, 노부모의 경제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여성은 가구의 재산 수준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받기 어려워 추가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취학 자녀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가 취업한 가구는 양육수당이 37만 원 적고 보육료가 75만 원 많다. 이는 모가 취업한 가구의 자녀는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실제로 가구 소비에서 모가 취업한 미취학 자녀 가구는 미취업 가구보다 교육보육비를 약 16만 원 더 지출한다. 이는 모든 학령 단계의 모의 취업 여부별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이다. 모가 취업한 가구는 미취학 자녀가 시설 보육을 이용하므로 보육기관의 종료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의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보육료를 추가 지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세는 모가 취업한 가구가 가구 소득(근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더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학생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조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36만 원). 특히 모가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 가구는 조세 중에서 세금의 부담, 소득세와 기타의 부담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는 제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적공제 등을 통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지만,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는 남성배우자만 임금 수

40) 초등학교 자녀 가구도 모의 취업 여부별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에 대해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이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한 것으로, 둘째 자녀는 미취학 자녀일 수 있기 때문임.

준이 높아져 소득세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 (A-B)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 보장금			
미취학 자녀									
취업(A)	657.1 (100.0)	567.9 (86.4)	10.0 (1.5)	13.7 (2.1)	65.5 (10.0)	72.3 (100.0)	29.1 (40.2)	43.2 (59.8)	584.8
미취업(B)	477.6 (100.0)	394.1 (82.5)	3.1 (0.6)	26.3 (5.5)	54.0 (11.3)	44.7 (100.0)	18.6 (41.6)	26.1 (58.4)	432.9
차이(A-B)	179.5	173.8	6.9	-12.6	11.5	27.6	10.5	17.1	151.9
초등학생 자녀									
취업(A)	602.8 (100.0)	563.8 (93.5)	5.3 (0.9)	18.1 (3.0)	15.5 (2.6)	63.7 (100.0)	27.4 (43.0)	36.3 (57.0)	539.1
미취업(B)	504.3 (100.0)	464.9 (92.2)	4.8 (1.0)	22.3 (4.4)	12.3 (2.4)	54.1 (100.0)	24.8 (45.8)	29.3 (54.2)	450.2
차이(A-B)	98.5	98.9	0.5	-4.2	3.2	9.6	2.6	7.0	88.9
중고등학생 자녀									
취업(A)	604.5 (100.0)	568.0 (94.0)	12.8 (2.1)	14.9 (2.5)	8.8 (1.5)	65.5 (100.0)	28.2 (43.1)	37.3 (56.9)	539.1
미취업(B)	527.1 (100.0)	488.6 (92.7)	10.4 (2.0)	17.4 (3.3)	10.7 (2.0)	61.8 (100.0)	29.6 (47.9)	32.2 (52.1)	465.3
차이(A-B)	77.4	79.4	2.4	-2.5	-1.9	3.7	-1.4	5.1	73.8
대학생 자녀									
취업(A)	687.3 (100.0)	630.2 (91.7)	14.4 (2.1)	22.6 (3.3)	20.1 (2.9)	67.8 (100.0)	28.9 (42.6)	38.9 (57.4)	619.5
미취업(B)	608.1 (100.0)	516.0 (90.0)	21.1 (2.4)	59.7 (4.9)	11.3 (2.7)	103.8 (100.0)	72.1 (52.2)	31.7 (47.8)	504.3
차이(A-B)	79.2	114.2	-6.7	-37.1	8.8	-36.0	43.2	7.2	115.2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소비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사적 이전지출의 경우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 금액이 커지고 모가 취업했을 때 더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했을 때(23만 원) 취업하지

않은 때(27만 원)보다 사적 이전지출이 약 4만 원 적었다. 그리고 교육보육비 중 사교육비는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와 대학생 자녀 가구에서 모가 취업했을 때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18 참조).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 중 모가 취업한 가구는 사교육비가 69만 원으로 미취업한 가구의 60만 원보다 약 9만 원 더 많다. 대학생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한 가구의 사교육비가 27만 원으로 취업하지 않은 가구의 14만 원보다 13만 원 더 많다.

〈표 4-15〉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 지출	
미취학 자녀								
취업(A)	485.3 (100.0)	105.0 (21.6)	50.0 (10.3)	82.7 (17.0)	29.1 (6.0)	30.6 (6.3)	102.8 (21.2)	85.1 (17.5)
미취업(B)	382.0 (100.0)	89.2 (23.4)	41.7 (10.9)	66.4 (17.4)	14.3 (3.7)	25.8 (6.8)	75.3 (19.7)	69.4 (18.2)
차이(A-B)	103.3	15.8	8.3	16.3	14.8	4.8	27.5	15.7
초등학생 자녀								
취업(A)	446.8 (100.0)	100.1 (22.4)	38.2 (8.5)	67.1 (15.0)	24.5 (5.5)	31.6 (7.1)	104.3 (23.3)	81.0 (18.1)
미취업(B)	403.2 (100.0)	96.8 (24.0)	43.3 (10.7)	62.6 (15.5)	17.0 (4.2)	27.2 (6.7)	85.3 (21.2)	71.1 (17.6)
차이(A-B)	43.6	3.3	-5.1	4.5	7.5	4.4	19.0	9.9
중고등학생 자녀								
취업(A)	463.8 (100.0)	107.1 (23.1)	41.8 (9.0)	84.2 (18.2)	22.5 (4.9)	32.0 (6.9)	88.6 (19.1)	87.6 (18.9)
미취업(B)	450.0 (100.0)	104.5 (23.2)	43.0 (9.6)	72.5 (16.1)	26.8 (6.0)	30.8 (6.8)	91.6 (20.4)	80.8 (18.0)
차이(A-B)	13.8	2.6	-1.2	11.7	-4.3	1.2	-3.0	6.8
대학생 자녀								
취업(A)	560.4 (100.0)	108.8 (19.4)	41.5 (7.4)	95.2 (17.0)	51.8 (9.2)	39.2 (7.0)	109.6 (19.6)	114.3 (20.4)
미취업(B)	521.1 (100.0)	92.9 (17.8)	53.3 (10.2)	94.4 (18.1)	44.0 (8.4)	31.9 (6.1)	97.7 (18.7)	106.9 (20.5)
차이(A-B)	39.3	15.9	-11.8	0.8	7.8	7.3	11.9	7.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1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sup>1)</sup>			공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보험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취업(A)	657.1	525.3	42.6	1.5	6.5	2.0	9.7	0.0	3.9	14.7	0.0	50.8					
미취업(B)	477.6	348.6	45.6	0.5	2.5	0.1	21.2	0.0	5.1	5.2	0.0	48.8					
차이(A-B)	179.5	176.7	-3.0	1.0	4.0	1.9	-11.5	0.0	-1.2	9.5	0.0	2.0					
초등학생 자녀																	
취업(A)	602.8	442.8	121.0	1.5	3.6	0.3	10.8	0.0	7.4	1.5	0.0	14.0					
미취업(B)	504.3	376.4	88.5	2.4	2.4	0.0	18.8	0.0	3.4	1.4	0.0	10.9					
차이(A-B)	98.5	66.4	32.5	-0.9	1.2	0.3	-8.0	0.0	4	0.1	0.0	3.1					
중고학생 자녀																	
취업(A)	604.5	457.1	110.9	5.1	6.6	1.0	8.2	0.0	6.7	3.4	0.0	5.4					
미취업(B)	527.1	394.4	94.2	3.5	7.0	0.0	11.5	0.0	5.9	3.8	1.6	5.3					
차이(A-B)	77.4	62.7	16.7	1.6	-0.4	1.0	-3.3	0.0	0.8	-0.4	-1.6	0.1					
대학생 자녀																	
취업(A)	687.3	426.8	203.4	6.4	8.0	0.0	5.7	0.0	16.9	4.4	0.8	14.9					
미취업(B)	608.1	381.4	134.6	3.9	17.2	0.0	16.8	1.4	41.5	1.3	2.3	7.8					
차이(A-B)	79.2	45.4	68.8	2.5	-9.2	0.0	-11.1	-1.4	-24.6	3.1	-1.5	7.1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1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감면 /보조	통신비감면 /보조	(단위: 만 원)	
													기타	기타
미취학 자녀	취업(A)	5.0	0.0	53.8	539.3	0.0	0.0	2.5	4.4	0.0	0.2	2.0	2.9	
	미취업(B)	0.0	0.0	90.4	464.0	0.0	5.9	3.3	9.6	0.0	0.2	0.0	9.5	
	차이(A-B)	5.0	0.0	-36.6	75.3	0.0	-5.9	-0.8	-5.2	0.0	0.0	2.0	-6.6	
	초등학생 자녀													
중고학생 자녀	취업(A)	0.0	0.0	7.5	125.7	2.9	2.7	7.6	10.0	0.2	0.4	0.9	3.5	
	미취업(B)	0.0	0.0	14.7	87.8	3.8	0.4	3.1	10.6	0.8	0.3	0.3	3.3	
	차이(A-B)	0.0	0.0	-7.2	37.9	-0.9	2.3	4.5	-0.6	-0.6	0.1	0.6	0.2	
	중고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	취업(A)	1.2	0.0	-	4.5	15.3	5.2	11.3	6.1	8.8	7.3	1.7	3.1	
	미취업(B)	2.0	0.0	1.6	10.8	14.0	1.6	2.8	4.0	3.6	13.7	1.9	6.3	
	차이(A-B)	-0.8	0.0	-1.6	-6.3	1.3	3.6	8.5	2.1	5.2	-6.4	-0.5	-3.2	
	대학생 자녀													
기타	취업(A)	7.4	0.0	0.0	0.0	135.0	9.6	0.5	6.8	5.6	3.7	1.1	2.8	6.8
	미취업(B)	0.0	0.0	0.0	0.0	77.1	8.1	0.5	0.0	0.0	4.4	0.7	0.6	1.7
	차이(A-B)	7.4	0.0	0.0	0.0	57.9	1.5	0.0	6.8	5.6	-0.7	0.4	2.2	5.1
	기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5.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비교 분석

다음으로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소득·소비지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눈 후 소득 3분위를 구한다.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는 152만 원, 소득2분위는 240만 원, 소득3분위는 382만 원이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사례 수는 <표 4-19>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사례 수

(단위: 가구, %)

구분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전체	137	100.0	231	100.0	249	100.0	113	100.0
소득1분위	47	34.3	94	40.7	76	30.5	26	23.0
소득2분위	53	38.7	73	31.6	88	35.3	28	24.8
소득3분위	37	27.0	64	27.7	85	34.1	59	5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적 이전소득 금액은 많지만,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가구 소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성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미취학 자녀 가구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많다.

미취학 자녀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 중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미취학 자녀 가구의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 수혜 금액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 수혜 금액은 늘어난다.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에서 모가 취업한 경우 가구 소득수준이 미취업한 경우 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모가 취업하여 시설 보육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고,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식료품비 중에서도 외식비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가정식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구성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 항목 중 교육·보육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보육비의 구성비 차이는 매우 작다. 그러나 교육·보육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자녀 가구와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높은 편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1-10 참조).

〈표 4-2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조세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 (A-B)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 보장금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358.7 (100.0)	289.1 (80.6)	0.5 (0.1)	19.2 (5.4)	49.8 (13.9)	35.4 (100.0)	16.0 (45.2)	19.4 (54.8)	323.3
소득2분위	533.5 (100.0)	449.7 (84.3)	2.4 (0.4)	25.7 (4.8)	55.8 (10.5)	51.6 (100.0)	17.7 (34.3)	33.9 (65.7)	481.9
소득3분위	800.8 (100.0)	692.2 (86.4)	17.2 (2.1)	18.4 (2.3)	73.0 (9.1)	85.5 (100.0)	37.9 (44.3)	47.6 (55.7)	715.4
초등학교 자녀									
소득1분위	356.1 (100.0)	319.6 (89.8)	2.6 (0.7)	18.8 (5.3)	15.1 (4.2)	29.4 (100.0)	9.4 (32.0)	20.0 (68.0)	326.7
소득2분위	536.0 (100.0)	497.5 (92.8)	3.3 (0.6)	19.8 (3.7)	15.4 (2.9)	57.8 (100.0)	23.8 (41.2)	34.0 (58.8)	478.2
소득3분위	870.4 (100.0)	826.5 (95.0)	10.8 (1.2)	22.4 (2.6)	10.7 (1.2)	104.0 (100.0)	53.4 (51.3)	50.6 (48.7)	766.4
중고등학교 자녀									
소득1분위	315.1 (100.0)	280.6 (89.1)	2.9 (0.9)	12.8 (4.1)	18.8 (6.0)	28.1 (100.0)	9.4 (33.5)	18.7 (66.5)	286.9
소득2분위	543.8 (100.0)	510.4 (93.9)	13.4 (2.5)	14.2 (2.6)	5.8 (1.1)	58.5 (100.0)	23.5 (40.2)	35.0 (59.8)	485.3
소득3분위	859.8 (100.0)	816.5 (95.0)	19.0 (2.2)	19.6 (2.3)	4.7 (0.5)	102.9 (100.0)	51.1 (49.7)	51.8 (50.3)	756.9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304.1 (100.0)	219.7 (72.3)	19.7 (6.5)	31.1 (10.2)	33.4 (11.0)	64.7 (100.0)	48.3 (74.7)	16.4 (25.3)	239.3
소득2분위	509.7 (100.0)	473.0 (92.8)	5.0 (1.0)	18.3 (3.6)	13.5 (2.6)	42.8 (100.0)	13.8 (32.2)	29.0 (67.8)	467.0
소득3분위	900.3 (100.0)	827.7 (91.9)	19.9 (2.2)	39.7 (4.4)	12.9 (1.4)	99.3 (100.0)	49.5 (49.8)	49.8 (50.2)	800.9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12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표 4-2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 지출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341.2 (100.0)	85.4 (25.0)	36.4 (10.7)	61.5 (18.0)	9.8 (2.9)	19.5 (5.7)	68.8 (20.2)	59.9 (17.6)
소득2분위	429.5 (100.0)	98.6 (23.0)	47.3 (11.0)	71.8 (16.7)	16.3 (3.8)	29.1 (6.8)	87.7 (20.4)	78.8 (18.3)
소득3분위	510.9 (100.0)	102.9 (20.1)	52.0 (10.2)	87.8 (17.2)	38.0 (7.4)	35.7 (7.0)	104.4 (20.4)	90.2 (17.7)
초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327.8 (100.0)	86.8 (26.5)	33.5 (10.2)	47.0 (14.3)	11.4 (3.5)	19.7 (6.0)	74.4 (22.7)	55.0 (16.8)
소득2분위	428.9 (100.0)	97.6 (22.8)	45.0 (10.5)	66.1 (15.4)	19.1 (4.5)	33.5 (7.8)	87.6 (20.4)	80.0 (18.7)
소득3분위	566.4 (100.0)	116.7 (20.6)	46.2 (8.2)	90.1 (15.9)	36.8 (6.5)	39.0 (6.9)	134.2 (23.7)	103.3 (18.2)
중고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333.7 (100.0)	86.2 (25.8)	34.9 (10.5)	50.1 (15.0)	13.4 (4.0)	19.9 (6.0)	71.9 (21.5)	57.3 (17.2)
소득2분위	448.1 (100.0)	101.9 (22.7)	39.9 (8.9)	80.5 (18.0)	25.7 (5.7)	29.3 (6.5)	85.7 (19.1)	85.1 (19.0)
소득3분위	584.5 (100.0)	129.0 (22.1)	51.0 (8.7)	108.4 (18.5)	30.9 (5.3)	44.5 (7.6)	109.2 (18.7)	111.5 (19.1)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372.5 (100.0)	82.6 (22.2)	37.5 (10.1)	75.7 (20.3)	28.7 (7.7)	21.1 (5.7)	60.4 (16.2)	66.5 (17.9)
소득2분위	460.5 (100.0)	94.6 (20.5)	31.8 (6.9)	96.1 (20.9)	46.5 (10.1)	30.1 (6.5)	76.2 (16.6)	85.1 (18.5)
소득3분위	670.6 (100.0)	119.0 (17.7)	53.8 (8.0)	103.0 (15.4)	60.5 (9.0)	47.8 (7.1)	141.1 (21.0)	145.4 (21.7)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2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sup>1)</sup>			공적 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 보험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미취학 자녀	100.0	70.4	10.2	0.1	0.0	0.1	3.9	0.0	1.4	0.0	0.0	13.9
소득1분위	100.0	75.4	8.9	0.1	0.4	0.0	3.8	0.0	1.0	1.3	0.0	9.1
소득2분위	100.0	80.2	6.2	0.3	1.5	0.3	1.9	0.0	0.4	2.8	0.0	6.3
소득3분위	100.0	65.7	24.0	0.2	0.5	0.0	3.8	0.0	1.4	0.1	0.0	4.2
초등자녀	100.0	85.0	7.8	0.3	0.3	0.0	2.4	0.0	1.3	0.7	0.0	2.2
소득1분위	100.0	71.2	23.7	0.5	0.7	0.1	2.0	0.0	0.5	0.1	0.0	1.2
소득2분위	100.0	66.5	22.5	0.2	0.8	0.0	2.3	0.0	1.7	2.0	0.5	3.4
소득3분위	100.0	78.4	15.4	1.0	1.0	0.4	1.6	0.0	1.0	0.3	0.0	0.8
중고등학생 자녀	100.0	76.3	18.7	0.8	1.4	0.0	1.3	0.0	1.0	0.3	0.0	0.2
대학생 자녀	100.0	54.0	18.3	2.0	4.5	0.0	5.2	0.0	5.0	2.4	1.6	7.0
소득1분위	100.0	64.5	28.3	0.5	0.5	0.0	0.9	0.0	2.6	0.5	0.0	2.1
소득2분위	100.0	62.9	29.1	0.8	1.4	0.0	0.8	0.1	3.5	0.3	0.0	1.2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23)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보 보조금	기타 비우체지 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5.5	0.0	89.5	474.7	0.0	0.0	2.0	0.5	14.2	0.0	0.6	0.9	9.7
소득2분위	0.0	0.0	68.8	494.6	0.0	0.0	4.0	3.8	5.2	0.0	0.0	0.0	6.5
소득3분위	0.0	0.0	71.1	512.5	0.0	13.5	2.7	0.0	2.7	0.0	0.0	1.7	4.2
초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0.0	0.0	8.5	107.5	7.4	3.9	6.5	14.7	23.3	1.1	0.3	1.2	2.9
소득2분위	0.0	0.0	14.2	109.2	1.0	0.1	6.5	2.3	2.7	0.0	0.3	0.3	4.9
소득3분위	0.0	0.0	11.0	105.5	0.0	0.0	2.6	0.0	0.0	0.0	0.0	0.0	2.4
중고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1.9	0.0	0.0	6.9	33.0	13.3	6.2	15.8	15.7	24.1	1.0	4.3	6.4
소득2분위	2.5	0.0	0.0	3.0	13.5	0.0	16.6	2.0	6.4	2.2	0.5	0.9	3.0
소득3분위	0.0	0.0	1.4	9.3	1.1	0.3	3.0	0.0	0.6	3.0	0.2	0.3	3.1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23.7	0.0	0.0	0.0	173.1	15.6	2.3	11.6	5.8	10.2	2.7	5.8	3.5
소득2분위	0.0	0.0	0.0	0.0	92.9	10.7	0.0	0.0	9.4	6.1	1.5	1.6	17.2
소득3분위	0.0	0.0	0.0	0.0	108.7	10.7	0.0	4.4	0.8	0.0	0.0	0.9	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2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품소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가정소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미취학 자녀	100.0	3.0	2.7	12.0	4.2	4.0	1.4	0.8	15.3	164.0	12.3	0.6	3.8
소득1분위	100.0	3.5	3.2	12.8	3.4	4.1	1.2	2.4	14.7	83.9	10.6	0.1	0.1
소득2분위	100.0	3.3	3.7	12.9	3.0	4.6	1.6	1.1	15.0	39.0	-0.7	0.3	2.4
소득3분위													
초등학교생 자녀	100.0	3.0	3.0	14.3	4.9	3.5	1.3	1.3	14.2	171.0	27.2	1.3	1.0
소득1분위	100.0	4.2	3.6	11.7	4.0	4.8	1.4	1.2	16.1	81.3	26.2	0.2	0.7
소득2분위	100.0	2.6	4.3	13.6	3.5	6.6	1.9	1.0	15.3	37.4	-4.1	0.5	0.1
소득3분위													
중·고등학교생 자녀	100.0	2.8	3.1	13.6	5.8	2.1	1.0	1.0	15.3	168.1	42.1	1.8	0.3
소득1분위	100.0	2.3	4.2	11.1	4.9	3.2	1.4	1.2	16.3	84.5	19.9	0.9	2.1
소득2분위	100.0	3.4	4.2	10.3	3.6	4.8	1.6	2.2	15.3	31.2	8.8	0.3	-1.4
소득3분위													
대학생 자녀	100.0	2.8	2.9	7.8	5.8	2.7	0.9	0.5	16.5	156.4	46.5	2.0	0.5
소득1분위	100.0	2.8	3.8	8.8	5.8	1.9	1.4	0.9	16.2	73.9	39.7	1.0	2.9
소득2분위	100.0	3.2	3.9	12.4	4.0	4.6	2.2	1.0	18.5	36.1	-1.4	0.4	-1.7
소득3분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2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계속)

(단위: %)

구분	소비 지출 잔액	보간·피복비		교통신·오락비		교양 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의류 신발비	보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b>미취학 자녀</b>									
소득1분위	100.0	0.0	2.8	0.0	1.3	4.0	0.0	14.1	246.3
소득2분위	100.0	0.3	4.6	0.0	1.1	1.6	0.0	11.7	159.5
소득3분위	100.0	-0.2	-2.0	0.0	-0.1	1.4	0.0	-0.4	84.8
<b>초등학교 자녀</b>									
소득1분위	100.0	0.0	3.6	0.0	1.2	0.3	0.0	3.0	253.9
소득2분위	100.0	0.0	3.7	0.0	1.4	0.4	0.0	3.2	164.0
소득3분위	100.0	0.0	-0.7	0.0	-0.4	-0.1	0.0	-0.7	80.8
<b>중고등학교 자녀</b>									
소득1분위	100.0	0.1	2.5	0.0	1.8	0.1	0.0	0.7	262.1
소득2분위	100.0	0.2	2.1	0.0	1.5	1.2	0.2	1.5	158.8
소득3분위	100.0	-0.1	-0.2	0.0	-0.1	-0.9	-0.1	-0.8	82.0
<b>대학생 자녀</b>									
소득1분위	100.0	0.0	2.8	0.0	4.7	0.1	0.0	2.8	255.5
소득2분위	100.0	0.0	1.6	0.1	5.4	1.2	0.5	3.2	171.1
소득3분위	100.0	0.0	0.4	-0.1	-1.1	-0.8	-0.3	-0.7	80.7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비교 분석

여기에서는 자녀 양육 가구가 따로 살고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부가 대학 재학 이하의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총 730가구이다. 이 중 1년 간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한 가구는 661가구로 전체의 91%이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가구 93%, 초등학생 자녀 가구 94%,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 90%, 대학생 자녀 가구 82%이다. 즉 자녀의 학령 단계가 낮을수록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한 가구 비율이 높다. 부모에게 지급한 월평균 사적 이전지출 금액은 전체 대상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 미만이 38%로 가장 비율이 높고, 10만~20만 원 미만이 22%, 20만~30만 원 미만이 15%, 30만 원 이상이 16%이다.

〈표 4-25〉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지출 사례 수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없음	있음				
			소계	10만 원 미만	10만~20만 원 미만	20만~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전체	730	69	661	279	161	106	115
	(100.0)	(9.5)	(90.5)	(38.2)	(22.0)	(14.5)	(15.8)
미취학 자녀	137	10	127	61	28	19	19
	(100.0)	(7.3)	(92.7)	(44.5)	(20.4)	(13.9)	(13.9)
초등학생 자녀	231	15	216	83	65	35	33
	(100.0)	(6.5)	(93.5)	(35.9)	(28.1)	(15.2)	(14.3)
중고등학생 자녀	249	24	225	96	47	35	47
	(100.0)	(9.6)	(90.4)	(38.6)	(18.9)	(14.1)	(18.9)
대학생 자녀	113	20	93	39	21	17	16
	(100.0)	(17.7)	(82.3)	(34.5)	(18.6)	(15.0)	(14.2)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편 부모 부양 여부별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인 약 20만 원을 반영하여, '가구에서 부모에게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사적 이전지출'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사적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송금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을 파악한다. 이때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은 현금뿐 아니라 현물도 포함하며, 정기적 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분포와 현실적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이 월평균 20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가 일정 부분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후술하겠지만, 제5장의 사례연구에서 자녀 중 부모에게 정기적인 사적 이전지출을 할 때 그 액수는 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모 부양 정의에 의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221가구로 전체의 약 30%이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 가구는 38가구(28%), 초등학생 자녀 가구는 68가구(30%),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82가구(33%), 대학생 자녀 가구는 33가구(29%)이다.

자녀 양육 가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과 소비액, 조세 부담이 더 많다. 따라서 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 부양 수준(또는 부모 부양 결정)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과 소비, 조세의 차이가 가장 큰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은 726만 원으로 미부양 가구의 511만 원보다 214만 원 많다. 소득 항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미부양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적 이전소득과 공

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sup>41)</sup>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부모 부양 가구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97%, 비부양 가구는 92%를 차지한다.

〈표 4-2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 (A-B)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미취학 자녀									
부양(A)	692.3 (100.0)	601.6 (86.9)	15.1 (2.2)	13.7 (2.0)	62.0 (9.0)	73.9 (100.0)	28.2 (38.2)	45.7 (61.8)	618.4
미부양(B)	489.5 (100.0)	405.8 (82.9)	2.2 (0.4)	24.5 (5.0)	57.0 (11.6)	48.0 (100.0)	20.4 (42.5)	27.6 (57.5)	441.5
차이(A-B)	202.8	195.8	12.9	-10.8	5.0	25.9	7.8	18.1	176.9
초등학생 자녀									
부양(A)	683.3 (100.0)	649.5 (95.1)	7.4 (1.1)	15.6 (2.3)	10.8 (1.6)	83.0 (100.0)	41.0 (49.4)	42.0 (50.6)	600.3
미부양(B)	502.1 (100.0)	460.7 (91.8)	4.1 (0.8)	22.0 (4.4)	15.3 (3.0)	49.1 (100.0)	20.0 (40.7)	29.1 (59.3)	453.0
차이(A-B)	181.2	188.8	3.3	-6.4	-4.5	33.9	21.0	12.9	147.3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A)	725.5 (100.0)	701.4 (96.7)	7.2 (1.0)	14.3 (2.0)	2.6 (0.4)	89.1 (100.0)	43.7 (49.0)	45.4 (51.0)	636.4
미부양(B)	511.3 (100.0)	467.8 (91.5)	14.5 (2.8)	16.3 (3.2)	12.7 (2.5)	52.3 (100.0)	21.2 (40.5)	31.1 (59.5)	459.1
차이(A-B)	214.2	233.6	-7.3	-2.0	-10.1	36.8	22.5	14.3	177.3
대학생 자녀									
부양(A)	803.8 (100.0)	755.8 (94.0)	9.3 (1.2)	28.1 (3.5)	10.6 (1.3)	96.7 (100.0)	42.8 (44.3)	53.9 (55.7)	707.1
미부양(B)	609.6 (100.0)	535.6 (87.7)	19.0 (3.1)	34.2 (5.6)	20.7 (3.4)	66.8 (100.0)	39.4 (56.8)	30.0 (43.2)	540.2
차이(A-B)	207.3	232.6	-8.6	-4.8	-11.9	29.9	5.6	24.3	177.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41) 다만, 예외적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 비율이 더 높은 편임.

또한 조세 역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양육 가구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 양육 가구보다 더 많이 부담한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부모 부양 가구의 조세 부담은 89만 원으로 부모 비부양 가구 52만 원보다 약 37만 원 더 많은 수준이다. 조세 중 세금의 부담 비율이 높다.

〈표 4-2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파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미취학 자녀								
부양(A)	488.7 (100.0)	101.7 (20.8)	43.2 (8.8)	82.0 (16.8)	46.2 (9.5)	31.3 (6.4)	92.8 (19.0)	91.5 (18.7)
미부양(B)	395.3 (100.0)	92.7 (23.5)	45.4 (11.5)	68.9 (17.4)	9.8 (2.5)	26.2 (6.6)	83.0 (21.0)	69.1 (17.5)
차이(A-B)	93.4	9.0	-2.2	13.1	36.4	5.1	9.8	22.4
초등학생 자녀								
부양(A)	505.3 (100.0)	105.3 (20.8)	45.6 (9.0)	71.7 (14.2)	44.8 (8.9)	35.1 (6.9)	109.1 (21.6)	93.8 (18.6)
미부양(B)	392.7 (100.0)	95.6 (24.3)	38.6 (9.8)	62.1 (15.8)	10.9 (2.8)	27.1 (6.9)	89.3 (22.7)	69.0 (17.6)
차이(A-B)	112.6	9.7	7.0	9.6	33.9	8.0	19.8	24.8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A)	561.4 (100.0)	117.8 (21.0)	49.0 (8.7)	94.9 (16.9)	47.0 (8.4)	40.6 (7.2)	105.3 (18.8)	106.8 (19.0)
미부양(B)	409.8 (100.0)	100.7 (24.6)	38.8 (9.5)	73.8 (18.0)	12.3 (3.0)	27.3 (6.7)	81.7 (19.9)	75.2 (18.4)
차이(A-B)	151.6	17.1	10.2	21.1	34.7	13.3	23.6	31.6
대학생 자녀								
부양(A)	653.7 (100.0)	117.0 (17.9)	38.7 (5.9)	118.5 (18.1)	66.8 (10.2)	44.6 (6.8)	132.1 (20.2)	136.0 (20.8)
미부양(B)	507.0 (100.0)	99.5 (19.6)	47.1 (9.3)	85.3 (16.8)	42.6 (8.4)	34.2 (6.8)	95.8 (18.9)	102.5 (20.2)
차이(A-B)	146.7	17.5	-8.4	33.2	24.2	10.4	36.3	33.5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부양하지 않는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다. 소비 항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고, 교육·보육비의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이다. 다만 대학생 자녀 가구 중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교육·보육비 비율이 높은 편인데,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sup>42)</sup>

〈표 4-28〉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임금 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 보험 <sup>1)</sup>	기타 <sup>2)</sup>	사회 보험 급여 <sup>3)</sup>	기초 보장 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부양	100.0	80.8	6.1	0.3	1.9	0.0	1.4	0.0	0.6	2.0	0.0	7.0
미부양	100.0	73.6	9.3	0.1	0.1	0.2	4.0	0.0	1.0	1.4	0.0	10.2
초·중학생 자녀												
부양	100.0	82.0	13.0	0.6	0.5	0.0	1.7	0.0	0.6	0.1	0.0	1.4
미부양	100.0	69.4	22.3	0.2	0.6	0.0	3.1	0.0	1.2	0.3	0.0	2.7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	100.0	77.3	19.4	0.8	0.2	0.0	1.2	0.0	0.8	0.0	0.0	0.3
미부양	100.0	74.1	17.4	0.8	1.9	0.2	1.9	0.0	1.3	1.0	0.1	1.3
대학생 자녀												
부양	100.0	72.5	21.5	0.9	0.2	0.0	1.3	0.0	2.2	0.0	0.0	1.3
미부양	100.0	56.7	31.2	0.8	2.3	0.0	1.3	0.1	4.2	0.8	0.3	2.3

주: 1) 개인연금, 퇴직연금.

2)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

3)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42) 이하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연도별 비교 분석(2010년과 2015년)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 무상보육 실시와 2015년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에 따른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 외에는 큰 특징이 없으므로 이를 부표에 제시함. 분석에 활용한 2010년 자녀 양육 가구는 770가구임.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가구 133가구(17%), 초·중학생 자녀 가구 276가구(36%), 중·고등학생 자녀가구 235가구(31%), 대학생 자녀 가구 126가구(16%)임.

〈표 4-2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복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 광열 관리비	주거 관리비	가사 용품비	보육료	공과요금	사교액 <sup>1)</sup>	기타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부양	100.0	12.5	7.1	1.2	0.5	2.3	2.9	3.2	9.1	0.0	7.7	7.6	1.8	3.2	3.3	11.7	3.0	4.3	1.4	2.8	14.5	
미부양	100.0	14.3	7.7	1.5	1.2	3.7	3.4	3.2	10.9	0.5	6.1	1.8	0.6	3.4	3.2	13.0	3.8	4.2	1.4	1.0	15.1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양	100.0	12.6	7.1	1.1	0.9	2.6	2.9	2.6	1.2	0.5	12.5	7.2	1.6	3.1	3.8	12.2	3.3	6.1	1.8	1.3	15.4	
미부양	100.0	14.4	8.1	1.9	0.8	2.6	3.6	3.0	2.6	0.5	12.7	2.1	0.6	3.3	3.6	13.8	4.5	4.5	1.4	1.0	15.1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	100.0	11.9	8.2	0.9	0.7	2.3	2.8	2.9	0.1	2.9	14.0	7.3	1.1	3.3	3.9	10.2	3.7	4.8	1.7	2.3	15.0	
미부양	100.0	13.6	9.3	1.7	1.0	2.2	3.4	2.8	0.1	3.2	14.6	1.7	1.3	2.7	4.0	12.0	5.0	2.9	1.2	1.1	16.0	
대학생 자녀																						
부양	100.0	10.0	6.4	1.4	0.1	1.6	2.4	1.9	0.0	12.8	5.4	5.4	4.8	3.0	3.9	11.7	4.2	4.3	1.8	0.6	18.4	
미부양	100.0	10.5	7.4	1.7	1.1	2.9	3.2	2.1	0.0	13.2	3.6	1.2	7.2	3.1	3.6	10.5	5.0	3.5	1.8	1.0	17.4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 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자녀의 노부모 부양 형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로 구분하여 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원 수가 가구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 1. 전체 가구 대비 부모 동거 부양 가구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성인 부부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를 ‘부모 동거 부양 가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녀가 가구주이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로 보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구주에 대해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구주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총 202가구이며, 함께 사는 부모는 최대 2명이다. 이 중 함께 사는 부모가 1명인 가구가 179가구(89%)로 대부분이며, 함께 사는 부모가 2명인 가구는 23가구(11%)이다.

가구 규모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여 부모 동거 부양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자녀 부부가 부모 1명과 함께 사는 3인 가구(이하 부모 동거 부양 가구)와 부부와 그 외 가구원 1명으로 구성

된 3인 가구(이하 전체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다만, 전체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주 연령(최연소 37세, 최고령 78세)에 맞춰 37~78세로 한정한다.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 최종 분석 대상은 전체 가구 729가구이며 이 중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52가구(7.1%)이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은 39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가구 소득 493만 원보다 약 97만 원이 적다. 소득 항목을 살펴보면, 비교 가구 집단 모두 근로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164만 원 적고(각각 254만 원, 418만 원), 그 외의 소득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보다 52만 원(각각 88만 원, 36만 원) 더 많고, 그 다음 사적 이전소득은 약 9만 원(각각 30만 원, 21만 원), 재산소득은 5만 원(각각 24만 원, 19만 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득 항목 구성비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 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와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정부보조금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기초연금(연간 299만 원)과 농어업 정부보조금(연간 105만 원) 수혜 규모가 크다(표 4-31 참조). 부모 부양 가치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부모 부양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가 많고, 농어업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성이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sup>43)</sup>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77%, 전체 가구는 16.5%이다.

43) 군 지역이나 도농 복합군에 거주하는 비율임.

(표 4-30)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가구(A)		부모 동거 부양 가구(B)		차이(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417.7	84.7	253.6	64.0	-164.1	-20.7
	재산소득	18.7	3.8	24.1	6.1	5.4	2.3
	사적 이전소득	20.6	4.2	30.4	7.7	9.8	3.5
	공적 이전소득	36.2	7.3	87.8	22.2	51.6	14.9
	소계	493.1	100.0	396.0	100.0	-97.1	-
조세 (B)	세금	21.2	45.2	9.5	43.2	-11.7	-2.0
	사회보장 부담금	25.7	54.8	12.5	56.8	-13.2	2.0
	소계	46.9	100.0	22.0	100.0	-24.9	-
가처분소득(C=A-B)		446.2	-	374.0	-	-72.2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89.1	24.4	81.8	27.0	-7.3	2.6
	주거광열·가사용품비	35.3	9.7	29.7	9.8	-5.6	0.1
	교육·보육비	19.0	5.2	1.2	0.4	-17.8	-4.8
	사적 이전지출	23.4	6.4	27.0	8.9	3.6	2.5
	보건·피복비	32.6	8.9	33.3	11.0	0.7	2.1
	교통통신·오락비	79.4	21.8	62.4	20.6	-17	-1.2
	기타 소비지출	86.0	23.6	68.0	22.4	-18	-1.2
	소계	364.7	100.0	303.4	100.0	-61.3	-
흑자액(C-D)		81.5	-	70.6	-	-10.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이러한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소득 특성은 조세에 그대로 이어지며,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조세는 22만 원으로 전체 가구 47만 원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조세의 구성비 면에서,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상대적으로 세금의 비중이 낮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와 전체 가구는 소비 측면에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전체 가구 소비 금액은 부모 동거 부양 가구가 303만 원으로 전체 가구 365만 원보다 약 62만 원 적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작은 편이다. 소비 항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각각 27%, 24%)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9%, 6%)은 많고, 교육·보육비(각각 0.4%, 5%)는 적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 항목 구성비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식료품비 중 가정식비가 더 많고, 외식비는 적다. 보건·피복비 중 의류신발비는 더 많고, 보건의료비는 더 적다(표 4-32 참조). 사적 이전지출은 부모와 기타로 구분되는데,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부모가 아닌 기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 이는 따로 사는 자녀에 대해 사적 이전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사적 이전지출(27만 원)은 사적 이전소득(30만 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표 4-31〉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연간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가구	부모 동거 부양 가구
장애(아동)	10.5	7.6
기초연금	62.1	298.9
양육수당	5.7	0
보육료	22.9	0
학비 지원	16	0
국가유공자 보조금	1.3	0
농어업 정부	16.6	104.9
기타 바우처지원금	8.1	1.12
근로 장려 세제	4.5	0
자녀 장려 세제	1.4	0
급식비 지원	1.4	0
에너지 감면/보조	1.5	2.5
통신비 감면/보조	3.5	2.9
기타	5.9	15.7

주: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공적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모 동거 부양 가구 중 17%(9가구)는 따로 사는 부모에게 월평균 9만원(최소 2만 원, 최대 20만 원)의 사적 이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중 1명과 함께 살면서 부양을 하고, 그 외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동거 부양 가구 중 일부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흑자액을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약 11만 원 적다(각각 71만 원, 82만 원).

〈표 4-32〉 전체 가구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복비		교통신·오락비		기타소비지출			
	가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전·가사 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부모	기타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전체 가구	527 (145)	289 (79)	75 (21)	32 (09)	86 (24)	142 (39)	93 (26)	26 (07)	74 (20)	89 (24)	85 (23)	149 (41)	187 (51)	138 (38)	466 (128)	160 (44)	167 (46)	85 (23)	39 (11)	736 (202)
부모동거 부양가	579 (191)	183 (60)	56 (18)	13 (04)	50 (16)	158 (52)	77 (25)	02 (01)	10 (03)	- (-)	15 (05)	255 (84)	243 (80)	90 (30)	399 (132)	106 (35)	119 (39)	93 (31)	39 (13)	548 (181)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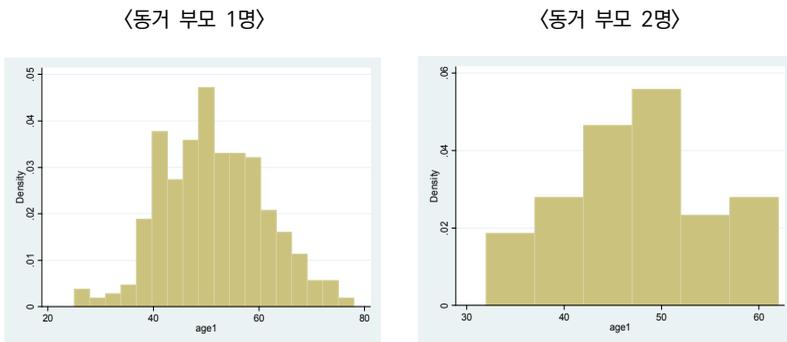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동거 부모 수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몇 명인지에 따라 소득과 소비, 조세의 특성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동거하는 부모가 최대 2명이다. 앞에서 살펴본 부부와 부모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52가구이나 부부와 부모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5가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증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의 가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모 수를 1명과 2명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러나 가구 규모가 경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소득과 가구균등화지출, 가구균등화조세를 활용한다. 가구 균등화는 가구 소득과 가구 소비, 가구 조세에 각각 루트를 취한 가구원 수로 나눈다.

[그림 4-2] 동거 부모 수별 가구주 연령 분포



주: 동거 부모 1명은 360가구, 동거 부모 2명은 43가구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최종 분석 대상은 동거 부모 1명인 360가구(89%), 동거 부모 2명인 43가구(11%)이다. 가구 규모는 동거 부모 1명인 가구는 평균 3.4명(최소 2명, 최다 7명)으로 동거 부모 2명인 가구의 평균 4.6명(최소 3명, 최다 8명)보다 1.2명 적은 편이다. 따라서 동거 부모 수에 따른 가구 규모 차이는 동거 부모 수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은 동거 부모가 1명인 가구는 평균 51세(최연소 25세, 최고령 78세)로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의 평균 47세(최연소 32세, 최고령 62세)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가구균등화로 전환한 가구 소득은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228만 원으로 동거 부모가 1명인 가구의 210만 원보다 18만 원 더 많다. 소득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두 가구 모두 160만 원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적은 동거 부모 1명인 가구가 동거 부모 2명인 가구보다 구성비가 조금 더 높다(각각 77%, 71%). 그 외의 소득 항목(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모두 동거 부모 2명인 가구가 금액이나 구성비 면에서 모두 높는데, 특히 공적 이전소득의 차이가 크다. 공적 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타 정부보조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동거 부모가 1명인 가구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을 더 많이 받는다(표 4-34 참조).

가구 균등화한 가구 조세와 가구 소비 또한 동거 부모 2명인 가구가 동거 부모 1명인 가구보다 더 많다.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의 조세는 19만 원으로 동거 부모 1명인 가구의 16만 원보다 3만 원 많다. 가구 소비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가 190만 원으로 동거 부모 1명인 가구의 172만 원보다 17만 원 많은데, 이는 두 가구 유형 간의 가구 소득 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항목을 살펴보면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보건·피복비가 조금 더 많고, 교통통신·오락비는 조금 적다. 세부 소비 항목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는 보건·피복비 중에서 의류신발비, 교통통신·오락비 중에서 교통비에서 확인된다. 이는 동거하는 부모가 2명인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 중 보육비 지원 비율이 높고 소비지출 중 의류신발비가 많다는 점과 교통통신비가 적다는 점에서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가구원 중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을 파악한 결과,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가 14%로 동거 부모가 1명인 가구의 7%보다 약 2배 높았다.

〈표 4-33〉 동거 부모 수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1명(A)		2명(B)		차이(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160.4	76.5	160.7	70.5	0.3	-6.0
	재산소득	5.3	2.5	13.1	5.7	7.8	3.2
	사적 이전소득	15.2	7.3	20.0	8.8	4.8	1.5
	공적 이전소득	28.7	13.7	34.1	15.0	5.4	1.3
	소계	209.6	100.00	227.9	100.0	18.3	-
조세 (B)	세금	6.2	40.0	7.1	38.4	0.9	-1.6
	사회보장 부담금	9.3	60.0	11.4	61.6	2.1	1.6
	소계	15.5	100.0	18.5	100.0	3.0	-
가처분소득(C=A-B)		194.1		209.4		15.3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45.5	26.4	51.4	27.1	5.9	0.7
	주거광열·가사용품비	17.2	10.0	22.2	11.7	5.0	1.7
	교육·보육비	10.6	6.2	10.9	5.8	0.3	-0.4
	사적 이전지출	9.0	5.2	4.9	2.6	-4.1	-2.6
	보건·피복비	17.5	10.2	23.7	12.5	6.2	2.3
	교통통신·오락비	34.9	20.3	35.1	18.5	0.2	-1.8
	기타 소비지출	37.6	21.8	41.5	21.9	3.9	0.1
	소계	172.3	100.0	189.7	100.0	17.4	-
흑자액(C-D)		21.8		19.7		-2.1	-

주: 가구 균등화를 반영함. 즉 해당 금액에 루트를 취한 가구원 수로 나눈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34〉 동거 부모 수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량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타 비우적 지원금	근로장려 세제	자녀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1명	8.1	129.4	2.5	9.6	14.7	3.5	15.5	5.7	0.7	1.4	1.7	2.1	3.3	6.6
2명	7.3	146.6	2.0	28.5	2.0	16.3	7.6	0.1	1.0	1.6	2.3	4.3	2.6	5.3

주: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35〉 동거 부모 수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식비	외식비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주거 용품비	월세	보육료	공교육비(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 오락비	경조비	관광비	그 외 <sup>2)</sup>	
																				1명
1명	172.3 (100.0)	29.2 (16.9)	12.2 (7.1)	4.1 (2.4)	1.7 (1.0)	3.0 (1.7)	8.2 (4.8)	0.8 (0.5)	5.2 (3.0)	4.5 (2.6)	1.0 (0.6)	8.1 (4.7)	11.9 (6.9)	5.6 (3.3)	20.7 (12.0)	7.9 (4.6)	6.2 (3.6)	3.5 (2.0)	2.1 (1.2)	32.0 (18.6)
2명	189.7 (100.0)	32.7 (17.2)	15.2 (8.0)	3.5 (1.8)	2.0 (1.1)	5.9 (3.1)	8.5 (4.5)	1.9 (1.0)	2.6 (1.4)	6.4 (3.4)	1.9 (1.0)	3.0 (1.6)	16.4 (8.6)	7.3 (3.8)	18.1 (9.5)	8.6 (4.5)	8.3 (4.4)	4.1 (2.2)	4.2 (2.2)	33.2 (17.5)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3.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부양 수준별 비교 분석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는 부부와 부모가 아닌 가구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44)</sup>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모 부양 수준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 지출의 규모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분석 대상은 822가구인데,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한 가구는 전체의 57%(471가구)이다. 사적 이전지출 규모별로는 10만 원 미만 25%(205가구), 10만~20만 원 미만 15%(124가구), 20만~30만 원 미만 8%(65가구), 30만 원 이상 9%(77가구)이다. 앞서 자녀 양육 가구 분석에서 비동거 부모에 대한 부양은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월평균 20만 원 이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월평균 2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10만 원 미만, 10만~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비교한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471가구이다.

〈표 4-36〉 월평균 부모에게 지급한 사적 이전지출 규모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없음	있음				
			소계	10만 원 미만	10만~20만 원 미만	20만~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월평균 사적 이전지출	822	351	471	205	124	65	77
	(100.0)	(42.7)	(57.3)	(24.9)	(15.1)	(7.9)	(9.4)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44) 앞에서 3인 가구 기준으로 부모 동거 부양 가구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에 부모 동거 여부별 부양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임.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 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과 부양 수준은 높은 양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453만 원, 10만~2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09만 원, 20만 원 이상인 가구는 728만 원이다. 소득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 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고(약 4%포인트),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높다(합산 약 4%포인트). 공적 이전소득의 세부 항목에서는,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모 부양 수준에 따라 조세 부담 규모도 다르다. 부모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 부담 규모도 큰데, 부모에게 월평균 10만 원 미만의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조세는 41만 원으로, 월평균 2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83만 원의 약 2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 규모와 유사한 양상이다.

가구 소비 규모도 부모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다. 1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비는 347만 원, 10만~20만 원 미만 가구는 420만 원, 20만 원 이상 가구는 481만 원이다. 소비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식료품비의 세부 항목에서는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외식 횟수가 적거나 외식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보육비의 세부 항목은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표 4-39 참조). 따라서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부모 부양 수준은 가구 소득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표 4-37〉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10만 원 미만		10만~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393.4	86.9	556.9	91.5	662.7	91.1
	재산소득	12.7	2.8	15.1	2.5	22.7	3.1
	사적 이전소득	25.0	5.5	15.9	2.6	21.9	3.0
	공적 이전소득	21.4	4.7	20.9	3.4	20.5	2.8
	소계	452.5	100.0	608.8	100.0	727.9	100.0
조세 (B)	세금	14.7	36.3	32.5	45.9	40.9	49.3
	사회보장 부담금	25.8	63.7	38.3	54.1	42.1	50.7
	소계	40.5	100.0	70.8	100.0	83.0	100.0
가처분소득(C=A-B)		412.0	-	538.0	-	644.8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86.6	25.0	92.9	22.1	104.7	21.8
	주거광열·가사용품비	36.2	10.4	44.9	10.7	41.7	8.7
	교육·보육비	22.8	6.6	30.4	7.2	37.4	7.8
	사적 이전지출	13.7	4.0	26.1	6.2	50.5	10.5
	보건·피복비	29.8	8.6	34.5	8.2	40.3	8.4
	교통통신·오락비	74.1	21.4	101.3	24.1	106.5	22.2
	기타 소비지출	83.3	24.0	90.3	21.5	99.7	20.7
	소계	346.5	100.0	420.4	100.0	480.8	100.0
흑자액(C-D)		65.5	-	117.6	-	164.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38〉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배우 처지연금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회비 감면·보조	기타
10만 원 미만	2.8	7.7	25.8	50.7	19.2	1.5	4.6	4.1	7.5	3.4	1.1	0.8	2.3	3.5
10만~20만 원 미만	5.0	0.2	31.0	98.2	3.1	0.0	2.2	8.6	4.7	2.8	1.2	0.6	1.4	5.3
20만 원 이상	2.4	1.7	33.6	62.4	12.2	0.0	4.4	8.9	1.7	1.1	0.0	0.4	1.5	9.8

주: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39〉 부모 비동거 가구의 부양 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기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시적 이전지출		보건·피부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 비	가전가 가동비	보육료	공교육비	세무비	기타	의료 신발비	보건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 오락비	경조비	중고 구입비	그 외 <sup>2)</sup>			
10만 원 미만	346.5 (100.0)	50.8 (14.7)	28.4 (8.2)	7.4 (2.1)	4.5 (1.3)	8.9 (2.6)	13.8 (4.0)	9.0 (2.6)	5.7 (1.6)	8.4 (2.4)	8.7 (2.5)	5.1 (1.5)	8.6 (2.5)	17.5 (5.1)	12.2 (3.5)	43.9 (12.7)	17.6 (5.1)	12.6 (3.6)	6.7 (1.9)	6.7 (0.8)	2.6 (0.8)	74.1 (21.4)
10만~20만 미만	420.4 (100.0)	50.3 (12.0)	35.7 (8.5)	6.8 (1.6)	2.3 (0.5)	15.6 (3.7)	13.5 (3.2)	13.5 (3.2)	10.3 (2.5)	5.8 (1.4)	14.3 (3.4)	13.6 (3.2)	12.5 (3.0)	17.3 (4.1)	17.2 (4.1)	62.6 (14.9)	17.5 (4.2)	17.5 (5.0)	21.2 (5.0)	8.6 (2.0)	3.5 (0.8)	78.3 (18.6)
20만 원 이상	480.8 (100.0)	55.5 (11.5)	42.2 (8.8)	7.0 (1.5)	2.6 (0.5)	12.1 (2.5)	14.7 (3.1)	12.3 (2.6)	8.8 (1.8)	8.3 (1.7)	20.3 (4.2)	36.0 (7.5)	14.5 (3.0)	19.8 (4.1)	20.5 (4.3)	58.1 (12.1)	18.1 (3.8)	30.3 (6.3)	12.3 (2.6)	3.6 (0.7)	3.6 (0.7)	83.8 (17.4)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4. 부모 동거 부양 가구와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비교

본 절은 부모 부양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가구 경제 특성을 분석한다. 가구 규모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부모 동거 여부와 가구 규모 기준에 따른 분석 대상 가구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부부와 부모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이며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는 ‘부부와 부모 이외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3인 가구면서, 따로 사는 부모에게 월 평균 20만 원 이상의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이다.<sup>45)</sup> 이러한 정의에 의해, 분석 대상은 부모 동거 부양 가구 52가구,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 142가구이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과 조세, 소비지출 수준이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은 396만 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22만 원이다. 가구 지출은 303만 원이다.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는 가구 소득이 728만 원으로 부모 동거 가구보다 2배 많고(332만 원 차), 조세 부담액은 88만 원으로 약 4배 많다(61만 원 차). 또한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소비지출도 481만 원으로 부모 동거 가구의 약 1.5배이다(177만 원 차).

두 비교 집단의 가구 경제 실태 차이는 상당 부분 생애 주기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1세(최연소 37세, 최고령 78세),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5세(최연소 27세, 최고령 67세)로 연령 차이가 16세이다. 이러한 생애 주기상 특성은 항목별 소득과 소비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공적 이전소득에서 뚜렷하다.

45) 앞에서 비교 분석한 가구와 동일한 조작적 정의임.

항목별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이 88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22%를 차지하는데 기초연금(연간 299만 원)과 농어업 정부보조금(연간 105만 원)이다. 반면에 부모 비동거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21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3%에 불과하며, 미취학 자녀 대상의 양육수당(연간 34만 원)과 보육료 지원(연간 62만 원), 학비 지원(연간 12만 원)이다.

〈표 4-40〉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동거(A)		비동거(B)		차이(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가구 경상 소득 (A)	근로소득	253.6	64.0	662.7	91.1	409.1	27.1
	재산소득	24.1	6.1	22.7	3.1	-1.4	-3.0
	사적 이전소득	30.4	7.7	21.9	3.0	-8.5	-4.7
	공적 이전소득	87.8	22.2	20.5	2.8	-67.3	-19.4
	소계	396.0	100.0	727.9	100.0	331.9	-
조세 (B)	세금	9.5	43.2	40.9	49.3	31.4	6.1
	사회보장 부담금	12.5	56.8	42.1	50.7	29.6	-6.1
	소계	22.0	100.0	83.0	100.0	61.0	-
가처분소득(C=A-B)		374.0	-	644.8	-	270.8	-
소비 지출 (D)	식료품비	81.8	27.0	104.7	21.8	22.9	-5.2
	주거광열가사용품비	29.7	9.8	41.7	8.7	12.0	-1.1
	교육·보육비	1.2	0.4	37.4	7.8	36.2	7.4
	사적이전지출	27.0	8.9	50.5	10.5	23.5	1.6
	보간·피복비	33.3	11.0	40.3	8.4	7.0	-2.6
	교통통신·오락비	62.4	20.6	106.5	22.2	44.1	1.6
	기타 소비지출	68.0	22.4	99.7	20.7	31.7	-1.7
	소계	303.4	100.0	480.8	100.0	177.4	-
흑자액(C-D)		70.6	-	164.0	-	93.4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소비 항목별 지출 금액은 부모 동거 부양 가구보다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가 크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두 비교 가구 형태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상대적으로 식료품비(5%포인트)와 주거광열·가사용품비(1%포인트) 등 가구의 기본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는 교육보육비(7%포인트)의 비율이 높다. 이는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의 가구 구성원 차이, 즉 학령기 자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적 이전지출은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규모는 작지만, 부모가 아닌 기타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sup>46)</sup>

---

46) 이하 부모 부양 가구의 부모 동거 여부별 및 연도별 비교 분석(2010년과 2015년)을 실시하였으나, 기초연금의 확대 등에 따른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 외에는 큰 특징이 없으므로 이를 부표에 제시함. 분석에 활용한 2010년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58가구, 부모 비동거 부양 가구는 93가구임.

〈표 4-41〉 부모 동거 여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정부 보조금	기타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기타
												감면·보조	보조	
동거	7.6	298.9	0.0	0.0	0.0	104.9	1.12	0.0	0.0	0.0	0.0	2.5	2.9	15.7
비동거	2.4	1.7	33.6	62.4	12.2	4.4	8.9	1.1	0.0	0.0	0.0	0.4	1.5	9.8

(단위: 만 원)

주: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4-42〉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분	소비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생활·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부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기정	외식비	추거	월세	가정기	가사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부모	기타	의료	보건	교통비	통신비	교양	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람비	그 외 <sup>1)</sup>
동거	303.4	57.9	18.3	1.3	5.0	15.8	7.7	0.2	1.0	0.0	1.5	25.5	24.3	9.0	39.9	10.6	11.9	9.3	3.9	3.9	3.9	54.8
	(100.0)	(19.1)	(6.0)	(0.4)	(1.6)	(5.2)	(2.5)	(0.1)	(0.3)	(0.0)	(0.5)	(8.4)	(8.0)	(3.0)	(13.2)	(3.5)	(3.9)	(3.1)	(1.3)	(1.3)	(1.3)	(18.1)
비동거	480.8	55.5	42.2	7.0	2.6	12.1	14.7	8.8	8.3	20.3	36.0	14.5	19.8	20.5	58.1	18.1	30.3	12.3	3.6	3.6	3.6	83.8
	(100.0)	(11.5)	(8.8)	(1.5)	(0.5)	(3.1)	(2.6)	(1.8)	(1.7)	(4.2)	(7.5)	(3.0)	(4.1)	(4.3)	(12.1)	(3.8)	(6.3)	(2.6)	(0.7)	(0.7)	(0.7)	(17.4)

(단위: 만 원, %)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제4절 소결

본 장은 한국복지패널 11차(조사 시점 2015년)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표 4-43>과 <표 4-4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자녀 양육 가구 분석 결과,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4인 가구 기준)의 자녀 양육이 소득과 소비, 조세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는 자녀 양육 가구 내에서의 다양한 특성-가령, 자녀의 연령(학령 단계), 자녀 수, 모의 취업 상태, 가구 소득 수준 등-을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녀 양육 가구를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로 학령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가구 소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다른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데(58만 원, 11%), 구체적인 수혜금이 보육료 지원(연간 493만 원, 월평균 약 41만 원)과 양육수당(연간 77만 원, 월평균 약 6만 원)이다. 교육보육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지만 구성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약 17%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교육보육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는 보육비(43만 원, 10%), 중고등학생 자녀는 사교육비(66만 원, 14%), 대학생 자녀는 공교육비(72만 원, 13%)가 많은 편이었다. 사적 이전지출은 대학생 자녀 가구가 50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의 20만 원보다 약 2.5배 많았다.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소득(582

만 원)은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소득(593만 원)보다 12만 원 적은데, 이는 모(어머니)의 취업률이 7%포인트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자녀 2명 71%, 자녀 1명 78%).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분석 대상 연도의 특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취업 중인 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모가 취업한 가구는 미취업인 가구보다 소득이 더 많고 소비지출도 더 많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가 가장 크다(각각 180만 원, 103만 원).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한 가구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 중 양육수당은 37만 원 적고 보육료는 75만 원 많았다.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가구의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었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많지만,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가구 소득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성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취학 자녀 가구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많았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양육수당 수혜 금액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 수혜 금액이 늘어나 가구 소득 수준별로 미취학 자녀의 양육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을 더 많이 선택하고,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시설 보육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시설 보

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 방향에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 교육·보육비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보육비의 구성비 차이는 매우 작지만, 초등학생 자녀 가구와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높은 편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적는데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이며(구성비 각각 64%, 85%),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부모 동거 부양 가구 30%, 전체 가구 12%).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가구 소득 항목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부보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편(22%)이다. 이는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많기 때문이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소비 또한 전체 가구보다 적고, 소비 항목 구성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각각 27%, 24%)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각각 9%, 6%)은 많고, 교육·보육비(각각 0.4%, 5%)는 적었다.

동거 부모 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1명인 가구보다 소득과 조세, 소비가 더 많은데, 소득 구성비 측면에서 동거 부모가 2명이면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이 더 많았다. 소비 구성비 측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보건·피복비가 조금 더 많고, 교통통신·오락비는 조금 적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과 부양 수준은 높은 양적 관계가 있었다.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소득은 453만 원, 10만~20만 원 미만 가구는 609만 원, 20만 원 이상 가구는 728

만 원이다. 소득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 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고(약 4%포인트),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높았다(합산 약 4%포인트). 공적 이전소득의 세부 항목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 취약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소비 규모도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는데, 소비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특성 또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것이다.

(표 4-43)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소득 소비	조세
자녀 비양육 가구 대비 자녀 양육 가구 - 비양육 24%, 양육 7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비교 - 미취학 19%, 초등 32%, 중고등 34%, 대학 15%	가구소득(약 37만 원) 많음. ·소득 항목별로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많음.  ·학령 단계 높을수록 가구소득 많음. ·미취학 자녀 공적이전소득 많음.	조세 부담(약 9만 원) 많음. ·세금 비율 높음.  ·학령 단계 높을수록 조세 부담 많음.
자녀 양육 가구 (4인 기준)	가구소득 규모 차이 거의 없음 (약 5만 원). ·소비 항목에서 교육·보육비 많고, 식품·의류·주거·의료·교통·통신·오락비 작음. ·학령 단계 높을수록 가구 소비 많음.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교육·보육비 17% 수준. ·미취학 자녀 보육비, 중고등학생 자녀 사교육비, 대학생 자녀 공교육비 많음. ·학령 단계 높을수록 사적 이전지출 많음. ·2명인 경우 가구 소비 많음.	조세 부담(약 9만 원) 많음. ·세금 비율 높음.  ·학령 단계 높을수록 조세 부담 많음.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비교 - 1명 33%, 2명 67%	자녀 많을수록 가구 소득 많음. ·다만, 중고등학생 자녀는 2명인 경우 가구 소득 적음. ·자녀 수별로 미취학 자녀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 초등학생 자녀 가구는 근로소득, 대학생 자녀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차이가 큼.	조세 특성 뚜렷하지 않음.

(표 4-43)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계속)

구분	주요 결과		
	소득	소비	조세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비교 - 취업 59%, 미취업 41%	.취업한 경우 가구 소득 많음 .취업 여부별 소득 차이 미취학 자녀 가구 가장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 가구가 가장 적음. .취업한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료와 교육보육비, 취업하지 않은 가구는 양육수당 많음.	.취업한 가구는 가구 소비 많음. .취업한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보육비 많음.	.취업한 경우 조세 부담 높음. .다만 대학생 자녀 가구 중 미취업인 가구는 조세 부담(소득세, 기타) 더 많음.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 수준 별 비교 - 1분위 1/3, 2분위 1/3, 3분위 1/3	.소득분위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율 높고, 공적·사적 이전소득 비율 낮음. .다만, 미취학 자녀 가구는 소득분위 높을수록 공적 이전소득 많음(모 취업으로 시설 보육 지원).	.소득분위 높을수록 가구 소비 많음. .소비 항목별로 소득분위 높을수록 식료품비 비율 낮지만, 외식비는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거의 없음. .소득분위 높을수록 초·중·고등학생 및 중등학생 자녀 가구의 사교육비 구성비 증가.	.소득분위 높을수록 조세 부담 높음.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비교(사적 이전지출) - 부양 30%, 비부양 70%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가구 소득 많음.	.부모 부양 가구는 가구 소비 많음. .부모 부양 가구는 소비 항목에서 식료품비와 교육보육비 비율 낮음. .다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부양 가구는 교육보육비(사교육비) 비율 높음.	.부모 부양하는 가구는 조세 부담 높음.

자녀 양육 가구 (4인 기준)

(표 4-44) 노후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주요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소득 소비	조세	
전체 가구 대비 부모 동거 부양 가구	<p>가구 소득(약 97만 원) 적음. ·소득 항목별로 근로소득(164만 원) 적고, 그 외 소득은 모두 더 많음. ·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부보조금 수혜 규모 큼.</p>	<p>가구 소비(약 61만 원) 적음. ·소비 항목 구성비에서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사적 이전지출 많고, 교육·보건비 적음.</p>	<p>조세 부담 2분의 1 수준. ·세금 비율 낮음.</p>
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동거 부모 수별 비교 - 1명 89%, 2명 11% * 가구원 수 미적용	<p>2명인 가구는 가구공동화소득 많음. ·소득 항목 구성비에서 1명인 가구 근로소득 높고, 2명인 가구는 그 외소득 높음. ·2명인 가구는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주거유공자 보조금 많음.</p>	<p>2명인 가구는 가구공동화소비 많음. ·소비 항목 구성비에서 2명인 가구는 보건·의료비 높고, 교통통신·오락비 낮음(가구 구성원 특성 반영).</p>	<p>·2명인 가구는 가구공동화조세 많음. ·2명인 가구는 세금 비율 높음.</p>
노후모 부양 가구 (3인 기준)	<p>부모 동거 부양 가구의 부양 수준 높을수록 가구 소득 높고, 근로소득 구성비 높음. ·부양 수준 높을수록 가구 소득 불균형, 근로소득 구성비 높음</p>	<p>부양 수준 높을수록 가구 소비 많음. ·부양 수준 높을수록 식료품비(가정식비) 비율 낮고, 교육·보육비(사교육비) 비율 높음.</p>	<p>·부양 수준 높을수록 조세 부담 많고, 세금 비율 높음.</p>
부모 동거 부양과 부모 비동거 부양의 비교 - 동거 27%, 비동거 73% * 가구주 평균연령: 동거 61세, 비동거 45세	<p>동거인 가구는 가구소득 적음(2분의 1 수준). ·동거인 가구는 근로소득 적고, 공적·사적 이전소득 많음. ·동거인 가구는 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부보조금 수혜 규모 큼.</p>	<p>동거인 가구는 가구 소비 적음(3분의 2 수준). ·소비 항목 구성비에서 동거인 가구는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많고 교육·보육비 적음.</p>	<p>·동거인 가구는 조세 부담 작고(4분의 1 수준), 세금 비율 낮음.</p>

# 제 5 장

##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

제1절 사례연구 개요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제6절 소결



# 5

##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 <<

###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1. 사례연구의 대상

본 장에서는 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표 5-1>과 같이 자녀의 학령 단계와 모의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총 12가구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때 자녀의 학령, 모의 취업 상태와 함께 지역이 가족 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을 농촌 4가구와 도시 8가구로 할당하여 선정하였다. 사례 대상은 대전과 세종을 포함하여 충청권 지역에서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확보하였다.<sup>47)</sup>

<표 5-1> 사례연구 대상 선정

구분		자녀 학령 단계			
		미취학	초등	중고등	대학
모의 취업 상태	취업	1	2	2	3
	미취업	2	-	1	1
인원(명)		3	2	3	4

주: 자녀 학령 단계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작성.

47) 본 사례연구는 충청권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한 후 녹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sup>48)</sup> 질문의 주요 내용은 가구 관련 일반적인 특성, 가족 부양 관련 실태와 욕구 등이다. 가구 관련 일반적인 특성은 응답자의 취업 여부와 가구의 소득·소비지출 실태, 가족 부양 관련 실태와 욕구는 자녀별 부양 실태와 정책 수혜 현황, 정책 개선 사항, 부모 부양 실태와 정책 수혜 현황 등이다.

## 2. 사례연구 가구의 주요 특성

사례연구 대상 가구에서 실제 인터뷰를 실시한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46세(30대 2명, 40대 8명, 50대 2명)이며 성별은 여성 11명(92%), 남성 1명(8%)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이 각 5명이며(각각 42%), 대학원 이상 2명(17%)이다. 또한 현재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10명(83%), 무배우자 2명(17%)이며 유배우자는 배우자가 모두 취업 중이다.<sup>49)</sup>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가구원 규모가 다른데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이며, 평균 자녀 수는 2명이다. 자녀 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2명인 가구가 7가구(58%)로 가장 많고 1명인 가구는 3가구(25.0%), 3명인 가구는 2가구(17%)이다. 전체 사례연구 대상 가구에서 11가구(9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살아 있다. 이 중 1가구(9%)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5가구(45%)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해 있다(독거노인 가구).<sup>50)</sup>

48) 연구 참여 동의서는 부록 5 참조.

49) 사업부도 포함.

50) 본인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서,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 <표 5-2>의 6번 가구에 해당됨.

〈표 5-2〉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주요 특성

구분	가구 특성		가족 부양 주요 특성		비고
	모 취업 상태	자녀별 연령(학년)	자녀 양육	부모 부양	
1	취업 (배우자 사립부도)	·17세(중고등학생, 홈스쿨) ·11세(초등학생)	·청소년상담소 이용 ·방과 후, 국공립도서관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 ·부모로부터 정기적 지원 받음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임대소득
2	취업	·20세(대학생) ·14세(중고등학생)	·국가장학금, 파트타임 ·방과 후, 민간학원, 근로/자녀장려금	·생존 부모 없음	
3	취업 (한부모)	·14세(중고등학생)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특수직역연금 수혜 ·부모로부터 정기적 지원 받음	
4	미취업	·5세, 3세, 0세(미취학)	·시설 보육료 지원, 민간 학원 ·양육수당, 다자녀 장기로 감면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국민연금 수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인근 거주(차량 30분 내외 거리)	·부모 기초연금 ·미수혜, 농업
5	미취업	·21세(대학, 군 제대 후 복학 예정) ·17세(중고등학생)	·자녀 대학 학자금 직장 지원 ·민간 학원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특수직역연금 수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이용, 보청기 지원	
6	미취업	·13세(중고등학생)	·민간 학원 ·정서적 부담, 부모 교육/인성 교육 필요	·부모 동거 ·손자녀 돌봄 지원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추정)	·부모 농업

〈표 5-2〉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주요 특성(계속)

구분	가구 특성		가족 부양 주요 특성		비고
	모 취업 상태	자녀 연령	지녀 양육	부모 부양	
7	미취업	·3세, 1세(미취학)	·시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배우자 부모 인근 거주(도보 5분 거리)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	·부모 농업 ·배우자 자영업
8	취업	·4세, 0세(미취학)	·시설 보육료 지원(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장기적 지원(매월)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	
9	취업 (주말 부부)	·8세(초등학생)	·방과 후, 민간 학원	·정기적 지원(매월) ·부모, 국민연금 수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이용	
10	취업	·25세(대학생, 근 제대 후 휴학 중) ·22세(대학생, 근 복무 중)	·학교장학금, 자격증 공부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국민연금 수혜, 대한노인회 임원 활동 ·부모 인근 거주(주 1~2회 방문)	·남성 인터넷부
11	취업 (한부모)	·19세(대학생) ·17세(중고등학생)	·국가장학금, 근로 장학생, 파트타임 ·정규 과정 야간 자율학습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추정)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12	취업	·12세, 12세(초등학생) ·6세(미취학)	·민간 학원 ·유치원, 다자녀 전기료 감면	·명절, 기념일 등 비정기적 지원 ·부모,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혜 ·부모로부터 비정기적 지원 받음(주택대출금 지원) ·본인 부모 인근 거주(차량 1시간 거리)	·부모 농업

##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 1. 가구 소득<sup>51)</sup>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값<sup>52)</sup> (이하 가구균등화소득)은 평균 248만 원이다. 이는 제4장의 양적 분석에서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균등화소득 264만 원<sup>53)</sup>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가구균등화소득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 1가구(8%), 100만~200만 원 미만 3가구(25%), 200만~300만 원 미만 5가구(42%), 400만 원 이상 3가구(25%)이다.<sup>54)</sup>

가구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사업소득이며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 84%를 차지한다. 이는 제4장의 양적 분석에서 자녀 양육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비중 91%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사례연구 대상 가구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이 중 7가구(58%)는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 이상에 달한다.

그 외에 공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8가구(67%),<sup>55)</sup>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2가구(17%)이다.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도 1가구(8%)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자녀의 양육수당이나 급식비, 동거 부모의 공적연금, 본인의 특수직역연금, 자녀장려금 등이다. 시설 보육료 지원 등은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시설 보육료 지원은 가구를 거치지 않고 곧장 어린이집 등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 양육가

51) 제5장의 사례연구 대상은 12가구이므로 양적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장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가구의 소득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함.

52) 월평균 가구 소득을 '로그를 취한 가구원 수'로 나눔.

53) 4인 자녀 양육 가구 기준 월평균 527만 원을 가구 균등화한 값임.

54) 가구균등화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는 78만 원이며 최대 531만 원임.

55) 공적 이전소득은 조세에 대한 혜택 부분에서 살펴볼 것임.

구는 수혜 금액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이며, 모두 부모에게서 사적 이전소득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부모는 특수직역 연금을 수급하거나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등 자녀보다 경제 상태가 좋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아버님이 공무, 공직에 있다가 나오서 가지고. (공무원 연금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님이 어쨌든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가, 부담감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도……. 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 2. 가구 소비지출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보다 어려웠다.<sup>56)</sup> 사례 연구 대상 가구 대부분이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지출하는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 그거 물어봐 가지고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뻘히 알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 가지고 잘, 얼마 나갔는지 몰라요.”

“아 이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동,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라, 가계부를 안 써서.”

---

56) 소득은 소비지출에 비해 구성 항목이 적고, 일반적으로 통장에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소비지출은 소비지출 품목과 지출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기억하기 어렵고 추적하기도 쉽지 않음.

본 절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과 부모에게 지급하는 사적 이전지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251만 원이며, 이 중 식료품비가 평균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4장의 양적 연구결과에서도 4인 기준 자녀 양육 가구는 식료품비의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성비는 이보다 낮은 22.3%였다.

소비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가구(42%)는 교육비가 식료품비와 동일하거나(2가구) 오히려 더 많다(3가구).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민간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거나, 여러 명의 자녀에게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맞벌이로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중략) 그리고 방학 때는 특강비가 있고, 그것도 이제 따로따로 비용 발생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월평균, (고등학교 3학년 딸) 애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 것 같은데. (중략)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미술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자율학습을 못 하고 학교 수업이 5시에 끝나면 학원으로 가요, 미술학원으로. 그래서 10시까지 수업을 해요.”

“(월 교육비) 그래 다 하면 작은애도, 한 돈 100만 원, 둘이요.”

“아이돌보미 선생님도 여기 포함하는 거예요? (네, 포함해서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140만 원 가고, 잠깐만. 선생님한테도 가고, 둘째 애한테도 가고 하니까, 160~170(만 원) 정도?”

가구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사적 이전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매월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는 2가구(17%)이며 평균 25만 원 수준이다. 이는 자녀 보육 및 교육비 95만 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남성 배우자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sup>57)</sup> 이들 가구는 맞벌이를 하며 가구균등화소득이 4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양호하다. 한편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든 가구는 명절이나 생일 등의 기념일에 부모에게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비소비지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는 7가구(58%)이다. 부채를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사업자금이나 주택 마련 등이다.

### 3. 조세 및 사회보험

사례연구 대상자는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의 금액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은 급여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득세와 주민세, 연말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공제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공제한 후에 지급된다. 또한 기관에 따라 노조원 회비나 모임 회비 등을 공제하기도 한다.

“국가에서 떼는 보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작년에도 했는데, 저 그런 거 얼마지 모르는데.”

### 4. 정책 수혜

사례연구 대상자들은 조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수준은 잘 알지 못

---

57) 1가구는 여성응답자의 부모 모두 사망함.

하지만 조세 부담에 따른 정책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연령 대별로 정부의 정책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5세 이하 미취학 자녀는 무상 보육으로 모두 정책 대상이므로 양육 환경에 따라 시설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시설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다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 어린이집. 갈 데가 없어서요. 국공립은 아예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게 11월 말까지 있대요. 들어가는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그리고 이게 국공립은 뭐 저기 맞벌이다, 소득 수준이 얼마다, 다 따지기 때문에 아예 순위에서 3순위로 밀려나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민간 학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방과 후 있어요. 방과 후를 이번 학기에 3개를 했거든요. 개가 뭐 강익비, 재료비 해 가지고 8만 6000원 지불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5시까지 쪽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시간표 짜 가지고 뭘 하긴 하거든요. EBS방송도 보다가. 그 방과 후는 과목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과 후 돌봄의 참여는 자녀가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향에 따라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목 선택에 자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중략). 방과 후라든지 자꾸 이런 데 가는 걸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방과 후에 참여하지 않아요.) (중략)”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방과 후, 학교에서 오래 남아 있는 거를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고. 이제 아, 방과 후도 참 저거는 했었구나. 저 생활체육, 노는 거. 그거는 했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생활체육 같은 거, 뭐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노는 거 아무튼. 공부 말고 그런 거는 해요.”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등록금은 한 번도 안 냈어요, 대학교 가가. 국가장학금 잘돼 있더라고. 요새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 전혀 못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죠. 다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진짜 받고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인 장학금이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총당이 되는 거예요.”

그 외 정책 수혜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 차상위나 한부모 등 취약 계층 대상 정책을 수혜하는 가구도 있다(3가구, 17%).

“애들 교육, 제가 차상위 이번에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지급, 교육 급여 받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아 그거 애들 간식비 나오는 거.”

“교육 급여는 연간이고, 네, 이거는 급식비 나오는 거는 매달이고, 연간으로 나오는 건 뭐, 문화누리카드. 그다음에 겨울철에 뭐 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거는 뭐 한부모 지원 정책으로 차상위 정책으로 나오는 거라서. (중략)”

“근로 장려금 일 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게 한 (연간) 170(만 원).”

###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자녀 양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욕구를 살펴본다.

#### 1.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 가. 학령 단계별 자녀 양육 특성 및 양육 부담

학령기의 자녀는 대부분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또는 민간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령 단계별로 특성이 조금 다르다. 시설 보육을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는 대부분 보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는 방과 후, 중고등학생 자녀는 민간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치원은 저기 특별활동비인가, 있어서 내긴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특별활동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거죠?) 다 신청을 하는데, 애들은 다 하니까. 그냥 우리 막내가 안 하면 우리 애만 다른 데 가 있어야 되니까.”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초등) 학교 다닐 때야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뭐 방과 후 수업 있으면 하나 하고 없는 날은 친구들 하고 놀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문화원 가서 놀고(중략).”

“(중학교) 요일별로 방과 후 틀리고 6시부터 8시까지의 학원 가고.”

“(고등학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미술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자율

학습을 못 하고, 학교 수업이 5시에 끝나면 학원으로 가요, 미술학원으로. 그래서 10시까지 수업을 해요.”

사례 응답자들은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 여력만 있다면 자녀에게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자녀 1명에게 월 55만 원 사교육비 들어감) 저는 거의 안 들어간 게 저래요. 저 힌 거의 학원 안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진짜 안 들어가는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요. 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거죠.”

자녀 양육 가구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서적인 이런 부분.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의 됬됨이를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커요, 클수록. 어릴 때는 별로 잘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좀 크니까 내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중략).”

## 나. 자녀의 연령, 출생 순위 등에 따른 부양 특성

자녀의 연령 및 출생 순위에 따라 양육 부담이 다르다. 영아 자녀의 경우 유아용품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 영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크다.

“(양육비 부담에 대해) 유아용품이 제일 크죠. 애기들 (기저귀), 장난감, 보행기, 뭘 카시트 이런 거, 여러 가지. 애기들이 쓰는 물품 다.(생략)”

대학생 자녀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스스로 용돈을 충당하거나 여행 등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신 이제 본인이 벌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공모전도 하고. 또 방학 때는 이거와 별개로 근로장학생을 신청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뭐 학교 근처에서 하든지, 집 근처에서 하든지 원하는 곳에, 경쟁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와서 여기 연구소, ○○○○○연구원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로, 연구사로 지금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돈을 벌어서 충당이 되더라고요.”

“예, 자가 벌어서 (해외여행) 가니까.”

자녀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 자녀가 둘째 자녀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첫째 자녀는 처음 태어난 아이로 책과 옷 등 아이를 위한 물품들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첫째 자녀여서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둘째 자녀는 첫째 자녀의 책과 옷을 물려받을 수 있고, 첫째 자녀의 양육 및 사교육에 따른 경험치가 자녀 양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략). 첫째가 오히려 돈을 많이 썼지. 둘째는 거의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중략) ○○아트 뭐 이런데, 그런 뭐 고급, 좀 비싼 데였거든요. ○○○○, 뭐 그리고 책을 많이 사 주고, 동화책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엄청나게 많이 사 줬지. 그 둘째는 이제 그 형 것 그냥 물려받아 쓰고. 학원 다니고 뭐, 뭐 시키고 이런 걸 한번도 안 했지. (중학생 되어서) 지금 학원, 지금 간계, 두 달 간 계 처음이에요. 학습지 한 달 한 적도 없고.”

다자녀가구는 양육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애가 셋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도 다 달라서 엄마가 집에서 애를 데리고 있으면, 그 애들한테 다 묶여서 집안일을 전혀 못 할 때가 많아요.(생략)”

#### 다. 자녀 양육 정보 습득 경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서 정책 정보를 들어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주변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추가 정보를 얻고 있다.

“(중략) 얼핏 ○○이 있다는 거는 들어 가지고 친구가, 주변에서 아, 그럼 이거 ○○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여기 그 아시는 분이 면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데 가서 만나서 다른 것도 뭐 알게 되고, 하도 많아. 그래서 저는 많이, 많이 접해 봤어요.”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TV나 인터넷 검색,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정부 사업을 알게 되기도 한다. 정부 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이 먼저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제가 관심이 있을 때, 굳이 찾았을 때,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정치, 사회, 경제. 저 같은 경우는 좀 IT. 딱 관심 있는데 이 정도만 보니까. 그리고 기사가 났을 때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 외에는 크게 정보를 접할 수가 없죠.”

“그때는 학교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등록금(청구서를) 보면 우리 딸이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나도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죠.”

“(양육수당, 시설 보육료 지원) 그런 건 워낙 유명하니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같은 데도 그냥 뭐, 그냥. 주로 뭐 지인들한테 듣기도 하고. TV나 지인 주로 하죠. 검색 어쩌다, 우연히 발견하면 아는 거고. 있는 자체를 모르니까 검색 자체가 안 되죠.”

## 라. 노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성인 자녀들은 맞벌이 및 시설 보육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대해 노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정기적인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인 경우도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노부모의 돌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잠깐씩 맡기고, 몇 시간씩 맡기고 불일 보러 한번씩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으로 와서 봐 주시기도 하고. 잠깐씩.”

“어릴 때 잠깐 봐 주셨어요. 애들 어릴 때. (부모님이요?) 네. 아 그때 당시에 맞벌이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예요?) 그렇죠. 애들 막 17개월, 막 이럴 때, 잠깐 잠깐씩 봐 주셨어요.”

자녀는 이러한 노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략). 막상 지금 좀 쉬면서 본인의 어떤 시간들, 그것을 좀 여유 있게 가져

야 할 때, 막 허리 아프고 막 여기저기 다 쑤시고 힘들고 하는데 사실 아이 양육을 맡는다는 거는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짐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 2. 자녀 양육 정책의 평가 및 욕구

### 가.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소년문화원 등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학 등록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원에는) 책도, 있고 영화 보고 하고, 풋볼도 치고 뭐. (중략) 탁구장도 있고, 그 뭐고, 그 컴퓨터.”

“등록금은 한번도 안 냈어요. 대학교 가가. (중략) 국가장학금 잘돼 있더라고. 요새는. (중략) 이거는 거저 키우는 거예요. (중략) 애는 국립을 가는 바람에 등록이 100%로 다 돼.”

청소년상담소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사례연구 대상 가구 중 자녀가 외국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홈스쿨링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 청소년상담소를 알게 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족스러워하며 그 전에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청소년상담소,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이게 멘토로 해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쪽에 제가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검정고시 치는 날도 다 케어해 주시더라고.”

## 나. 다자녀 가구 정책의 낮은 체감도와 농촌 지역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요. 셋째, 다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어쩐가. 받는 거는 없어요. 아, 전기료. 전기료 해야 최대 만 오천 원.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뭐 있더라. 아 엄마가 맞벌이 아니어도 5시까지 봐주는 거 돌봄 신청 가능한 거, 방과 후인가 보다. 방과 후 가능한 거 그거 하나 있고, 없어요. 남들은 셋째니까 혜택 많이 보지 하는데, 저는 정작 받는 것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유치원들도 요즘은 다 지원받고 하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다. 농촌 지역은 집과 학교가 멀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하루 운행 횟수가 2, 3회로 등 매우 적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통학 지원 차량이 있기도 있지만,

중학교 이상은 이러한 서비스가 없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요즘에는 돌 되기 전부터 애들 문화센터 같은 데 다니면서, 저기 뭐, ○○○, 감각, 오감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그거 하려면 ○○이나 ○○을 나가야 돼요. ○○○○에서.”

“(둘째 자녀가 농촌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스쿨버스가 없어서 그게 불편해.(중략)”

#### 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정책 욕구 상이

산모도우미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자녀의 발달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확인된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자녀의 출생 순위 등을 고려하여 산모도우미의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시설 보육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등하원 차량 이용을 산모도우미가 지원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모도우미 서비스 시간은 본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략) 솔직히 산모도우미 3주도 너무 짧고요.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중략) 제가 셋째가 완전히 영아여서 젖 물리고 있거나 이럴 때, (다른) 애들이 어린이집 차량을 타야 되면, 이 등하원 때 애를 인솔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젖 물리다가도 빼고 우는 애 안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니까 그런 시간을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산모도우미. (중략) 원하는 시기부터 3주. (중략) (추가된 기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있더라도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죠.”

사례연구 대상 가구 중 자녀의 발달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역 내 민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큰애가 유독 엄마 떨어지는 거 불안해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그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상담하러 갔더니, 상담은 처음에 교수님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치료 같은 거 할 때는 거기 학생이 실습 삼아서, 연구 삼아서 같이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대학생의 기숙사 확대에 대한 정책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기숙사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학, 우리가, 저도 있지만 바깥에서 자취를 한다면 애들이, 특히 지방 애들이 그런 도심으로 가서 한다면 진짜 큰 부담이더라고요. 주위도 보면 엄청 큰 부담이고 해서, 저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중략) 왜냐면 (기숙사는) 학교에 있으니까 엄마들은 안심이 되어서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니까 여러모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로 방 얻는 걸 보면 여러모로 불안하죠.”

## 라.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자녀 양육 가구의 일부는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자녀 양육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주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잘 모르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대로만 애를 양육을 한 거잖아요. 내 들어 있는 습성대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잘못된 것을 또 대물림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해 줄 거야.”

“저는 이제 사람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준비 안 된 부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 교육의 내용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들이며, 이 중 자녀의 인성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교육의 내용이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다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든, 부부간에든 우리가 학업적인 공부 많이 시켰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 됨됨이나 이런 공부들은 시켜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썄 언제하면 좋을까. 그 산부인과 병원을 가듯이, 아이들 점검받으러, 이제 부지런한 엄마들은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기는 하잖아요. 근데 글썄.”

## 마. 새로운 가구 형태 출현에 따른 가족 부양의 변화

자녀 양육 가구 사례연구 대상자 중 일부는 자신의 형제자매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보면서, 자신의 자녀가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즉 가족 가치관 및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부양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저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저희도 저만 결혼하고 이제, 저만 결혼했고 오빠 아직 직장 안 다니고 동생은 음악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시댁에서도 넷인데 이제 둘만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그니까 자식이 없는 채로 늙어 갈 고모, 이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부양, 부양이 부모 부양보다 (부모의) 형제 부양을 해야 될 때가 올까 봐. 그걸 좀 걱정하고 있어요. 답은 없지만.”

##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 대상 가구의 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평가와 정책 욕구 등을 살펴본다.

### 1.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 가. 노부모 부양의 자녀 간 분담과 장남의 부담

노부모의 부양은 한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며, 자녀들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다.

“저희가 그니까, 친정 쪽은 다달이 이렇게 돈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큰돈이 필요한, 거기에서 지출하거나 또 각자 조금씩. 지금 계 모임에 월 4만 원씩 모으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거 조금 쓰고, 더 필요하면은 이제 각자 쓰고.”

그러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부양 형태나 수준이 다르며, 소비 항목별로 자녀가 분담하거나 특정 자녀가 부모 부양 부담을 더 많이 지기도 한다.

이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부양 양상이 다른데, 아들보다는 딸이 정서적인 부분과 도구적인 부분에서 노부모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도련님네는 안 드려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안 드리는 대신에요. 의료비를 회사에서, 은행 다니는데 회사에서 부모님 의료비를 약간 정산해 줄 수 있어요.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좀 부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련님네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고요. 언니네도 드리지는 않아요. 따로 드리지는 않는데 현물로 많이 가요. 뭐 필요한 가재도구나 뭐 집안에 일상용품들을 사 드리거나, 옷을 사 드리거나, 이런 현물로 많이 가요.”

“(중략). 언니가 그냥 엄마 옆에 딱 붙어 가지고 그냥, 언니가 너무 잘해요. 우리 언니는 진짜 완전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또한 자녀 중에서 장남이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딸은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적으로 저희가 장남이라서, 저희가 모셔야 된다고 모두 다 생각해요. 모시든, 뭐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남이니까 이제 그게 약간 큰일 같은 거는 많이. 일단 장남이라는 그거 때문에, 명절이나 그럴 때는 마음이 일단 부담이 돼요.”

“(중략) (부모님이) 남아 선호 사상이 크신 분들이라서,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신 분들이라서 뭐 다 아들한테 유산 주고 할 거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친정까지는 하지 않아요. 가끔 뭐 용돈을 드리지.”

장남인 경우 부모 부양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다른 사례도 확인된다.

“저는, 아들이니까 저는 이제 더 가까워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 하고 싶은데, 또 요즘은 워낙 여자분들. 집사람은 또 생각이 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제가 하나예요. 2대 독자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들이 귀한데, 저희 집사람이 막내로 자라서 그런가, 이런 면에선 많이 저하고 부딪혀요. (결혼 후 부모님과 동거 생각해 보셨나요?) 6개월 정도 살았어요. 딱 6개월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같이 안 살아서 그런가, 이 문제를, 부모님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사람하고 아, 도저히 뭐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 나.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교류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총 12가구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살아 있는 경우는 11가구이며, 이 중 노부모에게 매월 사적 이전 지출을 하는 가구는 2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11가구 모두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노부모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님 기념일이나 명절에) 뭐 용돈 드리고. 뭐 선물 사 드리고 하는 거죠.”

“(부모님 기념일이나 명절에) 평균 20만 원, 그니까 생일 때마다 20만 원씩요. (중략) 매달 돈 드리는 건 없어요.”

또한 자녀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상관없이 평소에 부모에게 일상생활 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차량 연료) 아버지는 가끔 가다 제가 넣어 드리기도 하고, 아버지 용돈으로 쓰시고.”

한편 노부모 부양 실태는 자녀와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자녀가 일방적으로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적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녀가 노부모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노부모의 지원은 손자녀의 교육비나 용돈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중략) 이제 부모님이 매달 좀 꾸준히 50-60(만 원) 정도는 보내 주셔서 그거. (중략)”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 받아 쓰지요. (어머니한테서요?) 예. 손주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외국에서 살 때) 우리 애 같은 경우도 학비, 미국 학비 이런 거는 뭐 거의 한 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거 다 지원받아서 했죠.”

“시어머니는 (용돈을) 드리면 다시 (손자녀 용돈으로 돌아)오고. 친정엄마는 매달은 아니고 그냥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가서 드리고 하는 거요.”

## 다. 노부모의 보건의료비 지원 및 간병, 정서적 지지

자녀는 노부모의 병원비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노부모가 아프면 의료비 자체보다는 간병에 드는 비용이나 직접 간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한다.

“올해 참, 봄에 한번 대상포진으로, 한 일주일 넘게, 열흘 정도 넘게 입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치료비는 이제 제가 계산 안 하고 동생이 계산했는데, 한 30만 원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나 열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치료비가 사실은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그 왜 골밀도를 높이는 주사를 일년에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를 한 일 년 넘게 맞았어요. 한 달에. 그거는 형제들이 같이 나눠서 내 줬는데 그렇게 한 일 년, 일 년 반 정도 맞았네요.”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진짜 건강하신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건강이 제일. 의료비가 많이 들죠.) 네. 의료비 안 들어가야지 그게 자식들한테 좋은 거지, 이제 한 분이라도 아프시면 그때부터 목돈이잖아요. 이제 가족 간의.”

“(중략).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 보니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병원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게, 돌봄이더라고.”

부모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 자녀는 부모의 힘겨운 모습에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자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건강 수준은 상당히 양호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씩 우울해하시고 그래서. 많이 약해지셨어요.”

자녀의 부모 부양은 경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부담 수준이 다르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0~10점으로 놓고 본다면) 1 정도. (심리적인 부담감은?) 심리적인 거. 아, 상당히 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8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신경 많이 쓰이시죠?) 엄청 쓰이죠. 힘들어 죽겠어요.”

## 라. 노부모와 근거리에 살며 부양 및 교류

자녀는 결혼하면 분가하여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지만, 노부모 근처에 살면서 노부모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때 자녀의 부모부양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중략). 동생 내외가 부모님 옆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옆에 살아서 이제 그렇게 동생 내외가 어떤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옆에서 같이 보살펴 드리는 편이고.(중략)”

“그 생활비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거. 식자재 뭐 이런 거. 쌀, 뭐 이런 거. 과일, 뭐 이런 거 다... (중략) (큰오빠와 부모님 집 거리가 차로 15분 거리).”

한편으로 부모가 자녀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도 한다. 부모가 이사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와 자주 교류하고 싶어서, 또는 자녀의 가사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누가 ○○에, 옆 단지에 사시고요. 시누가 뭐 애 교육 때문에 ○○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랬다가 다시 ○○으로 오셨거든요. ○○은 못 따라가시고. 하여튼 일 년 안에, 바로 여기 또 (시어머니가 시누를) 따라 이사를 가셨거든요. 건물 있던 거 파시고요. 집 딱 봐 가지고 계약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시누를) 따라가신 거예요.”

## 2. 부모 부양 정책의 평가 및 욕구

### 가. 부모의 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부모님의 주요 소득원으로 알고 있으며,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한다.

“(중략) 아버지로는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조금 나오잖아요, 엄마랑. 그게 뭐 몇 십만 원 안 돼요. 그걸로 용돈 쓰시는 거지. 제가 용돈을 드리지는 않는 거죠. 거의 못 드리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어머니가 잠깐 직장을 다니셨는데 국민연금을 몇 년 내셨어요. 그래서 몇 년만 더 넣으라고 하는데 그냥 안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나중에 용돈 제대로 못 드릴 테니까 그것만 넣어 드릴게, 하고서는 넣었는데 그게 지금은 저보다 나아요. 매달 용돈 나오잖아요, 연금에서.”

또한 사례연구 대상 가구는 부모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다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을 조금 적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략) 근데 제가 또 살아 보니까 이게 월급 갖고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그 상황이고, 저희도 감사해요. 항상. 그걸 안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시댁에 돈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연금, 이제 제가 용돈 안 드리는 게 감사한 거죠. 아버님이 공무원,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나 일부 자녀는 부모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히 짐작하는 모

습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노후 소득으로서 연금의 역할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가 있으니까, 지금 받으시겠쥬? 정확하게 뭐 금액이며...(잘 모릅니다).”

“그 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어떤 연금인지는 모르지만 그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 돈으로 생활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더 하시는 걸로.”

## 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과 신뢰 공존

산업화와 핵가족의 일반화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가구 형태이다. 요양원과 요양시설이 급속히 확대되어 자녀와 따로 사는 노부모는 노년기 이들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부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노인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녀는 노부모의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생각해 본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공존하고 있다.

“아직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뭔가 주변에서 다 안 좋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만 들어서.”

“생각은 해 봤쥬.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으면 당연히 내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이러면 자식들하고 살지 않고 당연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그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프시면,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요양원 많이 들어가셔요. 가족이 모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들어가시는 건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되면 가서도 괜찮다고, 왜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거기는 공동생활이라 주위에 같은 연배들, 친구 분들 가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 다. 노인 요양시설의 질적 개선 필요

자녀는 부모와 동거하기보다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의식을 잃고, 뭐 그러면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아버지는 맨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되면, 산소호흡기 꽂지 마라, 길게 가는 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좀 시설 좋은 데 알 아보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러나 본인의 부모가 거주할 요양시설은 현재 수준보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다니는 게 아니라 행동반경이 좁아지잖아요. 그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갖다 나한테 해 주다 보니까 건강이 더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더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리 근육이 마르면서 모든 기능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양원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활동적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 충분히 움직이고 이런 것이 동반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일이지 한 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흔히 가는 요양원 같은데 안 돼, 왜냐면 거기는 가면 오래 못 버틴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몸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금방 반쪽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좋은 데 맨날 스포츠댄스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재미있게 해 주고, 시설 좋고 이러는 데, 운동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리해 주는 데, 이런 데는 뭐 원하신다면. 근데 거기에는 충분한 돈이 따라야지 가능한 거라 그게 원한다고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요양원은 아니라고 봐요.”

## 라. 노인의 자립 생활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노인은 생애 주기상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노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장보기, 은행 업무 보기, 병원 가기 등 외출할 때 주로 자녀 등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도움은 자녀가 가까이서 살고 근무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 가구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아플 때 집과 병원 간 이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중략). 전에는 혼자 계시면서 119 타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아 엄마가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교통비가 또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한 그 교통비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실 때 짐이 많으니까. 엄청 힘든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중략)”

##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본 절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이중 부담 실태와 부담 수준,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부모 부양보다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

사례연구 대상 가구별로 부양 부담 수준은 달랐지만, 모든 가구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부양 대상을 자녀와 노부모를 구분하여 경제적 부양 부담이 0~10 점 중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녀 부양 부담은 평균 4.9점, 부모 부양 부담은 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사례 조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생각보다 요즘은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로 혼자서는 일해서 살기가 힘들고 아이들 육아도,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또 부양한다는 거는 되게 힘들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래도 유치원 보내고 저렴한 문화센터 같은 데를 많이 접하게 하고….(중략)”

“부모님들한테는 여기서 드리는 게 없죠, 거의. 자녀한테 거의 100%. (중략) 현재 부모님들이 능력이 좋으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일단 아직은 드리는 게 없고. 이제 아무래도 자녀다 보니까 거의 자녀한테 다 쏟죠, 저희는.”

자녀 양육으로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모 보다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

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돌보면 그 형제자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의지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략) 항상 마음으로 이제, 이제 조금 힘이 없으시잖아요. 많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가 살림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나 뭐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 2. 자녀 양육-노부모 부양의 대체 관계 존재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적(trade-off)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부모 부양 금액을 줄여서 자녀 양육 비용에 보태겠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은 대체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상대성이, 상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부모님) 용돈을 줄이죠. 자녀를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고. 부모를 줄이고 싶죠.”

노부모 부양은 내가 아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부모 부양보다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둔다는 의견이 있다.

“아마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은 부모한테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한테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제 아이들의 부모는,

엄마는 저 혼자지만, 부모님의 자식은, 저 말고 오빠들도 있으니깐. 아무래도 그게 좀 분산이 그렇게. 그렇죠.”

한편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의견은, 가족 부양은 부모 부양보다 자녀양육에 우선순위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성인 자녀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진다. 만약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이 약간 유동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또 많이 들어가다가, 또 안 들어갈 땐 안 들어가다가, 시기가 있는 거니까. 그 시기 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냥 하고 여기서 (부모님) 드릴 거 드리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때만 챙겨서 드리는 거니까.”

### 3. 자녀 양육-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변화

가족 부양의 부담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며, 특히 노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노부모가 급성질환으로 아프게 되면 경제적 및 비경제적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 부양 부담은 일시적인 것으로 노부모의 병이 호전되거나 완쾌되면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에 계실 때, ○○에 하루 걸러서 다녔으니깐.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 (중략) 어른이 아프게 되면 상대적으로 애들한테는 신경을 못 써요. 어른한테

집중해야 되니깐. 그거는 특수한 상황일 때, 당연히 부모니까, 그 시기 때는 애들한테는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 일단 아버지가 아픈, 그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 제6절 소결

제5장의 양적 분석과 일관되게,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과 식료품비가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자는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혜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대부분 자녀가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나 민간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며, 이러한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 지인을 통해 접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자녀 연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다르고,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부양 부담이 달랐다.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 양육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부모님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 방법이 무엇인지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 부양 형태나 수준이 다르며,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에게 매월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는 2가구(17%)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구는 맞벌이를 하며 소득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비정기적으로, 명절이나 생일 등의 기념일에 부모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자녀 가구는 노부모에게서 사적 이전소득을 받는데, 이들 부모는 특수직역 연금을 수급하거나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등 자녀보다 경제 상태가 좋은 특성이 있었다.

노부모가 아프면 의료비 자체보다는 간병에 드는 비용이나 직접 간병 하는 것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주거와 관련하여 요양시설 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불신과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모든 가구가 자녀 양육이 노부모 부양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녀 양육으로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모보다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녀는 노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 관계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였다. 이때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고,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만약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산모도우미 서비스 확대, 농촌 지역 자녀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대학생 기숙사 확대, 부모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확인되었다. 노부모 부양 지원은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 이동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욕구가 확인되었다.



제 6 장

##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 제3절 소결



# 6

##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본 장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아동, 노인, 가족 정책 등과 관련한 전문가이며, 총 7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50명에게서 설문지를 회신받았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성비는 남자 36%(18명), 여자 64%(32명)이며, 평균 경력은 16년 3개월이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주간이다. 설문지는 전문가 자문과 양적 연구 결과, 사례 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 이행 실태, 정책 개선 방향 고려 요소, 공사 역할 분담의 방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 1.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과 이행 실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평가는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중요한 편이다. 5=매우 중요하다)로 파악하였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절대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정책(86%)이 부모 부양 정책(44%)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미취학 자녀(76%), 초등학생 자녀(44%), 중등학생 자녀(22%), 대학생 자녀(18%) 순으로 높아,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정책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연령 집단별로는 후기 노인(68%)이 전기 노인(18%)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평가

(단위: %, 점)

구분	빈도						환산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양육 정책	-	-	2.0	12.0	86.0	100.0	4.8	0.4	
부모 부양 정책	-	-	10.0	46.0	44.0	100.0	4.3	0.7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	2.0	-	22.0	76.0	100.0	4.7	0.6
	초등학생 자녀	-	-	12.0	44.0	44.0	100.0	4.3	0.7
	중등학생 자녀	-	2.0	10.0	66.0	22.0	100.0	4.1	0.6
	대학생 자녀	-	16.0	32.0	34.0	18.0	100.0	3.5	1.0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	-	20.0	62.0	18.0	100.0	4.0	0.6
	후기 노인	-	-	4.0	28.0	68.0	100.0	4.6	0.6

주: 1)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또한 정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절대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그림 6-1 참조). 상대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10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다.

전문가는 부모 부양 정책(4.3점)보다 자녀 양육 정책(5.7점)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학령 단계별로는 대학생 자녀(1.6점), 중고등학생 자녀(2.2점), 초등학생 자녀(2.7점), 미취학 자녀(3.6점) 순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부모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4.2점)보다 후기 노인(5.8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표 6-2 참조).

〈표 6-2〉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평가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 양육 정책	5.7	1.0	3.0	7.0	
부모 부양 정책	4.3	1.0	3.0	7.0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3.6	1.1	1.0	7.0
	초등학생 자녀	2.7	0.5	1.0	4.0
	중고등학생 자녀	2.2	0.5	1.0	4.0
	대학생 자녀	1.6	1.0	0.0	4.0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4.2	1.0	2.0	7.0
	후기 노인	5.8	1.0	3.0	8.0

주: 1) 자녀-부모 영역, 자녀 학령 단계별 영역, 부모 연령 집단별 영역의 각 영역 총점을 10점으로 하여 평가한 상대적 중요성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그림 6-1]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단위: %, 점)



- 주: 1) 절대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2) 상대평가는 자녀-부모 영역, 자녀 학령 단계별 영역, 부모 연령 집단별 영역의 각 영역 총점을 10점으로 하여 평가한 상대적 중요성임.  
 3)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교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4)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한편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 이행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절대평가를 살펴보면, 정책의 중요성 평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준다.

이행 실태 절대평가는 5점 척도(1=이행이 매우 미흡하다, 2=이행이 미흡한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이행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5=매우 잘 이행되고 있다)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 이행 실태에 대한 평균 점수는 자녀 양육 정책(3.0점)보다 부모 부양 정책(2.5점) 이행 실태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자녀 학령 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3.2점), 초등학교 자녀(3.0점), 중고등학교 자녀(2.8점), 대학생 자녀(2.6점) 순으로 낮게 평가하며, 부모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2.8점), 후기 노인(2.4점) 순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

다. 특히 후기 노인 부양 정책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절반(매우 미흡 20%, 미흡 30%)으로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3 참조).

〈표 6-3〉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절대평가

(단위: %, 점)

구분	빈도						환산 점수		
	이행이 매우 미흡하다	이행이 미흡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이행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이행되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양육 정책	8.0	28.0	26.0	34.0	4.0	100.0	3.0	1.1	
부모 부양 정책	16.0	36.0	30.0	18.0	0.0	100.0	2.5	1.0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10.0	18.0	18.0	48.0	6.0	100.0	3.2	1.1
	초등학생 자녀	4.0	26.0	36.0	30.0	4.0	100.0	3.0	0.9
	중고등학생 자녀	16.0	16.0	48.0	16.0	4.0	100.0	2.8	1.0
	대학생 자녀	2.0	8.0	36.0	38.0	16.0	100.0	2.6	0.9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4.0	32.0	46.0	18.0	-	100.0	2.8	0.8
	후기 노인	20.0	30.0	38.0	12.0	-	100.0	2.4	0.9

주: 1) '매우 이행이 잘되고 있다'를 5점, '이행이 매우 미흡하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 2.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개선 방향 고려 요소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고려 요소는 인구구조 변화, 가족 가치관 변화, 가구 형태 다변화, 가구 소득별 욕구 차이, 자녀-노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 세대 간 형평성, 경제성장 속도, 재정 지속 가능성이다. 제시된 고려 요소의 중요도는 리커트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그

저 그렇다, 4=중요한 편이다, 5=매우 중요하다)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구조 변화(4.5점), 가족 가치관 변화(4.5점), 재정 지속 가능성(4.4점), 가구 형태 다변화(4.3점), 자녀-노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4.2점)은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별 욕구 차이(3.9점), 세대 간 형평성(3.7점), 경제성장 속도(3.4점)는 4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에서 인구구조 변화(60%), 가족 가치관 변화(56%), 재정 지속 가능성(50%)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따라서 인구구조와 가족 가치관 변화에 기반을 둔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을 수립하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6-4〉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려 요소의 중요도

(단위: %, 점)

고려 요소	빈도						환산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1) 인구구조 변화	-	-	10.0	30.0	60.0	100.0	4.5	0.7
(2) 가족 가치관 변화	-	2.0	6.0	36.0	56.0	100.0	4.5	0.7
(3) 가구 형태 다변화	-	-	6.0	56.0	38.0	100.0	4.3	0.6
(4) 가구 소득별 욕구 차이	-	2.0	30.0	48.0	20.0	100.0	3.9	0.8
(5) 자녀-노부모 부양의 이중 부담	-	-	14.0	56.0	30.0	100.0	4.2	0.7
(6) 세대 간 형평성	2.0	4.0	32.0	48.0	14.0	100.0	3.7	0.8
(7) 경제성장 속도	-	6.0	46.0	46.0	2.0	100.0	3.4	0.6
(8) 재정 지속 가능성	-	-	12.0	38.0	50.0	100.0	4.4	0.7

주: 1)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한편 <표 6-4>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의 연장 선상에서 조세 부담 및 조세 저항 가능성, 비공공 부문의 자원 확보(시민사회 성장, 민간 자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sup>58)</sup>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모 부양 정책 대상 선정을 위한 자녀의 부양 능력 유무 및 노동시장의 특성, 부모 부양 정책의 규모를 가늠할 노인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증가, 노후 준비 수준, 복지 정책 및 사회 서비스(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등)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 정책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인구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 3.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공사 역할 분담 평가 및 향후 방향성

<표 6-5>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현재 공사 역할 분담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가족과 국가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이다.<sup>59)</sup> 정책의 종류(자녀 양육 정책, 부모 부양 정책) 및 대상(자녀 학령 단계별, 부모 연령 집단별)과 무관하게 모두 가족의 부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 학령 단계별로는 대학생 자녀(7.6점), 중고등학생 자녀(7.0점), 초등학생 자녀(6.5점), 미취학 자녀(6.2점) 순으로 가족의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부모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7.1점), 후기 노인(6.8점) 순으로 가족의 부담이 높다고 평가한다. 즉 중요성이 낮다고 평가된 정책일수록(표 6-1, 표 6-2 참조) 가족의 부담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58) 복지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의 양과 질에 차이가 발생함.

59) 전문가 설문지에 공사 역할 분담을 가족과 사회로 구분하였음. 그러나 사회보다는 국가가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문에는 가족과 국가로 서술함.

〈표 6-5〉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현재 공사 역할 분담 평가(가족/국가)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 양육 정책	가족	7.0	1.4	2.0	9.0	
	국가	3.0	1.4	1.0	8.0	
부모 부양 정책	가족	7.0	1.4	4.0	10.0	
	국가	3.0	1.4	-	6.0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가족	6.2	1.6	2.0	9.0
		국가	3.8	1.6	1.0	8.0
	초등학생 자녀	가족	6.5	1.5	3.0	9.0
		국가	3.5	1.5	1.0	7.0
	중고등학생 자녀	가족	7.0	1.6	2.0	9.0
		국가	3.0	1.6	1.0	8.0
	대학생 자녀	가족	7.6	2.1	-	10.0
		국가	2.4	2.1	-	10.0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가족	7.1	1.4	4.0	10.0
		국가	2.9	1.4	-	6.0
	후기 노인	가족	6.8	1.6	3.0	10.0
		국가	3.2	1.6	-	7.0

주: 1) 정책별로 가족, 사회의 합이 10점이 되도록 평가한 상대적 분담 수준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한편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향후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정책은 가족의 분담 수준(5.1점)이, 부모 부양 정책은 국가의 분담 수준(5.7점)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령 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의 분담 수준(각 5.5점, 5.1점)이,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는 가족의 분담 수준(각 5.3점, 5.9점)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의 연령 집단별로는 모두 국가의 분담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전기 노인(5.3점)보다는 후기 노인(6.2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표 6-6 참조).

〈표 6-6〉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향후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가족/국가)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 양육 정책	가족	5.1	1.4	2.0	8.0	
	국가	4.9	1.4	2.0	8.0	
부모 부양 정책	가족	4.3	1.4	2.0	8.0	
	국가	5.7	1.4	2.0	8.0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가족	4.5	1.7	2.0	9.0
		국가	5.5	1.7	1.0	8.0
	초등학생 자녀	가족	4.9	1.6	2.0	9.0
		국가	5.1	1.6	1.0	8.0
	중고등학생 자녀	가족	5.3	1.4	2.0	8.0
		국가	4.7	1.4	2.0	8.0
	대학 자녀	가족	5.9	1.9	1.0	10.0
		국가	4.1	1.9	0.0	9.0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가족	4.7	1.5	2.0	8.0
		국가	5.3	1.5	2.0	8.0
	후기 노인	가족	3.8	1.5	1.0	7.0
		국가	6.2	1.5	3.0	9.0

주: 1) 정책별로 가족, 사회의 합이 10점이 되도록 평가한 상대적 분담 수준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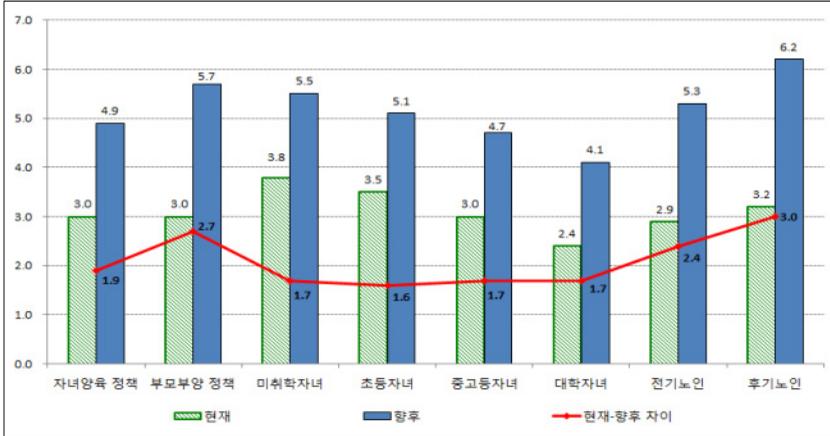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전문가는 현재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지원은 정책 대상에 상관없이 가족의 역할이 50% 이상이며, 향후에는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에 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자녀 양육 정책보다 부모 부양 정책이며, 부모 부양 정책 중에서도 전기 노인보다는 후기 노인 대상의 정책이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현재와 향후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공적 역할 차이

(단위: 점)



주: 1) 정책별로 가족, 국가의 합이 10점이 되도록 평가한 상대적 분담 수준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교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 4.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경제적/비경제적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을 경제적 정책과 비경제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경제적 부양 부담이란 현금이나 현물 지원 등의 사적 이전을 의미하며, 비경제적 부양 부담이란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공사 역할 분담 수준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국가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 ‘가족과 국가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로 파악하였다.

먼저 <표 6-7>은 경제적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정책별로 자녀 양육 정책은 가족이 국가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 부양 정책은 국가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58.0%로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 정책은 가족이, 부모 부양 정책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표 6-7> 경제적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

(단위: %, 점)

구분	빈도						환산 점수		
	가족	가족<국가	가족=국가	가족>국가	국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양육 정책	-	38.0	26.0	32.0	4.0	100.0	3.0	0.9	
부모 부양 정책	-	14.0	28.0	58.0	-	100.0	3.4	0.7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	28.0	18.0	44.0	10.0	100.0	3.4	1.0
	초등학생 자녀	-	36.0	22.0	40.0	2.0	100.0	3.1	0.9
	중고등학생 자녀	-	34.0	40.0	26.0	-	100.0	2.9	0.8
	대학생 자녀	4.0	56.0	20.0	18.0	2.0	100.0	2.6	0.9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	20.0	30.0	50.0	-	100.0	3.3	0.8
	후기 노인	-	6.0	16.0	60.0	18.0	100.0	3.9	0.8

주: 1)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를 5점,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2)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3)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자녀 학령 단계별로는 학령이 높을수록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즉,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가족보다는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44%, 40%), 중고등학생 자녀는 가족과 국가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 자녀는 가족이 국가보다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가족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으며(각각 50%, 60%), 특히 후기 노인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18%로 파악되었다.

반면 비경제적인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부양 정책 모두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각각 68%, 42%). 자녀 양육 정책 중 자녀 학령 단계별로는 학령 단계와 무관하게 50% 내외 수준으로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높다. 부모 부양 정책 중 부모의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은 가족의 책임이(38%), 후기 노인은 국가의 책임이(46%) 더 크다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8〉 비경제적 부양 부담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

(단위: %, 점)

구분	빈도						환산 점수		
	가족	가족>국가	가족=국가	가족<국가	국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양육 정책	8.0	68.0	14.0	8.0	2.0	100.0	2.3	0.8	
부모 부양 정책	2.0	42.0	30.0	24.0	2.0	100.0	2.8	0.9	
자녀 학령 단계별 정책	미취학 자녀	12.0	56.0	20.0	10.0	2.0	100.0	2.3	0.9
	초등학생 자녀	10.0	58.0	22.0	8.0	2.0	100.0	2.3	0.8
	중고등학생 자녀	2.0	54.0	40.0	4.0	-	100.0	2.5	0.6
	대학생 자녀	10.0	52.0	24.0	14.0	-	100.0	2.4	0.9
부모 연령 집단별 정책	전기 노인	-	38.0	28.0	34.0	-	100.0	3.0	0.9
	후기 노인	-	20.0	24.0	46.0	10.0	100.0	3.5	0.9

- 주: 1) 비경제적 부양 부담은 정서적 지지, 신체적, 도구적 지원 등을 의미함.  
 2)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를 5점,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를 1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임.  
 3) 자녀 학령 단계별 구분은 미취학 자녀(6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7~12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이하), 대학생 자녀(19세 이상)임.  
 4) 부모 연령 집단별 구분은 전기 노인(65~79세), 후기 노인(80세 이상)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과 이행 실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개선방향 고려 요소,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공사 역할 분담 평가 및 향후 방향성, 경제적 및 비경제적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전문가는 부모 부양 정책보다 자녀 양육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정책도 부모 부양 정책보다 자녀 양육 정책의 이행 실태가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 부양 정책보다 자녀 양육 정책의 중요성을 현저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령 단계가 낮을수록,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의 이행 실태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 부모 부양 정책의 이행 실태가 낮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의견에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의 연장 선상에서 조세 부담 및 조세 저항 가능성, 비공공 부문의 자원 확보(시민사회 성장, 민간 자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정책의 공사 역할 분담에 대한 현재 평가 및 향후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정책의 종류(자녀 양육 정책, 부모 부양 정책) 및 대상(자녀 학령 단계별, 부모 연령 집단별)과 무관하게 모두가족의 부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정책은 가족의 분담 수준이, 부모 부양 정책은 국가의 분담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녀 양육 정책에서 학령 단계별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국가의 분담 수준이,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는 가족의 분담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모 부양 정책에서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 국가의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즉,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부양 정책에 대한 사회학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경제적·비경제적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비경제적 정책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먼저 경제적 정책에서는 정책별로 자녀 양육 정책은 국가보다는 가족이, 부모 부양 정책은 가족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는 학령이 높을수록 사회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부모의 연령 집단별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비경제적인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부양 정책 모두 사회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는 학령과 무관하게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부모 연령 집단별로는 전기 노인은 가족이, 후기 노인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양 형태별로 경제적 정책은 국가의 책임이, 비경제적인 정책은 가족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주요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및 가족 가치관 변화에 기반을 둔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부양 정책을 수립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 부담 및 재정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제 7 장

## 결론 및 정책 과제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의 관점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은 함께 이루어지지만, 정부는 그간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 복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도입하였다. 가족 부양 관련 연구 또한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가족 부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 및 특성과 함께 가구 내 조세 지출과 수입 구조(정책 수혜와 납세 실태 등)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정서적인 지지와 도구적 지원 등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이용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조세 분석은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사례연구, 전문가 조사)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부양 실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장은 가족 부양 가구의 경제적 지원 실태를 분석한 제4장의 양적 연구 결과와 가족 부양 가구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 등의 실태와 욕구를 함께 살펴본 제5장의 질적 연구, 제6장의 가족 부양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에 대한 양적 연구 결과

본 장은 한국복지패널 11차(조사 시점 2015년)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가구 소득과 소비, 조세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 양육 가구 분석 결과,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4인 가구 기준)에서 자녀 양육이 소득과 소비, 조세에 두드러지게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는 자녀 양육 가구 내에서의 다양한 특성-가령, 자녀의 연령(학령 단계), 자녀 수, 모의 취업 상태, 가구 소득수준 등을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녀 양육 가구를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로 학령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과 조세 부담, 가구 소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다른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데(58만 원, 11%), 구체적인 수혜금이 보육료 지원(연간 493만 원, 월평균 41만 원)과 양육수당(연간 77만 원, 월평균 6만 원)이다. 교육보육비는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많은 편이지만 구성비 측면에서는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약 17%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교육·보육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는 보육비(43만 원, 10%), 중고등학생 자녀는 사교육비(66만 원, 14%), 대학생 자녀는 공교육비(72만 원, 13%)가 많은 편이었다. 사적 이전지출은 대학생 자녀 가구 50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 가구 20만 원의 약 2.5배였다.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소득(582

만 원)은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소득(593만 원)보다 12만 원 적은데, 모(어머니)의 취업률이 7%포인트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자녀 2명 71%, 자녀 1명 78%).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분석 연도의 특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학령 단계가 높을수록 취업 중인 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모가 취업했을 때는 취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구 소득이 더 많고 소비지출도 더 많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가 가장 크다(각각 180만 원, 103만 원). 미취학 자녀 가구는 모가 취업한 가구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보다 공적 이전소득 중 양육수당은 37만 원 적고 보육료는 75만 원 더 많았다. 이는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가구의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금액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었다.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적 이전소득의 금액은 많지만,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의 가구 소득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구성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취학 자녀 가구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많았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가구의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양육수당 수혜 금액은 줄어들고 보육료 지원 수혜 금액이 늘어나서, 가구 소득수준별로 미취학 자녀의 양육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을 더 많이 선택하고,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미취학 자녀의 시설 보육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시설 보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 방향과 일치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 교육·보육비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학령 단계에 상관없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보육비의 구성비 차이는 매우 작지만, 초등학생 자녀 가구와 중고등학생 자녀 가구는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높은 편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가구 소득이 적는데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이며(구성비 각각 64%, 85%),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부모 동거 부양 가구 30%, 전체 가구 12%).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가구 소득 항목 중에서 특히 공적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편인데(22%) 기초연금과 농어업 정보보조금이다. 이는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소비 또한 전체 가구보다 적고, 소비 항목 구성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모 동거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각각 27%, 24%)와 보건·피복비(각각 11%, 9%), 사적 이전지출(9%, 6%)은 많고, 교육·보육비(각각 0.4%, 5%)는 적었다.

동거 부모 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이면 1명인 때보다 소득과 조세, 소비가 더 많은데, 소득 구성비 측면에서 동거부모가 2명이면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이 더 많았다. 소비 구성비 측면에서는, 동거 부모가 2명인 가구는 보건·피복비가 조금 더 많고, 교통통신·오락비는 조금 적었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에게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의 부양 수준별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수준과 부양 수준은 높은 양적 관계가 있었다.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이면 가구 소득은 453만 원, 10만~20만 원 미만이면 609만 원, 20만 원 이상이면 728만 원이

다. 소득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 가구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고(약 4%포인트),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높았다(합산 약 4%포인트). 공적 이전소득의 세부 항목에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학비 지원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동거 부모 부양 수준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 취약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소비 규모도 부양 수준이 높을수록 많아지는데, 소비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양 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특성 또한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것이다.

## 2.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가족 부양 가구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의 금액 뿐만 아니라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혜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는 대부분 자녀가 학교 정규 수업 이후 방과 후 민간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며, 이러한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 지인한테서 접하지만, 정보 접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자녀 연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다르고,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부양 부담이 다르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자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부모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 방법이 무엇인지 막연히 짐작하고 있

었다. 또한 부모에게 매월 사적 이전지출을 하는 가구는 17%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구는 맞벌이를 하며 소득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모든 가구는 비정기적으로 명절이나 생일 등의 기념일에 부모에게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 부양 형태나 수준이 다르며,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부모가 아프면 의료비 자체 보다는 간병에 드는 비용이나 직접 간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주거와 관련하여 요양시설 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사례연구 대상 가구는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양육으로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모보다는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은 대체 관계(trade-off)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였다. 이때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의견은, 자녀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을 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만약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 3.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가족 부양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 정책이 부모 부

양 정책보다 중요성이 높고(10점 만점 중 각각 5.7점, 4.3점) 현재 정책 이행 실태도 높다고(이행이 잘되고 있다는 의견 각각 38%, 18%) 평가하고 있었다. 향후 정책 개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 요소 중 인구구조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사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모두 가족의 역할이 큰데, 향후 정책 방향성은 부모 부양의 국가 분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녀 양육 정책은 자녀의 학령 단계에 따라 다르며,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는 국가, 중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는 가족의 분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한정된 결과이다. 가족 부양에 대한 비경제적인 지원은 부양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가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1. 가족 부양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성

#### 가. 생애 주기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려

본 연구 결과 부양 대상에 따라 가족과 국가에 요구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 부양 부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장년 가구는 가계경제 운영 과정에서 부모 부양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 부양 관련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은

상대적으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현행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으나, 향후 가족 부양 정책의 방향성은 가족과 국가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가족 부양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등 특정 부양 대상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부양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양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많으면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 양육 가구는 부모 비부양 가구보다 교육보육비에 지출되는 구성비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의 교육보육비와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장년 세대의 자녀와 부모 부양에 따른 이중 부담과 가족 부양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사적인 측면에서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층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생애 단계별 공적·사적 부양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가족 부양의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

본 연구의 사례연구 결과,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종일 육아에 시달리며 자신의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육아 스트레스는 주된 양육자의 취업 여부나 자녀의

보육 형태(시설 보육, 가정 양육)에 상관없이 나타나므로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하는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족과 국가는 여성의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한 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된 정책 욕구이며, 부모 교육의 시점은 첫째 자녀 임신과 출산기,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 임신 및 출산기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전·산후 교육과 연계하여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기에 시설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노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자녀는 부모의 '배우자 사망 후 우울감'에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후기 노인의 심리적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기 배우자와의 사별 후 치유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노부모가 취업 중인 자녀를 위해 어린 손자녀의 양육을 돕는 가구는 노부모의 돌봄 활동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상 보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서 24시간 무한 돌봄을 실현하기 어렵고,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전염성 질환으로 아픈 상황이 되면 시설 보육 이용이 어렵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성인 자녀는 노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부모의 황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황혼 손자녀 돌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현금 지원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칭, 여행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2.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은 가족,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 강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녀 양육 및 부모 부양 정책의 공사 역할 분담 방향성에 대해 부양 부담의 형태에 따라 다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자녀 양육 정책은 국가보다는 가족이, 부모 부양 정책은 가족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비경제적인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부양 정책 모두 사회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자녀 양육 정책 확대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한 애정과 양육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러한 특성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녀 양육 정책이 확대되더라도 부모의 자녀 교육 투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시작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자녀 양육 정책 확대는 필요할 것이다.

노부모 부양은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이 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 가치관의 약화와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미래 노인 세대는 성인 자녀에게서 직접적인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이 효자'라는 말처럼 노인에 대한 부양은 경제활동기에 본인 스

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되, 노후 소득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노부모 부양은 부양 형태에 따라 공사의 역할과 비중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신체적 지원은 국가의 역할, 정서적 지지는 가족의 역할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적 지원 체계가 사적 지원 체계의 작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사례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비혼 가구나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에 대한 노년기 부양 부담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양해 줄 자녀가 없는 노인은 경제적·신체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 면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가. 자녀 양육 정책은 자녀의 학령 단계가 낮을수록 국가의 책임 강화

본 연구의 실증 분석과 사례연구 결과에서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교육·보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르고 가족의 부담 수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상대적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다른 학령의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 정책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육 부담 수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관심도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자녀의 학령이 높을수록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육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상이한 정책 육구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첫째 자녀에 대한 돌봄도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산후도우미나 아이돌보미와 같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가령 돌봄 대상은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둘째 자녀를 돌보는 것이지만, 첫째 자녀의 차량 등하원 시간에 어머니가 둘째 자녀의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이들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가 첫째 자녀의 차량 등하원을 보살펴 주는 등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산후도우미는 영아 자녀, 아이돌보미는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돌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양 부담 육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자녀 양육 정책은 자녀의 학령 단계별 부양 부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부양 부담의 양상이 달라지며, (미성년이 아닌) 대학생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본 연구의 양적 및 질적연구 결과, 영아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카시트 등 영유아 용품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고, 초·중·고등학교 자녀는 돌봄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의 학령 단계별 부양 부담은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상이함

을 보여 준다. 맞벌이 가구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비용(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 4. 노부모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 완화 후 폐지

정책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노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그에 따라 심각한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자녀의 가구 소득수준과 부모 부양 수준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녀의 경제 상태가 좋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며, 부양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령 중에서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실질적 의미의 부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법은 1촌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충성의 원리).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동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2). 2016년 7월 기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66만 1844명이며, 이 중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사람은 19만 7000명(11.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과 가출, 행방불명은 행정관청에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만, 부양의 기피 및 거부는 신청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부양의 기피 및 거부는 현실적으로 가족 관계의 단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기능의 약화 또는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표 7-1〉 연도별 부양 관계 단절 인정 수급권 보장 현황

(단위: 명, %)

	2014	2015	2016.7월
기초생활수급자	1,328,713	1,646,363	1,661,844
부양 관계 단절 수급자	179,206	193,479	197,000
부양 관계 단절 비율	13.5	11.8	11.9

자료: 윤소하. (2016. 9. 26.). 맞춤형 급여 개편 일 년, 신규수급자 증가 정체. 정의당 보도자료의 〈표 4〉를 재구성.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하고(헌법 제34조 제1항), 모성, 여성, 노인,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나(동조 제2~4항), 부양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성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 헌법상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 부담을 게을리한 성인 자녀에게서 부양 비용을 징수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60)</sup> 부양

60)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관계 단절 비율이 12~13%에 이르는 상황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 기준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검토

중장년 세대는 부양 이중고를 겪고 있고 본인의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병 장수하고 있는 노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 결과, 성인 자녀는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자녀의 경제 수준이 좋을수록 부모에 대한 사적 이전소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난한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여력과 의지가 있을 때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 이전 부양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부모 지원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동거 부모가 많으면 가구 소비에서 보건·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부모를 동거 부양하면 노부모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부모 부양 비용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비 명목의 사적 이전지출이 확대되고, 이는 빈곤 노인 축소와 더불어 국가의 노인 복지 향상 의무 완화,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형편이 좀 나은 자녀가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형편이 어려운 다른 자녀들은 그만큼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친족공동체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

노인 부부 가구가 노년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되면서, 이동 지원에 대한 복지 욕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결과 노부모의 병원 동행, 장보기, 관공서 및 은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동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자녀가 인접한 곳에 살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교통 약자 차원에서 장애인 1~3급이나 노인 중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교통 약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노인 이동 지원의 무한한 확대는 어려울 것이며 민간 시장을 교란한다는 점에서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교통 약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지원 정책 확대 외에도, 민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인의 이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현재 택시 등 대중교통의 고령 친화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가령 대중교통은 노인의 승하차에 도움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주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그 외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가. 조세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저소득층 대상 조세 부담 감면 방안 필요

근로/사업소득자가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의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조세가 어떻게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지 등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가족 부양 가구는 본인이 매일 부담하는 조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납부하는 조세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체감이 낮을 수 있다. 가구 특성에 따라 매월 가구 소득에서 차감되는 조세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복지제도의 혜택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조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세 체계 개선을 통한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제도 분석 결과, 가족 부양을 위한 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의 경우 중산층 이상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성격을 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 부양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자의 2분의 1 수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중산층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중산층은 세제 완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 증가분을 자녀에 대한 더 큰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녀 양육 부담이나 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여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녀의 노부모 사적 부양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자녀 장려 세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사례연구 결과, 가족 부양 가구는 상당 부분 지인을 통해 정책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습득 방식은 개인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정보 접근성, 정보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한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는 정책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정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만한데, 특히 전달 체계 간 연계(정보 공유)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또는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보육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주민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조금 다른 예지만, 서울시는 '보육반장'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미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이 초보 엄마에게 원스톱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정보를 유선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 세대 간의 통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다. 이중 부담 가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

이중 부담 가구는 넓은 의미에서 부모에게 반드시 정기적으로 사적 이전소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구도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대부분 이중 부담 가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게 지난 1년간 사적 이전소득을 지급한 자녀 양육 가구는 90.1%이며,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사적 이전소득을 지급한 자녀 양육 가구는 30% 수준이다.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에서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가구는 자녀 양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구 상황이 가능한 범위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령상 가족의 부양 의무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핵가족제도의 보편화로 부모에 대한 부담 수준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결과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성인 자녀는 자신의 부모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우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중 부담 가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담 가구 중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은 부모의 병환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보편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대학 졸업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만혼화 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갹거루족’을 부양하는 부모는 더 늦은 나이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게 되는데, 25세 이상 미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1985년 8.7%에서 2010년 25.7%로 크게 증가하였다(이삼식, 최효진, 윤희식, 2015a. p. 174). 또한 부모는 자녀 양육 책임 기간을 결혼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며, 자녀의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졸업 이후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생애 주기상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중 부담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양의 경제적 부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은 경제적인 부담 못지않게 정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인 부양 부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이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례 확보 방법도 눈덩이 표집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족 부양 형태 중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등에 좀 더 균형 잡힌 관심을 두고 더욱 정교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성호. (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113-114.
- 강은나, 이소영, 오신휘, 기재량. (2015).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7. 6. 15.).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보도자료.
- 교육부. (2017. 1. 11.).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보도자료.
- OECD. (2015). OECD 교육지표 2015. 서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09, 2015, 2016).
- 권기현. (2010).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권문일. (2000).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국민연금급여는 과연 보험료에 대한 공평한 수익인가? 한국사회복지학, 41, 43-67.
- 기획재정부. (2016). 2016 조세개요.
- 기획재정부. (2017. 8. 2.).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 김나래. (2016).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부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40(2), 243-273.
- 김나래.(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 이희숙. (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617-639.
- 김법식. (2011).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 분석. SDI 정책리포트, 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 Issue&Focus, 68,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우. (2013).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년 5월호(통권 199호), 57-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5월호(통권 23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2-79.
- 김은정, 이해숙. (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7).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7월호(통권 249호), 7-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인유. (2017).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사적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58(2017. 05.), 361-385.
- 김재호. (2015).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소득 변화 및 노후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103-124.
- 김정호, 홍석철. (2013).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워킹페이퍼, 12(2), 43-75.
- 김종남. (2014).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부양기대와 에코붐 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김주수. (1992). 민법개론. 서울: 박영사.
-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월간 노동리뷰, 6, 21-36.
- 김찬우. (2015).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쟁점 고찰. 사회복지 연구. 46(1), 111-134.
- 김혜경, 박천만. (2010).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부모조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1), 170-194.
- 김희삼. (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미시적접근.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 (2011).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 연금포럼, 43, 10-19.

- 김희삼. (2015).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KDI FOCUS, 52,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민연경, 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3), 365-386.
- 박근수, 김태일. (2016).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467-479.
- 박미경, 조민효. (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 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가족형태별 중년성인의 노부모 부양 인식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55-485.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2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보육사업안내. 개정판. pp. 229, 232, 245.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 보육사업안내. pp. 254, 256-257, 269.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p. 256-258, 271.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pp. 277, 298, 313-314.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p. 286, 301-302.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10, 325.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p. 272, 284.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p. 288, 300.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14, 327.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7). 중년층의 부모의료비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 서문희, 이해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2010).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

- 정책연구, 4(2), 76-95. 육아정책연구소.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 연금포럼, 38, 48-57.
- 석재은, 김용하. (200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18(1), 67-104.
- 석재은. (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63-191.
- 성혜영, 이은영. (2015).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전략.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송헌재, 우석진.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17(1), 3-36.
-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 (2013).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선희. (201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39-69.
- 여유진, 김미곤, 구인희, 김수정, 윤자영, 허순임, 최준영. (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재산, 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계숙. (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91-201.
- 유계숙, 김제희. (2017).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 법안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 보건사회연구, 37(1), 216-252.
- 윤소하. (2016. 9. 26.). 맞춤형 급여개편 일년, 신규수급자 증가 정체. 정의당 보도자료.
- 윤자영. (2010). 자녀 양육시간의 경제적 가치, 노동리뷰, 2010년 7월호, 23-38,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운. (2004).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사회보장연구*, 20(2), 179-207.
- 이삼식, 김재호, 강은나, 박수지, 정경희, 이윤경 등. (2013). *성별·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2015a).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b).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김은정, 이삼림, 이소영, 강은나 등.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니터링 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록, 조은미. (2016). 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141-169.
- 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희. (2013). 우리나라 대학장학금 정책에 대한 고찰: 학비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1), 97-124.
- 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추격연구소.
- 이성림. (2010). *가계의 영유아 자녀양육비*. 생활과학, 13, 1-24,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소영, 강은나, 기재량, 박성희, 김정근, 김태현 등. (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찬우, 손창균, 선우덕, 정경희, 임정기 등. (2012).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 개편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톨릭대학교.
- 이윤경, 정경희, 선우덕, 김진수, 김찬우, 박건우 등. (2013). *장기요양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관리 모형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강은나, 오미애, 황주희, 배혜원, 김찬우, 남현주. (2016). *장기요양 등급*

- 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원. (2013).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4, 8-26.
- 이현주, 강신욱, 김현경, 이병희, 주상영, 전지현. (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승훈, 박승준. (2011).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71-205.
- 전혜성, 김미영. (2012). 중년기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간의 관계성 탐색. 보건사회연구, 32(2), 206-231.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수지, 박윤현, 송지나, 김대웅, 이순형. (2016).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변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7(2), 27-42.
- 정영수. (2008).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발, 35(1), 16-21, 한국교육개발원.
- 정은희, 최슬기, 김미선, 박은경, 정은영. (2012).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경, 황정임, 김영자, 이민영. (2002). 노인부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노인부양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2, 125-152.
- 조운영. (2008).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9(3), 29-74.
- 최성은, 우석진. (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홍철·최현자. (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

- 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통계청. (2015a. 7. 23.).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5b. 11. 26.). 201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 통계청. (2016. 9. 29.). 2016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17a. 3. 14.).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7b. 3. 22.).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한경님. (2010).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 가계소득 3,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한국은행. (2017. 3. 28.). 2015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잠정). 보도자료.
- 한은정, 이정면, 조정완, 김도훈. (201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 허남재, 석재은. (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139-163.
-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 (2014). 인구구조변화와 공·사적이전 분담실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2016).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239호, (2016. 9.). 21-33.
- 현대경제연구원. (2007).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현대경제주평, 246.
- Deaton, A., Paxson. C.(1994). Internation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3), 437-467.
- Ingersoll-Dayton, Berit, Margaret. B. Neal, and Leslie B. Hammer(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3), 262~271.

Kim, H. (2010).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Old-Age Security in Korea," 227-278, in Takatoshi Ito and Andrew K. Rose (ed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in East Asia, NBER-EASE Volume 19*, Univ. of Chicago Press.

Kolasa, A. (2012). Life cycle income and consumption patterns in transition. *Faculty of Economic Sciences, working papers*, 17/2002(83), University of Warsaw.

Taylor, P., Parker, Kim. Patten, E., Motel., S. (2013). The Sandwich Generation: Rising Financial Burdens for Middle-Aged Americans. *Social & Demographic Trends*, January 30, 2013, Pew Research Center.

〈관련 법안 및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4224호(2016. 5. 29. 타법 개정).

국민연금법, 법률 제14693호(2017. 3. 21.,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법률 제14596호(2017. 3. 14., 일부개정).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1987. 10. 29., 전부개정).

민법, 법률 제14278호(2016. 12. 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16. 7.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388호(2016. 12. 20., 일부 개정)

소득세법, 법률 제14389호(2016. 12. 20.,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4887호(2017. 9. 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2017. 3. 14.,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5232호(2017. 12. 19.,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569호(2017. 2. 8., 타법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32호(2017. 7. 3.,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타법개정).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2017).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2017. 4. 29. 인출.

복지로. (201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에서 2017. 4.15. 인출.

사교육 없는 세상. (2016. 4. 28.). [대입전형]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http://blog.naver.com/noworry21?Redirect=Log&logNo=220695625106>에서 2017. 8. 4. 인출.

통계청. (2017). 2016년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9. 21. 인출.

통계청. (2017). 생명표.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8. 2. 인출.

통계청. (2016).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2017. 8. 2. 인출.

OECD. (2016). Effective Age of Retirement. <http://www.oecd.org/els/public-pensions/ageingandemploymentpolicies-statisticson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에서 2016. 10. 19. 인출.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복지패널 6차, 11차 원자료. <https://222.koweps.re.kr>에서 2017. 3. 23. 인출.



## 부록 1.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부표 1-1〉 자녀 학령 단계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단위: 만 원)

구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9.6	1.4	3.0	1.2	7.4	17.1	13.5	1.9	0.1
초등학생 자녀	14.0	1.7	3.3	1.0	6.1	17.0	14.1	1.7	0.1
중고등학생 자녀	15.8	1.9	3.2	1.2	6.4	18.0	15.9	1.9	0.1
대학생 자녀	18.9	2.7	2.7	1.7	14.2	18.4	16.8	1.5	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가구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sup>1)</sup>			공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보험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1명	100.0	75.4	11.6	0.2	1.0	0.0	4.3	0.0	1.1	1.7	0.0	4.8		
2명	100.0	76.2	8.1	0.2	0.7	0.1	3.1	0.0	0.8	1.6	0.0	9.1		
초등학생 자녀														
1명	100.0	78.8	15.5	0.6	1.2	0.0	1.9	0.0	0.6	0.9	0.2	0.4		
2명	100.0	74.0	19.0	0.3	0.5	0.0	2.6	0.0	1.0	0.3	0.0	2.3		
중고등학교 자녀														
1명	100.0	86.4	9.3	0.9	0.2	0.0	1.2	0.0	1.2	0.0	0.0	0.9		
2명	100.0	75.4	18.2	0.8	1.2	0.1	1.6	0.0	1.1	0.6	0.1	0.9		
대학생 자녀														
1명	100.0	66.5	25.4	0.6	1.8	0.0	0.8	0.1	1.5	1.1	0.3	2.0		
2명	100.0	62.3	27.8	0.9	1.6	0.0	1.3	0.1	3.5	0.5	0.2	2.0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3) 자녀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1명(A)	10.8	1.3	2.9	1.7	0.0	6.2	17.1	13.3	1.7	0.3
2명(B)	9.6	1.4	3.0	1.2	0.0	7.4	17.1	13.5	1.9	0.1
차이(B-A)	-1.2	0.1	0.1	-0.5	0.0	1.2	0.0	0.2	0.2	-0.2
초등학생 자녀										
1명(A)	19.2	1.9	3.2	3.8	0.0	4.3	16.4	14.6	1.9	0.1
2명(B)	14.0	1.7	3.3	1.0	0.0	6.1	17.0	14.1	1.7	0.1
차이(B-A)	-5.2	-0.2	0.1	-2.8	0.0	1.8	0.6	-0.5	-0.2	0.0
중고등학생 자녀										
1명(A)	16.4	1.5	2.8	0.7	0.0	3.6	15.6	13.5	1.6	0.1
2명(B)	15.8	1.9	3.2	1.2	0.1	6.4	18.0	15.9	1.9	0.1
차이(B-A)	-0.6	0.4	0.4	0.5	0.1	2.8	2.4	2.4	0.3	0.0
대학생 자녀										
1명(A)	23.6	1.6	2.5	1.9	0.0	6.3	16.9	15.2	1.7	0.1
2명(B)	18.9	2.7	2.7	1.7	0.1	14.2	18.4	16.8	1.5	0.2
차이(B-A)	-4.7	1.1	0.2	-0.2	0.1	7.9	1.5	1.6	-0.2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생활·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이전지출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구·전기·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미취학 자녀	1명	12.8	8.5	1.5	0.9	3.7	3.4	3.4	5.8	0.2	2.8	4.7	0.9
	2명	13.7	7.5	1.4	1.0	3.3	3.2	3.2	10.3	0.3	6.6	3.7	1.0
초등학생 자녀	1명	14.0	9.4	1.6	1.3	3.0	3.6	3.1	0.2	0.7	9.3	5.0	1.1
	2명	13.7	7.8	1.6	0.8	2.6	3.3	2.8	2.1	0.5	12.6	3.9	1.0
중고등학생 자녀	1명	14.3	8.9	2.7	1.3	2.1	3.8	2.4	0.0	2.9	10.8	3.5	1.0
	2명	12.9	8.9	1.3	0.9	2.2	3.2	2.9	0.1	3.1	14.4	4.0	1.2
대학생 자녀	1명	11.5	8.2	2.0	0.8	2.3	3.5	2.6	0.0	7.1	0.2	2.8	8.0
	2명	10.3	7.1	1.6	0.7	2.4	2.9	2.0	0.0	13.1	4.2	2.7	6.4

〈부표 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계속)

(단위: %)

구분	소비지출 전체	보간·피복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소비지출		
		의류 신발비	보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경조비	중고 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100.0	4.4	3.7	15.1	4.2	5.2	1.9	0.8	16.0
	100.0	3.3	3.2	12.6	3.5	4.2	1.4	1.5	14.9
초등학생 자녀	100.0	4.1	4.1	11.9	4.4	5.7	1.6	0.5	15.5
	100.0	3.3	3.7	13.2	4.1	5.0	1.6	1.2	15.2
중고등학생 자녀	100.0	3.6	4.1	10.5	4.7	3.9	1.8	1.2	16.5
	100.0	2.9	4.0	11.3	4.5	3.7	1.4	1.6	15.6
대학생 자녀	100.0	3.2	4.3	10.8	4.7	5.1	2.1	1.2	19.5
	100.0	3.1	3.7	10.9	4.7	3.8	1.8	0.9	17.7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비용·용품·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5〉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sup>1)</sup>			공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보험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1명	100.0	75.4	11.6	0.2	1.0	0.0	4.3	0.0	1.1	1.7	0.0	4.8
	2명	100.0	76.2	8.1	0.2	0.7	0.1	3.1	0.0	0.8	1.6	0.0	9.1
초등학교 자녀	1명	100.0	78.8	15.5	0.6	1.2	0.0	1.9	0.0	0.6	0.9	0.2	0.4
	2명	100.0	74.0	19.0	0.3	0.5	0.0	2.6	0.0	1.0	0.3	0.0	2.3
중고등학교 자녀	1명	100.0	86.4	9.3	0.9	0.2	0.0	1.2	0.0	1.2	0.0	0.0	0.9
	2명	100.0	75.4	18.2	0.8	1.2	0.1	1.6	0.0	1.1	0.6	0.1	0.9
대학생 자녀	1명	100.0	66.5	25.4	0.6	1.8	0.0	0.8	0.1	1.5	1.1	0.3	2.0
	2명	100.0	62.3	27.8	0.9	1.6	0.0	1.3	0.1	3.5	0.5	0.2	2.0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6〉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취업(A)	12.1	1.5	3.3	1.9	0.0	10.3	24.4	16.4	2.3	0.1
미취업(B)	8.1	1.3	2.8	0.8	0.0	5.6	12.6	11.7	1.7	0.1
차이(A-B)	4.0	0.2	0.5	1.1	0.0	4.7	11.8	4.7	0.6	0.0
초등학생 자녀										
취업(A)	14.1	1.7	3.5	1.2	0.0	7.0	19.5	15.2	1.6	0.1
미취업(B)	14.0	1.8	3.2	0.7	0.0	5.1	14.4	13.0	1.8	0.1
차이(A-B)	0.1	-0.1	0.3	0.5	0.0	1.9	5.1	2.2	-0.2	0.0
중고등학생 자녀										
취업(A)	14.3	1.9	3.2	1.2	0.1	7.3	19.2	16.2	1.8	0.1
미취업(B)	19.2	1.9	3.2	1.1	0.0	4.2	15.1	15.0	2.0	0.1
차이(A-B)	-4.9	0.0	0.0	0.1	0.1	3.1	4.1	1.2	-0.2	0.0
대학생 자녀										
취업(A)	16.9	2.3	2.5	2.1	0.2	5.0	19.7	17.5	1.5	0.2
미취업(B)	24.5	3.7	3.4	0.8	0.0	39.6	14.9	15.1	1.6	0.2
차이(A-B)	-7.6	-1.4	-0.9	1.3	0.2	-34.6	4.8	24.9	-0.1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7)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모의 취업 여부에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성비

(단위: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기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이전지출		보건·피복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소비지출							
		기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구집기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의료 산발비	의류비	보건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경조비	종교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취업	100.0	12.4	7.7	1.5	3.1	2.8	2.9	11.1	0.1	5.8	4.5	1.5	2.8	3.5	12.7	3.1	5.4	1.3	1.8	14.4	
	미취업	100.0	14.7	7.3	1.3	0.6	3.4	3.6	9.7	0.5	7.2	3.1	0.7	3.7	3.1	12.5	3.8	3.3	1.5	1.4	15.3	
초·중·고등학생 자녀	취업	100.0	12.9	7.9	1.5	0.8	2.0	3.2	2.5	0.5	12.0	4.1	1.3	3.4	3.7	15.1	3.9	4.3	1.5	1.5	15.2	
	미취업	100.0	14.7	7.5	1.7	0.8	3.3	3.5	3.2	1.6	13.4	3.6	0.5	3.1	3.6	10.9	4.3	5.9	1.6	0.7	15.3	
중·고등학생 자녀	취업	100.0	12.5	9.3	1.3	0.9	2.1	3.1	2.9	0.1	3.2	14.8	3.8	1.0	2.9	4.0	11.4	4.5	3.1	1.3	1.7	15.8
	미취업	100.0	13.8	8.0	1.4	0.9	2.5	3.3	2.8	0.1	2.7	13.3	4.4	1.5	3.0	3.8	10.9	4.5	4.9	1.6	1.2	15.1
대학생 자녀	취업	100.0	10.2	7.4	1.8	0.7	2.3	2.7	1.7	0.0	12.3	4.7	2.8	6.5	3.2	3.8	11.1	4.8	3.7	1.8	0.7	17.9
	미취업	100.0	10.7	6.1	1.1	0.7	2.8	3.5	3.2	0.0	15.4	2.7	2.3	6.1	2.6	3.6	10.4	4.4	3.9	1.7	1.5	17.3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침복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8〉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sup>1)</sup> )			공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보험	기타	사회보험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정 부보조금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358.7	252.5	36.6	0.4	0.0	0.2	14.0	0.0	5.2	0.0	0.0	0.0	0.0	0.0	0.0	49.8	
소득2분위	533.5	402.1	47.6	0.4	1.9	0.1	20.3	0.0	5.3	0.0	7.2	0.0	0.0	0.0	0.0	48.6	
소득3분위	800.8	642.3	49.8	2.2	12.3	2.7	15.4	0.0	3.0	0.0	22.3	0.0	0.0	0.0	0.0	50.7	
초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356.1	234.0	85.6	0.8	1.8	0.0	13.7	0.0	5.1	0.0	0.4	0.0	0.0	0.0	0.0	14.8	
소득2분위	536.0	455.5	42.0	1.5	1.8	0.0	13.1	0.0	6.7	0.0	3.6	0.0	0.0	0.0	0.0	11.8	
소득3분위	870.4	619.8	206.7	4.1	6.2	0.5	17.7	0.0	4.7	0.0	0.5	0.0	0.0	0.0	0.0	10.2	
중고등학교 자녀																	
소득1분위	315.1	209.6	71.0	0.5	2.4	0.0	7.3	0.0	5.5	0.0	6.4	1.6	0.0	0.0	0.0	10.7	
소득2분위	543.8	426.6	83.8	5.7	5.6	2.1	8.9	0.0	5.3	0.0	1.6	0.0	0.0	0.0	0.0	4.2	
소득3분위	859.8	656.1	160.4	7.3	11.7	0.0	11.1	0.0	8.5	0.0	2.9	1.0	0.0	0.0	0.0	1.8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304.1	164.1	55.7	6.1	13.6	0.0	15.9	0.0	15.3	0.0	7.2	5.0	0.0	0.0	0.0	21.2	
소득2분위	509.7	329.0	144.0	2.6	2.4	0.0	4.7	0.0	13.5	0.0	2.8	0.0	0.0	0.0	0.0	10.7	
소득3분위	900.3	566.0	261.7	7.1	12.9	0.0	7.4	0.7	31.7	0.0	2.3	0.0	0.0	0.0	0.0	10.5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9)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단위: 만 원)

구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2.0	0.7	2.0	1.2	0.0	10.0	9.3	8.8	1.2	0.0
소득2분위	7.5	1.4	3.3	0.7	0.0	4.8	18.1	13.6	2.1	0.1
소득3분위	22.4	2.1	3.8	2.0	0.0	7.7	25.6	19.4	2.5	0.1
초등학교 자녀										
소득1분위	2.5	0.9	3.1	0.4	0.0	2.6	9.6	9.4	1.0	0.0
소득2분위	13.4	1.8	3.1	0.5	0.0	4.9	18.1	13.8	2.0	0.1
소득3분위	31.7	2.8	4.1	2.3	0.0	12.5	26.7	21.4	2.3	0.1
중고등학교 자녀										
소득1분위	1.3	0.9	2.1	0.9	0.0	4.2	8.8	8.9	0.9	0.1
소득2분위	11.7	1.9	3.4	0.7	0.0	5.7	18.2	14.8	1.9	0.1
소득3분위	33.0	2.8	4.0	1.9	0.3	9.1	25.9	23.2	2.8	0.1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0.5	2.0	1.8	0.4	0.0	43.6	7.4	8.3	0.7	0.0
소득2분위	6.1	1.7	2.0	2.9	0.0	1.1	14.5	13.3	1.1	0.1
소득3분위	33.1	3.4	3.4	1.8	0.2	7.5	25.2	22.2	2.1	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구분	소비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이전지출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미취학 자녀	341.2	25.1	5.3	3.3	8.9	13.5	10.7	41.1	1.9	18.5	8.1	1.6
소득1분위	429.5	31.4	6.1	3.5	16.9	13.2	13.7	43.3	1.8	26.7	14.6	1.7
소득2분위	510.9	56.3	6.8	5.9	15.4	14.1	16.5	46.7	0.0	41.1	26.5	11.5
소득3분위												
초등학교생 자녀	327.8	53.3	7.6	5.4	6.2	13.4	8.5	7.8	1.3	37.9	9.6	1.8
소득1분위	428.9	33.1	6.9	1.6	14.3	14.5	14.6	8.9	2.1	55.1	14.7	4.4
소득2분위	566.4	67.3	5.9	2.5	14.1	15.2	14.5	11.0	3.7	75.5	29.4	7.4
소득3분위												
중·고등학교생 자녀	333.7	48.9	6.6	5.8	7.0	13.5	8.7	0.4	11.2	38.5	9.7	3.8
소득1분위	448.1	55.6	6.8	3.5	9.5	14.6	12.2	0.4	15.6	64.6	18.2	7.6
소득2분위	584.5	72.2	5.3	3.3	14.1	15.5	18.2	0.6	15.4	92.4	26.2	4.8
소득3분위												
대학생 자녀	372.5	50.2	7.2	8.8	6.5	14.7	7.5	0.3	63.3	12.1	4.6	24.1
소득1분위	460.5	54.1	7.9	2.9	7.2	14.6	7.2	0.0	69.6	26.5	12.8	33.7
소득2분위	670.6	61.2	9.8	2.5	19.4	17.2	14.8	0.0	76.6	26.4	19.9	40.5
소득3분위												

(단위: 만 원)

〈부표 1-10〉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소득수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계속)

(단위: 만 원)

구분	소비지출 전체	보건·피부비		교통통신·오락비		경조비		기타소비지출	
		의료·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소득1분위	341.2	10.3	9.1	40.8	14.4	13.6	4.8	2.9	52.2
소득2분위	429.5	15.2	13.9	55.1	14.8	17.8	5.3	10.5	63.0
소득3분위	510.9	16.7	19.0	65.7	15.4	23.3	8.2	5.5	76.4
초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327.8	9.9	9.9	46.9	16.0	11.5	4.2	4.1	46.6
소득2분위	428.9	18.2	15.3	50.0	17.2	20.4	5.9	5.0	69.1
소득3분위	566.4	14.7	24.3	77.0	19.7	37.5	10.7	5.8	86.8
중고등학생 자녀									
소득1분위	333.7	9.3	10.5	45.4	19.4	7.1	3.2	3.3	50.9
소득2분위	448.1	10.5	18.9	49.7	21.8	14.2	6.3	5.5	73.2
소득3분위	584.5	20.0	24.5	60.1	20.8	28.3	9.3	12.9	89.3
대학생 자녀									
소득1분위	372.5	10.3	10.8	28.9	21.6	9.9	3.2	1.9	61.4
소득2분위	460.5	12.7	17.4	40.4	26.9	8.9	6.4	4.3	74.5
소득3분위	670.6	21.6	26.2	82.9	27.1	31.1	14.6	6.6	124.2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1〉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가구소득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보험 <sup>1)</sup>	기타 <sup>2)</sup>	사회보험 급여 <sup>3)</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부양(A)	692.4	559.7	41.9	2.1	13.0	0.0	9.4	0.0	4.3	13.8	0.0	48.2
미부양(B)	489.4	360.3	45.4	0.4	0.6	1.2	19.7	0.0	4.8	6.9	0.0	50.1
차이(A-B)	203.0	199.4	-3.5	1.7	12.4	-1.2	-10.3	0.0	-0.5	6.9	0.0	-1.9
초등학생 자녀												
부양(A)	683.3	560.4	89.1	4.1	3.3	0.0	11.8	0.0	3.8	1.0	0.0	9.8
미부양(B)	502.1	348.5	112.2	1.0	2.9	0.2	15.8	0.0	6.2	1.6	0.0	13.7
차이(A-B)	181.2	211.9	-23.1	3.1	0.4	-0.2	-4.0	0.0	-2.4	-0.6	0.0	-3.9
중고학생 자녀												
부양(A)	725.6	561.1	140.4	5.9	1.1	0.2	8.4	0.0	6.0	0.2	0.0	2.3
미부양(B)	511.4	378.7	89.1	4.0	9.5	1.0	9.6	0.0	6.7	5.2	0.7	6.9
차이(A-B)	214.2	182.4	51.3	1.9	-8.4	-0.8	-1.2	0.0	-0.7	-5	-0.7	-4.6
대학생 자녀												
부양(A)	803.6	582.5	173.2	7.3	1.9	0.0	10.5	0.0	17.6	0.3	0.0	10.3
미부양(B)	609.6	345.6	190.1	5.1	13.9	0.0	7.9	0.5	25.8	4.9	1.6	14.2
차이(A-B)	194.0	236.9	-16.9	2.2	-12.0	0.0	2.6	-0.5	-8.2	-4.6	-1.6	-3.9

주: 1) 개인연금, 퇴직연금.

2)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

3)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2)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연평균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이)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미취학 자녀													
부양(A)	0.0	0.0	83.9	472.3	0.0	13.2	2.6	0.0	2.6	0.0	0.0	1.7	1.9
미부양(B)	2.6	0.0	73.6	500.4	0.0	0.0	3.1	2.3	9.5	0.0	0.3	0.4	8.9
차이(A-B)	-2.6	0.0	10.3	-28.1	0.0	13.2	-0.5	-2.3	-6.9	0.0	-0.3	1.3	-7.0
초등학생 자녀													
부양(A)	0.0	0.0	13.2	86.1	2.2	2.1	3.4	3.1	4.0	0.0	0.0	0.2	3.0
미부양(B)	0.0	0.0	10.1	116.4	3.8	1.4	6.3	8.2	13.0	0.7	0.5	0.8	3.6
차이(A-B)	0.0	0.0	3.1	-30.3	-1.6	0.7	-2.9	-5.1	-9.0	-0.7	-0.5	-0.6	-0.6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A)	0.0	0.0	1.5	6.4	6.8	0.3	0.4	0.0	2.3	5.0	0.0	0.6	4.7
미부양(B)	2.2	0.0	0.0	6.3	18.9	6.1	12.9	8.2	9.7	11.2	0.8	2.3	3.8
차이(A-B)	-2.2	0.0	1.5	0.1	-12.1	-5.8	-12.5	-8.2	-7.4	-6.2	-0.8	-1.7	0.9
대학생 자녀													
부양(A)	0.0	0.0	0.0	0.0	95.3	18.3	0.3	5.5	0.0	3.2	0.0	0.0	1.0
미부양(B)	7.7	0.0	0.0	0.0	129.6	5.4	0.6	4.8	5.8	4.1	1.4	3.1	7.3
차이(A-B)	-7.7	0.0	0.0	0.0	-34.3	12.9	-0.3	0.7	-5.8	-0.9	-1.4	-3.1	-6.3

주: ( )는 해당 보조금을 받은 가구의 월평균 금액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3〉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부양(A)	17.6	2.0	3.6	0.0	0.0	5.0	25.1	18.2	2.4	0.1
미부양(B)	6.6	1.1	2.8	1.7	0.0	8.3	14.1	11.7	1.7	0.0
차이(A-B)	11.0	0.9	0.8	-1.7	0.0	-3.3	11.0	6.5	0.7	0.1
초등학생 자녀										
부양(A)	28.1	2.5	3.6	1.0	0.0	5.8	22.2	17.7	2.0	0.1
미부양(B)	8.2	1.4	3.2	1.0	0.0	6.2	14.9	12.6	1.5	0.1
차이(A-B)	19.9	1.1	0.4	0.0	0.0	-0.4	7.3	5.1	0.5	0.0
중고등학생 자녀										
부양(A)	26.7	2.4	3.7	2.0	0.0	8.8	22.7	20.4	2.3	0.1
미부양(B)	10.4	1.7	3.0	0.8	0.1	5.2	15.7	13.6	1.7	0.1
차이(A-B)	16.3	0.7	0.7	1.2	-0.1	3.6	7.0	6.8	0.6	0.0
대학생 자녀										
부양(A)	28.5	2.9	3.2	2.8	0.0	5.5	28.2	23.4	2.2	0.2
미부양(B)	15.0	2.6	2.5	1.3	0.2	17.8	14.4	14.1	1.3	0.2
차이(A-B)	13.5	0.3	0.7	1.5	-0.2	-12.3	13.8	9.3	0.9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4〉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부모 부양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단위: 만 원)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시적이전지출		보통·피복비		교통·신·오락비		기타소비지출						
		가정 외식비 식비	주류·담배비	주거 월세 관리비	광열 수도비 용품비	가사 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보통·통신비	교양·오락비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외 <sup>2)</sup>			
미취학 자녀																					
부양(A)	488.7	61.0	34.8	5.9	2.6	11.3	14.0	15.4	44.5	0.0	37.6	37.2	9.0	15.4	15.9	14.7	21.1	7.0	13.5	71.0	
미부양(B)	395.3	56.4	30.3	6.1	4.7	14.7	13.4	12.7	43.1	1.9	24.0	7.3	2.5	13.4	12.8	14.9	16.6	5.5	3.9	59.8	
차이(A-B)	93.4	4.6	4.5	-0.2	-2.1	-3.4	0.6	2.7	1.4	-1.9	13.6	29.9	6.5	2.0	3.1	-0.2	4.5	1.5	9.6	11.2	
초등학교 자녀																					
부양(A)	505.3	63.5	36.0	5.8	4.5	13.0	14.8	13.3	6.3	2.4	63.1	36.5	8.3	15.7	19.3	16.9	30.8	9.0	6.8	77.9	
미부양(B)	392.7	56.5	31.8	7.4	3.0	10.1	14.0	11.6	10.2	2.1	49.8	8.4	2.5	13.1	14.0	17.6	17.6	5.5	4.1	59.4	
차이(A-B)	112.6	7.0	4.2	-1.6	1.5	2.9	0.8	1.7	-3.9	0.3	13.3	28.1	5.8	2.6	5.3	-0.7	13.2	3.5	2.7	18.5	
중고등학교 자녀																					
부양(A)	561.4	66.7	46.2	4.9	4.0	13.0	15.5	16.5	0.4	16.1	78.5	41.1	6.0	18.5	22.1	57.5	21.0	26.9	9.4	13.0	84.4
미부양(B)	409.8	55.6	38.3	6.9	4.2	9.0	14.1	11.5	0.5	13.2	60.0	7.1	5.2	10.9	16.4	49.2	20.6	11.9	4.9	4.6	65.7
차이(A-B)	151.6	11.1	7.9	-2.0	-0.2	4.0	1.4	5.0	-0.1	2.9	18.5	34	0.8	7.6	5.7	8.3	0.4	15	4.5	8.4	18.7
대학생 자녀																					
부양(A)	653.7	65.5	42.1	9.4	0.5	10.3	15.8	12.2	0.0	83.4	35.1	35.4	31.4	19.4	25.2	76.7	27.5	27.9	11.8	4.0	120.2
미부양(B)	507.0	53.3	37.7	8.4	5.5	14.7	16.1	10.8	0.1	67.0	18.2	6.1	36.6	15.7	18.5	53.0	25.1	17.7	9.1	5.3	88.1
차이(A-B)	146.7	12.2	4.4	1.0	-5.0	-3.2	-0.3	1.4	-0.1	16.4	16.9	29.3	-5.2	3.7	6.7	23.7	2.4	10.2	2.7	-1.3	32.1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비용 등.

2) 이대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5〉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변화

(단위: %)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 (A-B)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사회 보장금			
미취학 자녀									
2010년(A)	484.7 (100.0)	430.2 (88.8)	5.9 (1.2)	23.3 (4.8)	25.3 (5.2)	45.1 (100.0)	20.4 (45.2)	24.7 (54.8)	439.7
2015년(B)	545.7 (100.0)	460.1 (84.3)	5.7 (1.0)	21.5 (3.9)	58.4 (10.7)	55.2 (100.0)	22.6 (40.9)	32.6 (59.1)	490.5
차이(B-A)	61.0	29.9	-0.2	-1.8	33.1	10.1	2.2	7.9	50.8
초등학생 자녀									
2010년(A)	475.8 (100.0)	436.9 (91.8)	11.6 (2.4)	19.5 (4.1)	7.8 (1.6)	47.3 (100.0)	22.3 (47.1)	25.0 (52.9)	428.5
2015년(B)	555.5 (100.0)	516.3 (92.9)	5.1 (0.9)	20.1 (3.6)	14.0 (2.5)	59.1 (100.0)	26.2 (44.3)	32.9 (55.7)	496.4
차이(B-A)	79.7	79.4	-6.5	0.6	6.2	11.8	3.9	7.9	67.9
중고등학생 자녀									
2010년(A)	593.8 (100.0)	564.9 (95.1)	8.6 (1.4)	11.9 (2.0)	8.4 (1.4)	44.5 (100.0)	19.8 (44.5)	24.7 (55.5)	549.3
2015년(B)	581.8 (100.0)	544.7 (93.6)	12.1 (2.1)	15.6 (2.7)	9.4 (1.6)	64.4 (100.0)	28.6 (44.4)	35.8 (55.6)	517.4
차이(B-A)	-12.0	-20.2	3.5	3.7	1.0	19.9	8.8	11.1	-31.9
대학학생 자녀									
2010년(A)	558.7 (100.0)	500.5 (89.6)	19.7 (3.5)	25.6 (4.6)	12.9 (2.3)	53.9 (100.0)	27.9 (51.8)	26.0 (48.2)	504.8
2015년(B)	666.3 (100.0)	599.9 (90.0)	16.2 (2.4)	32.4 (4.9)	17.8 (2.7)	77.4 (100.0)	40.4 (52.2)	37.0 (47.8)	588.9
차이(B-A)	107.6	99.4	-3.5	6.8	4.9	23.5	12.5	11.0	84.1

주: 1) 2010년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137가구, 초등학생 자녀 231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249가구, 대학생 자녀 119가구임.

2) 2015년 학령 단계별로 미취학 자녀 133가구, 초등학생 자녀 276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235가구, 대학생 자녀 126가구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6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부표 1-16〉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변화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미취학 자녀								
2010년(A)	358.5 (100.0)	85.5 (23.8)	34.3 (9.6)	64.0 (17.9)	14.0 (3.9)	22.7 (6.3)	73.1 (20.4)	65.0 (18.1)
2015년(B)	421.2 (100.0)	95.2 (22.6)	44.8 (10.6)	72.6 (17.2)	19.9 (4.7)	27.6 (6.6)	85.7 (20.3)	75.4 (17.9)
차이(B-A)	62.7	9.7	10.5	8.6	5.9	4.9	12.6	10.4
초등학생 자녀								
2010년(A)	359.3 (100.0)	89.9 (25.0)	30.3 (8.4)	63.1 (17.6)	16.9 (4.7)	23.1 (6.4)	72.0 (20.0)	64.1 (17.8)
2015년(B)	425.8 (100.0)	98.5 (23.1)	40.7 (9.6)	65.0 (15.3)	20.9 (4.9)	29.4 (6.9)	95.1 (22.3)	76.3 (17.9)
차이(B-A)	66.5	8.6	10.4	1.9	4.0	6.3	23.1	12.2
중고등학생 자녀								
2010년(A)	390.9 (100.0)	97.6 (25.0)	34.7 (8.9)	68.6 (17.5)	15.5 (4.0)	25.0 (6.4)	75.9 (19.4)	73.6 (18.8)
2015년(B)	459.7 (100.0)	106.3 (23.1)	42.1 (9.2)	80.8 (17.6)	23.7 (5.2)	31.6 (6.9)	89.5 (19.5)	85.6 (18.6)
차이(B-A)	68.8	8.7	7.4	12.2	8.2	6.6	13.6	12.0
대학생 자녀								
2010년(A)	476.8 (100.0)	90.2 (18.9)	32.5 (6.8)	95.3 (20.0)	47.0 (9.9)	29.0 (6.1)	89.6 (18.8)	93.3 (19.6)
2015년(B)	549.9 (100.0)	104.6 (19.0)	44.6 (8.1)	95.0 (17.3)	49.7 (9.0)	37.3 (6.8)	106.4 (19.4)	112.3 (20.4)
차이(B-A)	73.1	14.4	12.1	-0.3	2.7	8.3	16.8	19.0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7〉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구성비 변화

(단위: %)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sup>1)</sup>			공적 이전소득		
		임금 소득	사업· 부업 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 자녀	민간 보험	기타	사회 보험 급여 <sup>2)</sup>	기초 보장 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미취학 자녀												
2010년	100.0	68.7	20.1	0.9	0.3	0.0	4.0	0.0	0.8	0.4	0.0	4.9
2015년	100.0	76.2	8.1	0.2	0.7	0.1	3.1	0.0	0.8	1.6	0.0	9.1
초등학교 자녀												
2010년	100.0	73.5	18.3	1.5	1.0	0.0	2.8	0.0	1.3	0.1	0.1	1.4
2015년	100.0	74.0	19.0	0.3	0.5	0.0	2.6	0.0	1.0	0.3	0.0	2.3
중·고등학교 자녀												
2010년	100.0	57.5	37.6	0.7	0.8	0.0	1.1	0.0	0.9	0.5	0.2	0.7
2015년	100.0	75.4	18.2	0.8	1.2	0.0	1.6	0.0	1.1	0.6	0.1	0.9
대학생 자녀												
2010년	100.0	68.4	21.2	1.3	2.2	0.0	0.7	0.0	3.9	0.9	0.5	1.0
2015년	100.0	62.3	27.8	0.9	1.6	0.0	1.3	0.1	3.5	0.5	0.2	1.9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8)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b>미취학 자녀</b>													
2010년(A)	0.0	0.0	15.0	250.5	0.0	0.0	6.7	2.7	0.0	0.0	0.0	0.0	8.1
2015년(B)	1.9	0.0	76.5	492.6	0.0	3.6	3.0	1.7	7.6	0.0	0.2	0.8	7.0
차이(B-A)	1.9	0.0	61.5	242.1	0.0	3.6	-3.7	-1.0	7.6	0.0	0.2	0.8	-1.1
<b>초등학교 자녀</b>													
2010년(A)	0.8	0.0	1.3	50.7	1.9	0.5	4.0	4.6	0.0	0.0	0.0	0.0	14.6
2015년(B)	0.0	0.0	11.0	107.5	3.3	1.6	5.4	6.7	10.3	0.5	0.3	0.6	3.4
차이(B-A)	-0.8	0.0	9.7	56.8	1.4	1.1	1.4	2.1	10.3	0.5	0.3	0.6	-11.2
<b>중고등학교 자녀</b>													
2010년(A)	2.5	0.0	0.0	3.2	17.7	2.6	0.9	1.4	0.0	0.0	0.0	0.0	18.6
2015년(B)	1.4	0.0	0.5	6.4	14.9	4.2	8.8	5.5	7.2	9.2	0.6	1.8	4.1
차이(B-A)	-1.1	0.0	0.5	3.2	-2.8	1.6	7.9	4.1	7.2	9.2	0.6	1.8	-14.5
<b>대학생 자녀</b>													
2010년(A)	2.4	0.0	0.0	1.6	41.4	4.3	0.0	1.7	0.0	0.0	0.0	0.0	14.9
2015년(B)	5.5	0.0	0.0	0.0	119.6	9.2	0.5	5.0	4.1	3.8	1.0	2.2	5.4
차이(B-A)	3.1	0.0	0.0	0.0	78.2	4.9	0.5	3.3	4.1	3.8	1.0	2.2	-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19〉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및 자녀 규모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내역 구성비 변화

(단위: %)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신로품비		주거·광열·가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부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소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 수도비	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과료비	신로품비	부모	기타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비	교양	경조비	종교 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100.0	14.4	7.6	1.8	0.8	2.3	3.9	2.6	8.5	0.1	9.3	3.5	0.4	3.3	3.0	11.3	4.0	5.1	1.6	1.3	1.3	15.3	
2010년	100.0	13.7	7.5	1.4	1.0	3.3	3.2	3.2	10.3	0.3	6.6	3.7	1.0	3.3	3.2	12.6	3.5	4.2	1.4	1.5	1.4	14.9	
초등학교	100.0	14.0	8.9	2.1	0.7	2.0	3.8	1.9	2.0	0.9	14.6	3.8	0.9	3.4	3.1	11.6	4.1	4.2	1.5	1.5	1.5	14.8	
2010년	100.0	13.7	7.8	1.6	0.8	2.6	3.3	2.8	2.1	0.5	12.6	3.9	1.0	3.3	3.7	13.2	4.1	5.0	1.6	1.2	1.2	15.2	
2015년	100.0	13.4	9.3	2.3	1.1	2.1	3.8	1.8	0.1	4.1	13.4	2.8	1.2	3.4	3.0	11.6	4.7	3.1	1.6	1.2	1.2	16.1	
2015년	100.0	12.9	8.9	1.3	0.9	2.2	3.2	2.9	0.1	3.1	14.4	4.0	1.2	2.9	4.0	11.3	4.5	3.7	1.4	1.6	1.6	15.6	
대학교	100.0	10.4	7.0	1.6	0.7	1.5	3.2	1.4	0.0	16.2	3.8	2.5	7.4	3.1	2.9	11.2	4.4	3.2	1.6	1.2	1.2	16.8	
2010년	100.0	10.3	7.1	1.6	0.7	2.4	2.9	2.0	0.0	13.1	4.2	2.7	6.4	3.1	3.7	10.9	4.7	3.8	1.8	1.0	1.0	17.7	
2015년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0)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sup>1)</sup>			공적 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 보형	기타	사회보형 급여 <sup>2)</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미취학 자녀																		
2010년(A)	484.7	332.9	97.4	4.4	1.6	0.0	19.5	0.0	3.8	1.7	0.0	23.6						
2015년(B)	545.7	415.7	44.4	0.9	4.0	0.8	16.9	0.0	4.6	8.8	0.0	49.6						
차이(B-A)	61.0	82.8	-53.0	-3.5	2.4	0.8	-2.6	0.0	0.8	7.1	0.0	26.0						
초등학생 자녀																		
2010년(A)	475.8	349.7	87.1	6.9	4.8	0.0	13.4	0.0	6.1	0.7	0.5	6.5						
2015년(B)	555.5	410.9	105.4	1.9	3.0	0.1	14.6	0.0	5.5	1.4	0.0	12.6						
차이(B-A)	79.7	61.2	18.3	-5.0	-1.8	0.1	1.2	0.0	-0.6	-5.8	-0.5	6.1						
중고등학교 자녀																		
2010년(A)	593.8	341.5	223.4	4.1	4.5	0.0	6.7	0.0	5.2	3.2	1.3	3.9						
2015년(B)	581.8	438.7	106.0	4.6	6.7	0.7	9.2	0.0	6.5	3.5	0.5	5.4						
차이(B-A)	-12.0	97.2	-117.4	0.5	2.2	0.7	2.5	0.0	1.3	0.3	-0.8	1.5						
대학생 자녀																		
2010년(A)	558.7	382.0	118.5	7.4	12.1	0.2	3.7	0.0	21.9	4.8	2.6	5.5						
2015년(B)	666.3	414.8	185.1	5.8	10.4	0.0	8.7	0.4	23.4	3.6	1.2	13.0						
차이(B-A)	107.6	32.8	66.6	-1.6	-1.7	-0.2	5.0	0.4	1.5	-1.2	-1.4	7.5						

주: 1) 사적 이전소득에서 민간 보형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기타는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의원의 소득임.

2)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1〉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세부 항목 변화

구분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단위: 만 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미취학 자녀												
2010년(A)	9.1	1.0	2.5	4.2	0.0	3.6	13.6	10.1	0.9	0.1		
2015년(B)	9.6	1.4	3.0	1.2	0.0	7.4	17.1	13.5	1.9	0.1		
차이(B-A)	0.5	0.4	0.5	-3.0	0.0	3.8	3.5	3.4	1.0	0.0		
초등학교 자녀												
2010년(A)	11.1	1.3	2.4	1.9	0.0	5.5	13.0	10.9	0.9	0.2		
2015년(B)	14.0	1.7	3.3	1.0	0.0	6.1	17.0	14.1	1.7	0.1		
차이(B-A)	2.9	0.4	0.9	-0.9	0.0	0.6	4	3.2	0.8	-0.1		
중고등학교 자녀												
2010년(A)	10.3	1.5	2.6	1.5	0.0	4.0	12.6	11.1	0.9	0.2		
2015년(B)	15.8	1.9	3.2	1.2	0.1	6.4	18.0	15.9	1.9	0.1		
차이(B-A)	5.5	0.4	0.6	-0.3	0.1	2.4	5.4	4.8	1.0	-0.1		
대학생 자녀												
2010년(A)	16.7	2.3	2.5	1.4	0.4	4.6	13.3	11.8	0.9	0.1		
2015년(B)	18.9	2.7	2.7	1.7	0.1	14.2	18.4	16.8	1.5	0.2		
차이(B-A)	2.2	0.4	0.2	0.3	-0.3	9.6	5.1	5.0	0.6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2〉 최근 5년간 자녀의 학령 단계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내역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기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 월세	광열 관리비	수도비	가전가	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부모	기타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교양·오락비	경조비	종교·관련비	그 외 <sup>2)</sup>
미취학 자녀	2010년(A)	358.5	51.8	27.3	6.5	2.7	8.2	13.9	9.5	30.6	0.2	33.2	12.6	1.3	12.0	10.7	40.6	14.2	18.4	5.8	4.5	54.7
	2015년(B)	421.2	57.7	31.5	6.0	4.1	13.8	13.5	13.4	43.4	1.3	27.8	15.6	4.3	14.0	13.6	53.1	14.8	17.8	5.9	6.5	62.9
	차이(B-A)	62.7	5.9	4.2	-0.5	1.4	5.6	-0.4	3.9	12.8	1.1	-5.4	3.0	3.0	2.0	2.9	12.5	0.6	-0.6	0.1	2.0	8.2
초등학교생 자녀	2010년(A)	359.3	50.2	32.1	7.6	2.5	7.1	13.7	7.0	7.3	3.4	52.5	13.5	3.4	12.1	11.0	41.8	14.9	15.2	5.5	5.3	53.3
	2015년(B)	425.8	58.5	33.0	6.9	3.4	10.9	14.2	12.1	9.0	2.2	53.7	16.7	4.2	13.9	15.6	56.2	17.4	21.5	6.6	4.9	64.8
	차이(B-A)	66.5	8.3	0.9	-0.7	0.9	3.8	0.5	5.1	1.7	-1.2	1.2	3.2	0.8	1.8	4.6	14.4	2.5	6.3	1.1	-0.4	11.5
중·고등학교생 자녀	2010년(A)	390.9	52.5	36.4	8.8	4.4	8.3	14.9	7.1	0.2	16.1	52.3	11.0	4.5	13.3	11.7	45.4	18.3	12.3	6.2	4.5	62.9
	2015년(B)	459.7	59.2	40.9	6.2	4.1	10.3	14.6	13.2	0.5	14.2	66.1	18.3	5.4	13.4	18.3	52.0	20.8	16.8	6.4	7.4	71.9
	차이(B-A)	68.8	6.7	4.5	-2.6	-0.3	2.0	-0.3	6.1	0.3	-1.9	13.8	7.3	0.9	0.1	6.6	6.6	2.5	4.5	0.2	2.9	9.0
대학생 자녀	2010년(A)	476.8	49.4	33.4	7.5	3.3	7.3	15.2	6.7	0.0	77.3	18.0	11.8	35.2	14.9	14.0	53.5	20.9	15.2	7.7	5.5	80.0
	2015년(B)	549.9	56.9	39.0	8.7	4.0	13.4	16.0	11.2	0.1	71.8	23.1	14.6	35.1	16.8	20.5	60.0	25.8	20.7	9.9	5.0	97.5
	차이(B-A)	73.1	7.5	5.6	1.2	0.7	6.1	0.8	4.5	0.1	-5.5	5.1	2.8	-0.1	1.9	6.5	6.5	4.9	5.5	2.2	-0.5	17.5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여학원수비, 독서실비용 등.

2) 이대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 보험료(저축성 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3〉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변화

구분	가구 경상소득(A)						조세(B)			가구 가처분소득(A-B)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회 보장 부담금		세금	사회 보장 부담금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동거	262.8 (100.0)	137.5 (52.3)	33.3 (12.7)	20.5 (7.8)	71.5 (27.2)	13.9 (100.0)	5.7 (41.0)	8.2 (59.0)	248.9 0.0	
2015년(B)	396.0 (100.0)	253.6 (64.0)	24.1 (6.1)	30.4 (7.7)	87.8 (22.2)	22.0 (100.0)	9.5 (56.8)	12.5 (43.2)	374.0 0.0	
차이(B-A)	133.2	116.1	-9.2	9.9	16.3	8.1	3.8	4.3	125.1	
비동거	622.8 (100.0)	577.7 (92.8)	19.5 (3.1)	15.2 (2.4)	10.4 (1.7)	64.5 (100.0)	33.5 (51.9)	31.0 (48.1)	558.3 0.0	
2015년(B)	727.9 (100.0)	662.7 (91.1)	22.7 (3.1)	21.9 (3.0)	20.5 (2.8)	83.0 (100.0)	40.9 (49.3)	42.1 (50.7)	644.8 0.0	
차이(B-A)	105.1	85.0	3.2	6.7	10.1	18.5	7.4	11.1	86.5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단위: 만 원, %)

〈부표 1-24〉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변화

(단위: 만 원, %)

구분	소비지출							
	식품품비	주거광열· 가사용품비	교육· 보육비	소비지출 사적 이전 지출	보건· 피복비	교통통신· 오락비	기타 소비 지출	
동거								
2010년(A)	246.2 (100.0)	29.4 (11.9)	0.0 (0.0)	15.8 (6.4)	26.4 (10.7)	45.6 (18.5)	60.0 (24.4)	
2015년(B)	303.4 (100.0)	29.7 (9.8)	1.2 (0.4)	27.0 (8.9)	33.3 (11.0)	62.4 (20.6)	68.0 (22.4)	
차이(B-A)	57.2	0.3	1.2	11.2	6.9	16.8	8.0	
비동거								
2010년(A)	409.5 (100.0)	41.6 (10.2)	29.1 (7.1)	47.5 (11.6)	27.8 (6.8)	86.9 (21.2)	89.2 (21.8)	
2015년(B)	480.8 (100.0)	41.7 (8.7)	37.4 (7.8)	50.5 (10.5)	40.3 (8.4)	106.5 (22.2)	99.7 (20.7)	
차이(B-A)	71.3	0.1	8.3	3.0	12.5	19.6	10.5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5)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가구 소득 세부 항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소득 전체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부업 소득	이자·배당금	임대료	기타	부모·자녀	민간 보험 <sup>1)</sup>	기타 <sup>2)</sup>	사회보험 급여 <sup>3)</sup>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 보조금
동거												
2010년(A)	262.8 (100.0)	85.5 (32.5)	52.0 (19.8)	12.6 (4.8)	18.1 (6.9)	2.6 (1.0)	12.9 (4.9)	2.7 (1.0)	4.9 (1.9)	52.3 (19.9)	3.4 (1.3)	15.8 (6.0)
2015년(B)	396.0 (100.0)	135.4 (34.2)	118.2 (29.8)	7.3 (1.8)	16.9 (4.3)	0.0 (0.0)	18.4 (4.6)	2.5 (0.6)	9.5 (2.4)	50.5 (12.8)	1.2 (0.3)	36.1 (9.1)
차이(A-B)	133.2	49.9	66.2	-5.3	-1.2	-2.6	5.5	-0.2	4.6	-1.8	-2.2	20.3
비동거												
2010년(A)	622.8 (100.0)	397.3 (63.8)	180.3 (28.9)	7.8 (1.3)	11.7 (1.9)	0.0 (0.0)	8.8 (1.4)	0.1 (0.0)	6.3 (1.0)	7.4 (1.2)	0.0 (0.0)	3.0 (0.5)
2015년(B)	727.9 (100.0)	539.4 (74.1)	123.2 (16.9)	8.4 (1.2)	14.4 (2.0)	0.0 (0.0)	15.0 (2.1)	0.4 (0.1)	6.5 (0.9)	8.7 (1.2)	0.1 (0.0)	11.7 (1.6)
차이(A-B)	105.1	142.1	-57.1	0.6	2.7	0.0	6.2	0.3	0.2	1.3	0.1	8.7

주: 1) 개인연금, 퇴직연금.

2) 9개월 미만 동거한 가구원의 소득.

3)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6〉 최근 5년간 부모 동거 여부별 연간 공적 이전소득 중 기타 정부 보조금 세부 항목 변화

(단위: 만 원)

구분	장애(아동) 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 장려 세제	자녀 장려 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동거														
2010년	5.2	113.6	0.0	0.0	0.0	0.0	57.8	0.3	0.0	0.0	0.0	0.0	0.0	12.4
2015년	7.6	298.9	0.0	0.0	0.0	0.0	104.9	1.1	0.0	0.0	0.0	2.5	2.9	15.7
비동거														
2010년	0.0	0.0	1.3	17.5	0.0	0.0	0.4	2.1	1.2	0.0	0.0	0.0	0.0	13.6
2015년	2.4	1.7	33.6	62.4	12.2	0.0	4.4	8.9	1.7	1.1	0.0	0.4	1.5	9.8

주: 공적 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초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1-27〉 최근 5년간의 부모 동거 여부별 월평균 소비지출 세부 항목 변화

구분	(단위: 만 원, %)																				
	소비 지출 전체	식료품비		주거광열·기사용품비			교육·보육비		사적 이전지출		보건·피부비		교통통신·오락비		기타 소비지출						
	가정 소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월세	주거 관리비	광열·수도비	가전·가사용품비	보육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sup>1)</sup>	부모	기타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경조비	중고 관련비	그 외 <sup>2)</sup>	
동거	2010년	246.2	50.6	13.1	5.3	1.4	5.9	16.4	5.8	0.0	0.0	2.7	13.1	19.7	6.7	30.7	8.2	6.7	8.2	3.8	48.0
	(100.0)	(20.6)	(5.3)	(2.2)	(0.6)	(0.6)	(2.4)	(6.7)	(2.4)	(0.0)	(0.0)	(1.1)	(5.3)	(8.0)	(2.7)	(12.5)	(3.3)	(2.7)	(3.3)	(1.5)	(19.5)
비동거	2015년	303.4	57.9	18.3	5.6	1.3	5.0	15.8	7.7	0.2	1.0	1.5	25.5	24.3	9.0	39.9	10.6	11.9	9.3	3.9	54.8
	(100.0)	(19.1)	(6.0)	(1.8)	(0.4)	(0.4)	(1.6)	(5.2)	(2.5)	(0.1)	(0.3)	(0.5)	(8.4)	(8.0)	(3.0)	(13.2)	(3.5)	(3.9)	(3.1)	(1.3)	(18.1)
비동거	2010년	409.5	48.7	32.6	6.1	2.6	14.5	14.6	10.0	8.6	5.1	15.4	39.6	7.9	12.9	14.9	53.2	17.1	16.6	7.6	75.0
	(100.0)	(11.9)	(8.0)	(1.5)	(0.6)	(0.6)	(3.5)	(3.6)	(2.4)	(2.1)	(1.2)	(3.8)	(9.7)	(1.9)	(3.2)	(3.6)	(13.0)	(4.2)	(4.1)	(1.9)	(18.3)
2015년	480.8	55.5	42.2	7.0	2.6	12.1	14.7	12.3	8.8	8.3	20.3	36.0	14.5	19.8	20.5	58.1	18.1	30.3	12.3	3.6	83.8
	(100.0)	(11.5)	(8.8)	(1.5)	(0.5)	(2.5)	(3.1)	(2.6)	(1.8)	(1.7)	(4.2)	(7.5)	(3.0)	(4.1)	(4.3)	(12.1)	(3.8)	(6.3)	(2.6)	(0.7)	(17.4)

주: 1) 학원비, 유치원비,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독서실 비용 등.  
 2) 이마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친목회비,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료 제외), 관혼상제비, 용돈 등.  
 3) ( )는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6차와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부록 2.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준거 가구와의 비교

### 제1절 분석 대상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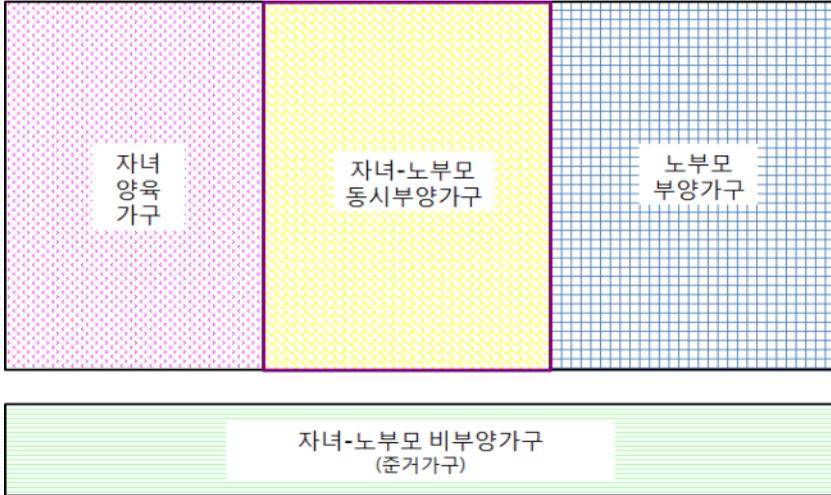
#### 1. 분석 대상 및 가구 유형

본 연구의 대상은 부양 실태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부도 2-1]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부양 실태는 자녀 또는 노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첫 번째 가구 유형은 준거 가구로 ‘양육하는 자녀가 없으며 부모와 동거하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가구’이다. 준거 가구는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을 하지 않는 가구로,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만일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이다.

두 번째 가구 유형은 ‘0~18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하 자녀 양육 가구), 세 번째 가구 유형은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가구’(이하 노부모 부양 가구, 네 번째 가구 유형은 ‘0~18세 자녀를 양육하고 노부모와도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구’(이하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이다. 만일 자녀가 있더라도 19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라도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 가구에 포함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65세를 넘지 않았다면 노부모 부양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육 대상의 자녀 연령은 민법상 미성년 연령인 18세 기준을 따른 것이며, 부양 대상 부모 연령은 일반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을 적용한 것이다.

[부도 2-1] 가구 유형



## 2.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 연도(조사시점 2015년)이다. 조사 대상 가구는 전체 6723가구이며, 이 중 본 연구의 가구 유형별 소득과 소비, 조세 분석에 활용된 가구는 총 1521가구이다.

### 제2절 가구 유형별 소득·소비·조세 분석

#### 1. 가구 유형별 특성

가구 유형별로 분석 가구를 살펴보면, 준거 가구는 399가구(26.2%)이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1122가구(73.8%)이다. 가족 부양 가구 중 자녀 양육 가구가 1034가구(6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녀-노부

모 동시 부양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는 각각 53가구(3.5%)와 35가구(2.3%)로 비율이 낮다. 가구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sup>61)</sup> 성별은 남성이 98.4%로 압도적이며, 준거 가구의 가구주 남성 비율이 95.2%로 전체보다 낮은 편이다.

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5세 미만이 8.9%, 35~49세가 63.9%, 50~64세가 27.2%인 반면, 준거 가구는 50~64세의 가구주가 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자녀 양육 가구는 35~49세 82.4%, 노부모 부양 가구 50~64세 85.7%,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35~49세 79.3%이다. 즉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준거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분석 가구의 가구주 학력은 중졸 이하 12.6%, 고졸 36.8%, 전문대 졸 14.3%, 4년제 대졸 30.8%, 그리고 대학원 이상 5.5%이다. 가구 유형별 가구주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의 가구주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다. 가구 유형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력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양육 가구 가구주는 전문대 졸 이상 60.2%이다. 준거 가구는 고졸 이하 69.4%, 노부모 부양 가구는 고졸 이하 74.3%,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고졸 이하 67.9%이다.

가구 소득분위를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11.7%이며, 3분위는 25.2%, 4분위는 35.6%, 5분위는 27.5%이다. 그러나 준거 가구는 1~2분위에 속한 비율이 27.3%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 임금근로자가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임시 일용근로자 16.4%, 자영/고용주 20.4%, 실업자 1.2%, 비경제활동자 5.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 양육

61) 이하의 특성은 모두 가구주 기준으로 작성됨.

가구는 상용 임금근로자 비율이 65.2%로 높고, 노부모 부양 가구는 자영/고용주의 비율이 54.3%로 높다.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전체 가구의 특성과 유사한 반면, 준거 가구는 상용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6.6%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는 23.3%로 다소 낮다.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전체에서 상용 임금근로자 22.0%, 임시 일용근로자 21.4%로 가구주보다 상용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고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높다. 배우자의 비경제활동자 비율은 43.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자녀 양육 가구는 배우자의 상용 임금근로자 비율이 25%로 전체 평균보다 높고, 노부모 부양 가구는 배우자의 자영/고용주의 비율이 34.3%로 비교적 높다.

거주 지역은 전체의 약 87%가 도시에 거주하지만(도시 86.9%, 농촌 10.8%, 도농복합군 2.4%), 노부모 부양 가구는 농촌 거주 비율이 42.9%로 높은 특성이 있다.

〈부표 2-1〉 가구 유형별 특성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유형			
		준거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합계	1,521 (100.00)	399 (26.23)	1,034 (67.98)	35 (2.30)	53 (3.48)
성					
남자	1496 (98.36)	380 (95.24)	1028 (99.42)	35 (100.00)	53 (100.00)
여자	25 (1.64)	19 (4.76)	6 (0.58)	0 (0.00)	0 (0.00)
연령					
35세 미만	135 (8.88)	49 (12.28)	86 (8.32)	0 (0.00)	0 (0.00)
35~49세	972 (63.91)	73 (18.30)	852 (82.40)	5 (14.29)	42 (79.25)
50~64세	414 (27.22)	277 (69.42)	96 (9.28)	30 (85.71)	11 (20.75)

280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부표 2-1〉 가구 유형별 특성(계속)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유형			
		준거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학력					
중졸 이하	191 (12.56)	136 (34.09)	34 (3.29)	14 (40.00)	7 (13.21)
고졸	560 (36.82)	141 (35.34)	378 (36.56)	12 (34.29)	29 (54.72)
전문대 졸	218 (14.33)	32 (8.02)	178 (17.21)	2 (5.71)	6 (11.32)
4년제 대졸	469 (30.83)	72 (18.05)	382 (36.94)	6 (17.14)	9 (16.98)
대학원 이상	83 (5.46)	18 (4.51)	62 (6.00)	1 (2.86)	2 (3.77)
가구 소득분위					
1분위	29 (1.91)	18 (4.51)	10 (0.97)	1 (2.86)	0 (0.00)
2분위	149 (9.80)	91 (22.81)	51 (4.93)	4 (11.43)	3 (5.66)
3분위	383 (25.18)	111 (27.82)	248 (23.98)	10 (28.57)	14 (26.42)
4분위	542 (35.63)	102 (25.56)	411 (39.75)	12 (34.29)	17 (32.08)
5분위	418 (27.48)	77 (19.30)	314 (30.37)	8 (22.86)	19 (35.85)
종사상지위					
상용 임금	855 (56.21)	146 (36.59)	674 (65.18)	6 (17.14)	29 (54.72)
임시 일용	250 (16.44)	93 (23.31)	143 (13.83)	6 (17.14)	8 (15.09)
자영/고용주	310 (20.38)	105 (26.32)	172 (16.63)	19 (54.29)	14 (26.42)
실업자	18 (1.18)	4 (1.00)	14 (1.35)	0 (0.00)	0 (0.00)
비경제활동	88 (5.79)	51 (12.78)	31 (3.00)	4 (11.43)	2 (3.77)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용 임금	332 (21.99)	63 (15.79)	256 (25.00)	3 (8.57)	10 (19.23)
임시 일용	323 (21.39)	88 (22.06)	219 (21.39)	4 (11.43)	12 (23.08)
자영/고용주	192 (12.72)	90 (22.56)	86 (8.40)	12 (34.29)	4 (7.69)
실업자	12 (0.79)	4 (1.00)	8 (0.78)	0 (0.00)	0 (0.00)
비경제활동	651 (43.11)	154 (38.60)	455 (44.43)	16 (45.71)	26 (50.00)

〈부표 2-1〉 가구 유형별 특성(계속)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유형			
		준거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거주지					
도시	1321 (86.85)	321 (80.45)	936 (90.52)	20 (57.14)	44 (83.02)
농촌	164 (10.78)	69 (17.29)	75 (7.25)	15 (42.86)	5 (9.43)
도농복합	36 (2.37)	9 (2.26)	23 (2.22)	0 (0.00)	4 (7.55)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자녀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양육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8명(1자녀 30.9%, 2자녀 57.4%, 3자녀 이상 11.8%),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9명(1자녀 22.6%, 2자녀 62.3%, 3자녀 이상 15.1%)으로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가 다소 많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6세 미만 28.5%, 6~12세 44.8%, 13~15세 16.4%, 16~18세 10.3%이다.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노부모 가구에 비해 자녀의 평균연령이 낮다(각각 12세 이하 73.3%, 69.8%). 노부모 부양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노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평균 노부모 수는 1.15명이고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1.19명으로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노부모 수가 다소 많지만 그 차가 크지 않다.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노부모가 1명인 가구(81~85% 내외)가 대다수이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에 비해 부모의 평균연령이 높고(각각 75세 이상 94.3%, 45.3%),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각각 건강하지 않은 편 14.3%, 24.5%).

282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부표 2-2〉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자녀 관련 특성  
(단위: 가구, 명, %)

구분	자녀 양육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합계(가구)	1,034	53
자녀 수		
1명	319(30.85)	12(22.64)
2명	593(57.35)	33(62.26)
3명	108(10.44)	8(15.09)
4명 이상	14( 1.36)	-
평균(명)	1.83	1.93
자녀 평균연령		
6세 미만	295(28.53)	11(20.75)
6~12세	463(44.78)	26(49.06)
13~15세	170(16.44)	11(20.75)
16~18세	106(10.25)	5(9.43)
자녀 성별		
남자	934(49.52)	48(47.06)
여자	952(50.48)	54(52.94)
합계(명)	1,886	1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3〉 노부모 부양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노부모 관련 특성  
(단위: 가구, 명, %)

구분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합계(가구)	35	53
노부모 수		
1명	30(85.71)	43(81.13)
2명	5(14.29)	10(18.87)
평균(명)	1.15	1.19
노부모 평균연령		
74세 이하	2( 5.72)	24(45.29)
75~79세	11(31.43)	16(30.19)
80~84세	6(17.14)	9(16.98)
85세 이상	16(45.71)	4( 7.55)
노부모 성별		
남자	7(17.50)	11(17.46)
여자	33(82.50)	52(82.54)
노부모 건강 상태		
건강한 편	22(62.85)	24(45.28)
보통	8(22.86)	16(30.19)
건강하지 않은 편	4(14.29)	11(24.52)
합계(명)	40	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 가구 유형별 소득·소비조세 분석

### 가. 전체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81만 원이며, 이 중 근로소득이 477만 원(82.1%)으로 가장 많고, 기타 소득 45만 원(7.8%), 기타 정부보조급여 23만 원(4.0%) 순이다. 소득 구성별로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이 다소 높은 581만 원이고 이 중 근로소득이 487만 원으로 83.8%를 차지한다. 전체에 비해 해당 가구는 사회보험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해당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만 원(2.2%)보다 약 6배 많은 80만 원(13.8%)이다.

〈부표 2-4〉 소득 구성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 원, %)

종류	전체 가구		해당 가구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가구 총소득	580.7	(100.0)	581.1	(100.0)
근로소득	476.9	( 82.1)	487.0	( 83.8)
재산소득	16.0	( 2.8)	48.5	( 8.3)
사회보험소득	12.7	( 2.2)	79.9	(13.8)
민간보험소득	0.2	( - )	30.5	( 5.3)
기타정부보조금	23.0	( 4.0)	42.8	( 7.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5	( 1.1)	22.7	( 3.9)
사적 이전소득	0.5	( 0.1)	13.6	( 2.3)
기타 소득	45.1	( 7.8)	46.9	( 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가구균등화지수<sup>62)</sup>를 통해 1인당 월평균 총소득(가구균등화소득)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330만 원이며 근로소득은 267만 원으로 82.1%의 점

62) 가구원 수에 루트를 취함.

284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유율을 나타냈으며 해당 가구만 살펴볼 경우 1인당 총소득은 330만 원, 근로소득이 273만 원으로 82.7%를 차지한다.

〈부표 2-5〉 1인당 소득 구성별 월평균 총소득

(단위: 만 원, %)

종류	전체 가구		해당 가구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총소득	329.7	(100.0)	329.9	(100.0)
근로소득	267.3	( 81.1)	273.0	( 82.7)
재산소득	9.9	( 3.0)	30.0	( 9.1)
사회보험소득	8.3	( 2.5)	52.4	( 15.9)
민간보험소득	0.1	( - )	21.6	( 6.5)
기타정보보조금	11.8	( 3.6)	22.1	( 6.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0	( 1.2)	13.9	( 4.2)
사적 이전소득	0.3	( 0.1)	8.7	( 2.6)
기타 소득	27.9	( 8.5)	29.0	( 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6〉 소비 항목별 월평균 가구 총지출

(단위: 만 원, %)

종류	전체 가구		해당 가구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총생활비	455.8	(100.0)	455.8	(100.0)
식비	94.3	( 20.7)	94.3	( 20.7)
주거비	14.2	( 3.1)	15.4	( 3.4)
광열수도비	13.9	( 3.0)	13.9	( 3.0)
가사용품비	19.6	( 4.3)	19.6	( 4.3)
의류신발비	14.9	( 3.3)	15.0	( 3.3)
보건의료비	16.8	( 3.7)	17.0	( 3.7)
교육비	36.6	( 8.0)	61.5	( 13.5)
교양·오락비	19.3	( 4.2)	19.3	( 4.2)
교통통신비	65.4	( 14.3)	65.4	( 14.3)
기타 소비지출	79.2	( 17.4)	79.2	( 17.4)
사적 이전지출	23.0	( 5.0)	25.9	( 5.7)
세금	27.1	( 5.9)	27.8	( 6.1)
사회보장 부담금	31.5	( 6.9)	32.7	(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전체 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456만 원이다. 해당 소비가 있는 가구의 총생활비는 전체 가구와 같고, 소비 항목별로도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비는 전체 평균 37만 원(8.0%)의 약 두 배 수준인 62만 원(13.5%)이다. 1인당 총생활비는 256만 원이며, 전체 가구 대비 1인당 총생활비를 비교하면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이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다.

〈부표 2-7〉 소비 항목별 1인당 월평균 총지출

(단위: 만 원, %)

종류	전체 가구		해당 가구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총생활비	255.9	(100.0)	255.9	(100.0)
식비	52.9	( 20.7)	52.9	( 20.7)
주거비	8.1	( 3.2)	8.8	( 3.4)
광열수도비	7.9	( 3.1)	7.9	( 3.1)
가사용품비	10.6	( 4.1)	10.6	( 4.1)
의류신발비	8.3	( 3.2)	8.4	( 3.3)
보건의료비	9.9	( 3.9)	9.9	( 3.9)
교육비	18.4	( 7.2)	30.9	(12.1)
교양·오락비	11.0	( 4.3)	11.0	( 4.3)
교통통신비	37.1	(14.5)	37.1	(14.5)
기타 소비지출	45.5	(17.8)	45.5	(17.8)
사적 이전지출	13.4	( 5.2)	15.1	( 5.9)
세금	15.3	( 6.0)	15.7	( 6.1)
사회보장 부담금	17.6	( 6.9)	18.3	(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나. 준거 가구 vs 자녀 양육 가구

### 1) 소득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605만 원으로 준거 가구 525만 원보다 80만 원 많

다. 소득 구성별로는 자녀 양육 가구가 준거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은 154만 원(각각 526만 원, 372만 원), 기타 정부보조금은 27만 원(각각 31만 원, 4만 원) 많다. 반면 자녀 양육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재산소득은 18만 원, 사회보험소득은 27만 원, 기타 소득은 48만 원이 더 적다. 이와 같은 금액 차는 해당 가구만 살펴볼 때도 비슷하다. 그러나 가구 규모를 감안하여 1인당 총소득을 분석하면, 준거 가구가 자녀 양육 가구보다 58만 원 더 많다. 근로소득은 차이가 크게 줄어, 준거 가구는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10만 원 적다.

〈부표 2-8〉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 양육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525.3 (100.0)	526.4 (100.0)	605.0 (100.0)	605.0 (100.0)	79.7	78.6
근로소득	371.5 (70.7)	389.2 (73.9)	525.8 (86.9)	530.6 (87.7)	154.3	141.4
재산소득	28.2 (5.4)	63.9 (12.1)	10.3 (1.7)	38.6 (6.4)	-17.9	-25.3
사회보험소득	30.4 (5.8)	99.9 (19.0)	3.5 (0.6)	49.0 (8.1)	-26.9	-50.9
민간보험소득	0.6 (0.1)	30.5 (5.8)	-	-	-0.6	-30.5
기타 정부보조금	3.8 (0.7)	12.6 (2.4)	30.5 (5.0)	49.3 (8.1)	26.6	36.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3 (2.1)	29.3 (5.6)	4.2 (0.7)	18.6 (3.1)	-7.0	-10.7
사적 이전소득	0.8 (0.2)	16.7 (3.2)	0.3 (-)	10.9 (1.8)	-0.5	-5.8
기타 소득	78.8 (15.0)	83.5 (15.9)	30.4 (5.0)	31.3 (5.2)	-48.4	-52.2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9〉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 양육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371.4 (100.0)	372.2 (100.0)	313.1 (100.0)	313.1 (100.0)	-58.4	-59.1
근로소득	262.7 (70.7)	275.2 (73.9)	272.2 (87.0)	274.7 (87.7)	9.5	-0.5
재산소득	19.9 (5.4)	45.2 (12.1)	5.4 (1.7)	20.1 (6.4)	-14.6	-25.1
사회보험소득	21.5 (5.8)	70.6 (19.0)	1.9 (0.6)	26.0 (8.3)	-19.6	-44.6
민간보험소득	0.4 (0.1)	21.6 (5.8)	-	-	-0.4	-21.6
기타 정부보조금	2.7 (0.7)	8.9 (2.4)	15.5 (4.9)	25.1 (8.0)	12.8	16.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0 (2.1)	20.7 (5.6)	2.2 (0.7)	9.6 (3.1)	-5.8	-11.1
사 적이전소득	0.6 (0.2)	11.8 (3.2)	0.2 (0.1)	6.0 (1.9)	-0.4	-5.8
기타 소득	55.7 (15.0)	59.1 (15.9)	15.8 (5.0)	16.3 (5.2)	-39.9	-42.8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 소비지출과 조세 부담

자녀 양육 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494만 원으로 준거 가구의 370만 원보다 124만 원 더 많다. 소비 항목별로는 자녀 양육 가구가 준거 가구에 비해 식비는 25만 원, 교육비는 53만 원을 더 지출한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 가구는 가사용품비(16만 원)와 교통통신비(13만 원), 세금(7만 원), 사회보장 부담금(12만 원) 등도 준거 가구보다 더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준거 가구는 보건의료비(5만 원), 기타 소비지출(4만 원), 사적 이전지출(4만 원)을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비지출 항목별로 비슷하다.

그러나 1인당 총생활비로 균등화하면, 오히려 자녀 양육 가구가 준거 가

구에 비해 7만 원을 더 적게 지출한다. 자녀 양육 가구와 준거 가구의 보건 의료비와 기타 소비지출, 사적 이전지출 차는 더욱 커진다(준거 가구가 더 많이 소비한다). 또한 자녀 양육 가구는 식비(2만 원), 주거비(1만 원), 광열 수도비(2만 원), 교양오락비(2만 원), 교통통신비(4만 원), 세금(1만 원)도 준거 가구에 비해 더 적게 지출한다. 교육비는 여전히 자녀 양육 가구가 27만 원 더 지출한다. 그러나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면, 준거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 자녀 양육 가구와의 차가 9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부표 2-10〉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 양육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369.9 (100.0)	369.9 (100.0)	494.1 (100.0)	494.1 (100.0)	124.2	124.2
식비	76.8 (20.8)	76.8 (20.8)	101.3 (20.5)	101.3 (20.5)	24.5	24.5
주거비	12.7 (3.4)	14.6 (3.9)	15.3 (3.1)	16.1 (3.3)	2.6	1.5
광열수도비	12.6 (3.4)	12.6 (3.4)	14.2 (2.9)	14.2 (2.9)	1.6	1.6
가사용품비	8.5 (2.3)	8.5 (2.3)	24.8 (5.0)	24.8 (5.0)	16.3	16.3
의류신발비	11.8 (3.2)	11.9 (3.2)	16.3 (3.3)	16.3 (3.3)	4.5	4.4
보건의료비	19.6 (5.3)	19.8 (5.4)	14.9 (3.0)	15.0 (3.0)	-4.7	-4.8
교육비	0.2 (0.1)	31.8 (8.6)	53.0 (10.7)	61.3 (12.4)	52.8	29.5
교양오락비	17.2 (4.6)	17.2 (4.6)	20.3 (4.1)	20.3 (4.1)	3.1	3.1
교통통신비	56.6 (15.3)	56.6 (15.3)	70.0 (14.2)	70.0 (14.2)	13.4	13.4
기타 소비지출	81.4 (22.0)	81.4 (22.0)	77.0 (15.6)	77.0 (15.6)	-4.4	-4.4
사적 이전지출	26.2 (7.1)	32.2 (8.7)	22.0 (4.5)	23.7 (4.8)	-4.2	-8.5
세금	22.7 (6.1)	23.4 (6.3)	29.6 (6.0)	30.4 (6.2)	6.9	7.0
사회보장 부담금	23.5 (6.4)	25.4 (6.9)	35.5 (7.2)	36.1 (7.3)	12.0	10.7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11〉 준거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 양육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261.6 (100.0)	261.6 (100.0)	255.0 (100.0)	255.0 (100.0)	-6.6	-6.6
식비	54.3 (20.8)	54.3 (20.8)	52.2 (20.5)	52.2 (20.5)	-2.1	-2.1
주거비	9.0 (3.4)	10.3 (3.9)	8.0 (3.1)	8.4 (3.3)	-1.0	-1.9
광열수도비	8.9 (3.4)	8.9 (3.4)	7.3 (2.9)	7.3 (2.9)	-1.6	-1.6
가사용품비	6.0 (2.3)	6.0 (2.3)	12.8 (5.0)	12.8 (5.0)	6.8	6.8
의류신발비	8.3 (3.2)	8.4 (3.2)	8.4 (3.3)	8.4 (3.3)	0.1	-
보건의료비	13.9 (5.3)	14.0 (5.4)	7.8 (3.1)	7.9 (3.1)	-6.1	-6.1
교육비	0.1 (-)	22.5 (8.6)	26.8 (10.5)	31.0 (12.2)	26.7	8.5
교양오락비	12.2 (4.7)	12.2 (4.7)	10.5 (4.1)	10.5 (4.1)	-1.7	-1.7
교통통신비	40.0 (15.3)	40.0 (15.3)	36.3 (14.2)	36.3 (14.2)	-3.7	-3.7
기타 소비지출	57.6 (22.0)	57.6 (22.0)	39.8 (15.6)	39.8 (15.6)	-17.8	-17.8
사적 이전지출	18.6 (7.1)	22.8 (8.7)	11.4 (4.5)	12.3 (4.8)	-7.2	-10.5
세금	16.1 (6.2)	16.6 (6.3)	15.4 (6.0)	15.8 (6.2)	-0.7	-0.8
사회보장 부담금	16.6 (6.3)	18.0 (6.9)	18.4 (7.2)	18.7 (7.3)	1.8	0.7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나. 준거 가구 vs 노부모 부양 가구

### 1) 소득

노부모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1만 원으로 준거 가구의 525만 원보다 55만 원 더 많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두 가구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큰데 노부모 부양 가구(477만 원)가 준거 가구(372만 원)보다

105만 원 더 많다.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의 점유율은 노부모 부양 가구(82.1%)가 준거 가구(70.7%)보다 약 11.4% 높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기타 정부보조금(19만 원)은 더 많지만, 재산소득(12만 원), 사회보험소득(18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5만 원), 기타소득(34만 원)은 더 적다.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분석하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5만 원 더 많다.

1인당 소득으로 균등화하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준거 가구보다 오히려 42만 원 더 적다(각각 330만 원, 371만 원). 이는 가구 규모를 감안하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경제 수준이 준거 가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구성별로 살펴보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의 격차가 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부표 2-12〉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노부모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525.3 (100.0)	526.4 (100.0)	580.7 (100.0)	581.1 (100.0)	55.4	54.7
근로소득	371.5 (70.7)	389.2 (73.9)	476.9 (82.1)	487.0 (83.8)	105.4	97.8
재산소득	28.2 (5.4)	63.9 (12.1)	16.0 (2.8)	48.5 (8.3)	-12.2	-15.4
사회보험소득	30.4 (5.8)	99.9 (19.0)	12.7 (2.2)	79.9 (13.8)	-17.7	-19.9
민간보험소득	0.6 (0.1)	30.5 (5.8)	0.2 (-)	30.5 (5.3)	-0.4	-
기타 정부보조금	3.8 (0.7)	12.6 (2.4)	23.0 (4.0)	42.8 (7.4)	19.1	30.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3 (2.1)	29.3 (5.6)	6.5 (1.1)	22.7 (3.9)	-4.8	-6.6
사적 이전소득	0.8 (0.2)	16.7 (3.2)	0.5 (0.1)	13.6 (2.3)	-0.4	-3.0
기타 소득	78.8 (15.0)	83.5 (15.9)	45.1 (7.8)	46.9 (8.1)	-33.6	-36.6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13〉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노부모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371.4 (100.0)	372.2 (100.0)	329.7 (100.0)	329.9 (100.0)	-41.8	-42.3
근로소득	262.7 (70.7)	275.2 (73.9)	267.3 (81.1)	273.0 (82.7)	4.6	-2.2
재산소득	19.9 (5.4)	45.2 (12.1)	9.9 (3.0)	30.0 (9.1)	-10.0	-15.2
사회보험소득	21.5 (5.8)	70.6 (19.0)	8.3 (2.5)	52.4 (15.9)	-13.1	-18.2
민간보험소득	0.4 (0.1)	21.6 (5.8)	0.1 (-)	21.6 (6.5)	-0.3	-
기타 정부보조금	2.7 (0.7)	8.9 (2.4)	11.8 (3.6)	22.1 (6.7)	9.1	13.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0 (2.1)	20.7 (5.6)	4.0 (1.2)	13.9 (4.2)	-4.0	-6.8
사적 이전소득	0.6 (0.2)	11.8 (3.2)	0.3 (0.1)	8.7 (2.6)	-0.3	-3.1
기타 소득	55.7 (15.0)	59.1 (15.9)	27.9 (8.5)	29.0 (8.8)	-27.8	-30.0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 소비지출과 조세 부담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의 격차는 작지만, 노부모 부양가구가 준거 가구에 비해 3만 원 많다. 소비지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 가구의 식비(18만 원), 광열수도비(6만 원), 보건의료비(8만 원), 교육비(4만 원), 기타 소비지출(8만 원)이 준거 가구보다 더 많다. 반면 노부모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교통오락비(5만 원), 세금(17만 원), 사회보장 부담금(11만 원)의 지출 규모가 작다. 이는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비슷한데 다만, 교육비의 경우 두 가구 유형 간 격차가 확대된다. 교육비는 노부모 부양 가구 52만 원, 준거 가구 32만 원으로 두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20만 원이 된다.

1인당 총생활비로 균등화하면, 오히려 노부모 부양 가구(208만 원)가

준거 가구(262만 원)에 비해 53만 원 더 적게 지출한다. 특히 노부모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주거비(3만 원), 가사용품비(3만 원), 교양오락비(6만 원), 교통통신비(10만 원), 기타 소비지출(8만 원), 사적 이전지출(5만 원), 세금(13만 원), 사회보장 부담금(10만 원)의 지출 규모가 작다. 반면에 노부모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광열수도비(2만 원), 보건의료비(1만 원), 교육비(3만 원)를 더 많이 지출한다.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가구 유형 간의 특성은 유사하다.

〈부표 2-14〉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노부모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369.9 (100.0)	369.9 (100.0)	372.6 (100.0)	372.6 (100.0)	2.7	2.7
식비	76.8 (20.8)	76.8 (20.8)	94.7 (25.4)	94.7 (25.4)	17.9	17.9
주거비	12.7 (3.4)	14.6 (3.9)	10.6 (2.8)	11.7 (3.1)	-2.1	-2.9
광열수도비	12.6 (3.4)	12.6 (3.4)	18.8 (5.0)	18.8 (5.0)	6.2	6.2
가사용품비	8.5 (2.3)	8.5 (2.3)	6.2 (1.7)	6.2 (1.7)	-2.3	-2.3
의류신발비	11.8 (3.2)	11.9 (3.2)	12.0 (3.2)	12.0 (3.2)	0.2	0.1
보건의료비	19.6 (5.3)	19.8 (5.4)	27.4 (7.4)	28.9 (7.8)	7.8	9.1
교육비	0.2 (0.1)	31.8 (8.6)	4.5 (1.2)	52.0 (14.0)	4.3	20.2
교양오락비	17.2 (4.6)	17.2 (4.6)	11.8 (3.2)	12.0 (3.2)	-5.4	-5.2
교통통신비	56.6 (15.3)	56.6 (15.3)	53.8 (14.4)	53.8 (14.4)	-2.8	-2.8
기타 소비지출	81.4 (22.0)	81.4 (22.0)	89.2 (23.9)	89.2 (23.9)	7.8	7.8
사적 이전지출	26.2 (7.1)	32.2 (8.7)	25.0 (6.7)	34.0 (9.1)	-1.2	1.8
세금	22.7 (6.1)	23.4 (6.3)	6.2 (1.7)	6.3 (1.7)	-16.5	-17.1
사회보장 부담금	23.5 (6.4)	25.4 (6.9)	12.5 (3.4)	14.6 (3.9)	-11.0	-10.8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15〉 준거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가구(A)		노부모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261.6 (100.0)	261.6 (100.0)	208.3 (100.0)	208.3 (100.0)	-53.3	-53.3
식비	54.3 (20.8)	54.3 (20.8)	53.2 (25.5)	53.2 (25.5)	-1.1	-1.1
주거비	9.0 (3.4)	10.3 (3.9)	6.0 (2.9)	6.6 (3.2)	-3.0	-3.7
광열수도비	8.9 (3.4)	8.9 (3.4)	10.4 (5.0)	10.4 (5.0)	1.5	1.5
가사용품비	6.0 (2.3)	6.0 (2.3)	3.5 (1.7)	3.5 (1.7)	-2.5	-2.5
의류신발비	8.3 (3.2)	8.4 (3.2)	6.7 (3.2)	6.7 (3.2)	-1.6	-1.7
보건의료비	13.9 (5.3)	14.0 (5.4)	15.3 (7.3)	16.1 (7.7)	1.4	2.1
교육비	0.1 (-)	22.5 (8.6)	2.6 (1.2)	30.0 (14.4)	2.5	7.5
교양오락비	12.2 (4.7)	12.2 (4.7)	6.6 (3.2)	6.7 (3.2)	-5.6	-5.5
교통통신비	40.0 (15.3)	40.0 (15.3)	30.2 (14.5)	30.2 (14.5)	-9.8	-9.8
기타 소비지출	57.6 (22.0)	57.6 (22.0)	49.7 (23.9)	49.7 (23.9)	-7.9	-7.9
사적 이전지출	18.6 (7.1)	22.8 (8.7)	13.6 (6.5)	18.5 (8.9)	-5.0	-4.3
세금	16.1 (6.2)	16.6 (6.3)	3.5 (1.7)	3.5 (1.7)	-12.6	-13.1
사회보장 부담금	16.6 (6.3)	18.0 (6.9)	7.1 (3.4)	8.3 (4.0)	-9.5	-9.7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다. 준거 가구 vs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 1) 소득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667만 원)은 준거 가구(525만 원)보다 141만 원 더 많다. 소득 구성별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노부모 부양 가구가 준거 가구보다 근로소득(183만 원), 기타 정부보조금(48만 원)은 많지만, 재산소득(14만 원), 사회보험소득(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3만 원), 기타 소득(60만 원)은 적다.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근로소득과 기타 정부보조금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지만, 준거 가구가 더 많았던 재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기타 소득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와 준거 가구의 민간 보험 소득 격차가 31만 원으로 확대된다(각각 0만 원, 31만 원).

가구원 수를 감안한 1인당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오히려 준거 가구보다 80만 원 더 적다. 소득 구성별로는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가 준거 가구보다 근로소득(20만 원), 재산소득(14만 원), 사회보험소득(13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5만 원), 기타 소득(48만 원)이 적은 반면, 기타 정부보조금(20만 원)은 더 많다.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와 같이 1인당 소득으로 전환하여 가구 총소득이 역전되는 이유는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가구원이 준거 가구보다 많기 때문이다.

〈부표 2-16〉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525.3 (100.0)	526.4 (100.0)	666.5 (100.0)	666.5 (100.0)	141.2	140.1
근로소득	371.5 (70.7)	389.2 (73.9)	554.1 (83.1)	554.1 (83.1)	182.6	164.9
재산소득	28.2 (5.4)	63.9 (12.1)	14.8 (2.2)	27.4 (4.1)	-13.5	-36.5
사회보험소득	30.4 (5.8)	99.9 (19.0)	19.3 (2.9)	38.7 (5.8)	-11.1	-61.1
민간보험소득	0.6 (0.1)	30.5 (5.8)	-	-	-0.6	-30.5
기타 정부보조금	3.8 (0.7)	12.6 (2.4)	51.9 (7.8)	54.4 (8.2)	48.1	41.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3 (2.1)	29.3 (5.6)	7.9 (1.2)	14.7 (2.2)	-3.4	-14.6
사적 이전소득	0.8 (0.2)	16.7 (3.2)	0.2 (-)	16.7 (2.5)	-0.7	0.0
기타 소득	78.8 (15.0)	83.5 (15.9)	18.4 (2.8)	18.4 (2.8)	-60.4	-65.2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17〉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득 구성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가구 총소득	371.4 (100.0)	372.2 (100.0)	291.6 (100.0)	291.6 (100.0)	-79.8	-80.6
근로소득	262.7 (70.7)	275.2 (73.9)	242.4 (83.1)	242.4 (83.1)	-20.3	-32.8
재산소득	19.9 (5.4)	45.2 (12.1)	6.2 (2.1)	11.5 (3.9)	-13.8	-33.7
사회보험소득	21.5 (5.8)	70.6 (19.0)	8.4 (2.9)	16.9 (5.8)	-13.1	-53.7
민간보험소득	0.4 (0.1)	21.6 (5.8)	-	-	-0.4	-21.6
기타 정부보조금	2.7 (0.7)	8.9 (2.4)	22.9 (7.9)	24.0 (8.2)	20.2	15.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0 (2.1)	20.7 (5.6)	3.4 (1.2)	6.3 (2.2)	-4.6	-14.4
사적 이전소득	0.6 (0.2)	11.8 (3.2)	0.1 (-)	7.5 (2.6)	-0.5	-4.3
기타 소득	55.7 (15.0)	59.1 (15.9)	8.2 (2.8)	8.2 (2.8)	-47.5	-50.8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2) 소비지출과 조세 부담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월평균 총생활비는 536만 원으로 준거 가구 367만 원보다 166만 원 더 많다. 특히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식비(46만 원), 교육비(61만 원), 기타 소비지출(24만 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에 비해 주거비(7만 원)와 사적 이전지출(16만 원)을 더 적게 지출한다.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봐도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와 준거 가구의 차이는 비슷하다.

1인당 소비지출로 전환하면, 총생활비는 오히려 자녀-노부모 부양 가구(235만 원)가 준거 가구(262만 원)보다 27만 원 더 적게 지출한다. 특히 자

녀-노부모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주거비(7만 원), 교양오락비(3만 원), 교통통신비(14만 원), 기타 소비지출(11만 원), 사적 이전지출(14만 원), 세금(6만 원)을 적게 지출한다. 반면에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는 준거 가구보다 가사용품비(6만 원)와 교육비(27만 원)는 더 많이 지출한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소비지출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도 비슷하다.

〈부표 2-18〉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369.9 (100.0)	369.9 (100.0)	535.9 (100.0)	535.9 (100.0)	166.0	166.0
식비	76.8 (20.8)	76.8 (20.8)	122.6 (22.9)	122.6 (22.9)	45.8	45.8
주거비	12.7 (3.4)	14.6 (3.9)	5.4 (1.0)	6.6 (1.2)	-7.3	-8.0
광열수도비	12.6 (3.4)	12.6 (3.4)	18.1 (3.4)	18.1 (3.4)	5.5	5.5
가사용품비	8.5 (2.3)	8.5 (2.3)	27.3 (5.1)	27.3 (5.1)	18.8	18.8
의류신발비	11.8 (3.2)	11.9 (3.2)	16.6 (3.1)	16.6 (3.1)	4.8	4.7
보건의료비	19.6 (5.3)	19.8 (5.4)	28.3 (5.3)	28.3 (5.3)	8.7	8.5
교육비	0.2 (0.1)	31.8 (8.6)	61.6 (11.5)	71.2 (13.3)	61.4	39.4
교양오락비	17.2 (4.6)	17.2 (4.6)	22.2 (4.1)	22.2 (4.1)	5.0	5.0
교통통신비	56.6 (15.3)	56.6 (15.3)	59.4 (11.1)	59.4 (11.1)	2.8	2.8
기타 소비지출	81.4 (22.0)	81.4 (22.0)	105.6 (19.7)	105.6 (19.7)	24.2	24.2
사적 이전지출	26.2 (7.1)	32.2 (8.7)	9.8 (1.8)	12.0 (2.2)	-16.4	-20.2
세금	22.7 (6.1)	23.4 (6.3)	23.8 (4.4)	24.4 (4.6)	1.1	1.0
사회보장 부담금	23.5 (6.4)	25.4 (6.9)	35.3 (6.6)	36.7 (6.8)	11.8	11.3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부표 2-19〉 준거 가구와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항목별 차이

(단위: 만 원, %)

종류	준거 가구(A)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B)		차이(B-A)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해당 가구
총생활비	261.6 (100.0)	261.6 (100.0)	234.5 (100.0)	234.5 (100.0)	-27.1	-27.1
식비	54.3 (20.8)	54.3 (20.8)	53.9 (23.0)	53.9 (23.0)	-0.4	-0.4
주거비	9.0 (3.4)	10.3 (3.9)	2.3 (1.0)	2.8 (1.2)	-6.7	-7.5
광열수도비	8.9 (3.4)	8.9 (3.4)	8.0 (3.4)	8.0 (3.4)	-0.9	-0.9
가사용품비	6.0 (2.3)	6.0 (2.3)	12.0 (5.1)	12.0 (5.1)	6.0	6.0
의류신발비	8.3 (3.2)	8.4 (3.2)	7.3 (3.1)	7.3 (3.1)	-1.0	-1.1
보건의료비	13.9 (5.3)	14.0 (5.4)	12.4 (5.3)	12.4 (5.3)	-1.5	-1.6
교육비	0.1 (-)	22.5 (8.6)	26.8 (11.4)	31.0 (13.2)	26.7	8.5
교양오락비	12.2 (4.7)	12.2 (4.7)	9.4 (4.0)	9.4 (4.0)	-2.8	-2.8
교통통신비	40.0 (15.3)	40.0 (15.3)	26.0 (11.1)	26.0 (11.1)	-14.0	-14.0
기타 소비지출	57.6 (22.0)	57.6 (22.0)	46.3 (19.7)	46.3 (19.7)	-11.3	-11.3
사적 이전지출	18.6 (7.1)	22.8 (8.7)	4.2 (1.8)	5.1 (2.2)	-14.4	-17.7
세금	16.1 (6.2)	16.6 (6.3)	10.4 (4.4)	10.7 (4.6)	-5.7	-5.9
사회보장 부담금	16.6 (6.3)	18.0 (6.9)	15.4 (6.6)	16.0 (6.8)	-1.2	-2.0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제3절 소결

본 절에서는 가구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를 살펴보았다. 가구 유형은 부부로만 구성된 준거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양육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 모두 준거 가구에 비해 소득과 소비지출이 많지만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로 전환하면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자녀 양육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그리고 자녀-노부모 동시 부양 가구의 실질적 경제 부담이 준거 가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은 3가지 가족 부양 가구 모두 준거 가구보다 적은 수준이다.

소비지출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면, 가족 부양 가구는 교양오락비와 교육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적 지원의 목표가 준거 가구의 수준을 자녀 양육 가구 또는 노부모 부양 가구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녀 양육 가구와 노인 부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관련 전문가 조사

기간 : 2017년 8월 24일 ~ 2017년 9월 6일  
 대상 : 전문가 패널  
 연구진 : 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김재호  
 연락처 : 배혜원 연구원 (044-287-8228, wefare7@khasa.re.kr)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간 가족부양 관련 연구는 대부분 관심대상을 자녀나 노부모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가구의 입장에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는 가족부양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실태와 욕구수준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할애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본 설문은 **9월 6일(수)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황남희

※ 응답을 끝내신 후 설문은 'OOO(본인성함).hwp'로 저장하시어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첨부해드리는 '수당영수증' 파일에 자  
 필서명하시어 함께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정책의 중요성과 이행실태

[문 1] 다음의 가족부양 대상별로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정책의 중요성과 이행실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양대상		1) 중요성 절대평가	2) 중요성 상대평가	3) 이행실태 절대평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중요도 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주시시오.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하면 10점이 되도록 응답해주시 시오.	① 이행이 매우 미흡하다 ② 이행이 미흡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이행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이행되고 있다
(1) 자녀-부모	① 자녀양육			
	② 부모부양			
	합계	<del>X</del>	10점	<del>X</del>
(2) 자녀 학령단계별	① 미취학자녀 (만 6세 이하)			
	② 초등자녀 (만 7~12세 이하)			
	③ 중고등자녀 (만 13~18세 이하)			
	④ 대학생자녀 (만 19세 이상)			
	합계	<del>X</del>	10점	<del>X</del>
(3) 부모 연령집단별	① 전기도인 (만 80세 미만)			
	② 후기도인 (만 80세 이상)			
	합계	<del>X</del>	10점	<del>X</del>

■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정책 개선방향 고려요소

[문 2]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중요성을 답하여 주십시오.

고려요소	중요성	고려요소	중요성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인구구조 변화		(5) 재가노부모부양의 이증부담	
(2) 가족가치관 변화		(6) 세대간 형평성	
(3) 가구형태 다변화		(7) 경제성장 속도	
(4) 가구소득별 욕구 차이		(8) 계경지속가능성	

[문 3] 이 외에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



---



---



---



---

■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정책의 공사역할분담 방향성

[문 4] 앞으로 가족부양정책의 방향성은 부양대상별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족의 역할, 부모부양의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양대상별로 가족부양정책에 대한 **공사적 부양부담의 현재 수준을 평가한** 후에 앞으로 **가족부양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양대상		점수가 클수록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사회의 합계가 1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해주시십시오.					
		1) 현재 공사 역할분담 수준			2) 향후 공사 역할분담의 방향성		
		가족	사회	합계	가족	사회	합계
(1) 자녀-부모	㉠ 자녀양육			10점			10점
	㉡ 부모부양			10점			10점
(2) 자녀 학령단계별	㉢ 미취학자녀 (만 6세 이하)			10점			10점
	㉣ 초등자녀 (만 7~12세 이하)			10점			10점
	㉤ 중고등자녀 (만 13~18세 이하)			10점			10점
	㉥ 대학생자녀 (19세 이상)			10점			10점
(3) 부모 연령집단별	㉦ 전기노인 (만 80세 미만)			10점			10점
	㉧ 후기노인 (만 80세 이상)			10점			10점

■ 비경제적 부양부담을 고려한 공사 역할분담 방향성

[문 5] 다음은 부양대상별 경제적 및 비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부양부담은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보기를 참조하여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

- ①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 ② 가족이 사회보다 좀더 책임져야 한다
- ③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
- ④ 사회가 가족보다 좀더 책임져야 한다
- ⑤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1) 경제적 부양부담

구분		해당번호 기입
(1) 자녀-부모	㉠ 자녀양육	
	㉡ 부모부양	
(2) 자녀 학령단계별	㉠ 미취학자녀(만 6세 이하)	
	㉡ 초등자녀(만 7~12세 이하)	
	㉢ 중고등자녀(만 13~18세 이하)	
	㉣ 대학생자녀(19세 이상)	
(3) 부모 연령집단별	㉤ 전기노인(만 80세 미만)	
	㉥ 후기노인(만 80세 이상)	

2) 비경제적 부양부담(정서적지지, 신체적/도구적 지원 등)

구분		해당번호 기입
(1) 자녀-부모	㉠ 자녀양육	
	㉡ 부모부양	
(2) 자녀 학령단계별	㉠ 미취학자녀(만 6세 이하)	
	㉡ 초등자녀(만 7~12세 이하)	
	㉢ 중고등자녀(만 13~18세 이하)	
	㉣ 대학생자녀(19세 이상)	
(3) 부모 연령집단별	㉤ 전기노인(만 80세 미만)	
	㉥ 후기노인(만 80세 이상)	



구분	해당번호 기입	이유 (기타 응답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이유를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도입		
2) 보육비/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확대		
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4) 방과후, 초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준 확대		
5) 사교육비 감소 정책 강화		
6) 대학등록금 인하		
7) 학자금대출 대출요건 완화		
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9) 기초연금 급여수준 확대		

▣ 기타

[문 7] 기타 본 연구와 관련한 제안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

---

---

※ 성실성의껏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자리를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어쭙했습니다.

1. 소속 및 직위: \_\_\_\_\_
2. 관 심 분 야 : 아동 (    ), 노인 (    ), 청년/장년/기타 (    ), 가족전반 (    )
3. 경 력: (    )년 (    )개월
4. 성 명: \_\_\_\_\_
5. 성 별: 남 (    ), 여(    )

####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부양 대상별로 제도는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보육비/가정 양육수당 지원 금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이며, 초등학생 자녀는 ‘방과 후, 초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준 확대’이다.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의 제도는 ‘사교육비 감소 정책 강화(공교육 정상화)’,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소득수준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상환 기간 등)’이다. 노부모 대상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다.

먼저, 미취학 자녀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서비스의 질적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재정 부담 고려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 지원 체계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아동수당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40.0%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저출산 정책 해소, 보편적 기본권으로의 지향, 일·가정 양립의 기초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육비/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확대에서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되 서비스의 질적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보육 시설, 인프라, 전문 인력, 서비스 등의 질적 강화의 시급성이 제시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보편적 서비스로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을 제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 서비스 수준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서비스의 질적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38.0%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부처별 서비스를 통합하는 시스템 마련, 개별 제도보다는 전체적인 자녀 양육 체계에 대한 개편안 마련 등이 제시되어 양육 서비스의 통합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초등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수준 확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 초등학생 자녀의 조기 하교는 돌봄 공백 소지가 가장 큰 사유지만 서비스의 부재 또는 분산화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통합 시스템의 부재, 돌봄교실 운영 기피 현상,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질적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40.0%에 달했다.

<부표 4-1>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양육 제도 개선 방향

(단위: 명, %)

양육 제도		반드시 추진	현행 유지 하되, 서비스 질적 부분 개선 <sup>1)</sup>	새로운 제도 도입에 반대	기타	전체
미취학 자녀	(1) 아동수당제도 도입	40.0	52.0	6.0	2.0	100.0(50)
	(2) 보육비/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확대	30.0	60.0	4.0	6.0	100.0(50)
	(3)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48.0	38.0	10.0	4.0	100.0(50)
초등학생 자녀	(1) 방과 후, 초등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수준 확대	52.0	40.0	8.0	-	100.0(50)

주: 아동수당제도 도입 문항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보육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내실화가 더 시급하다는 선택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부표 4-2>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양육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94.0%로 높았다.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동시에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노후 준비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동시에,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4.0%,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 수준 및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부표 4-2〉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양육 제도 개선 방향

(단위: 명, %)

양육 제도		반드시 추진	현행대로 유지	국가가 등록금 부담 <sup>1)</sup>	기타	전체
중고등 학생 자녀	(1) 사교육비 감소 정책 강화 (공교육 정상화)	94.0	4.0	-	2.0	100.0(50)
대학생 자녀	(1) 대학 등록금 인하	44.0	28.0	2.0	26.0	100.0(50)
	(2)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sup>2)</sup>	74.0	14.0	2.0	10.0	100.0(50)

주: 1)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 정책 강화 문항의 선택지는 (1)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 기타로 구성됨.

2)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는 소득수준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상환 기간 등의 요건 완화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부표 4-3〉은 부모 부양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아닌,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급격한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36.0%, 지급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24.0%,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24.0%, 기타 의견은 16.0%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우려 요소로 제시되어 기초연금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향하더라도 재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부표 4-3〉 부모 부양 제도 개선 방향

(단위: 명, %)

부양 제도	반드시 추진	(1) 폐지보다는 완화가 바람직 (2) 상향조정보다는 지급 대상 확대가 더 시급	현행대로 유지	기타	전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	40.0	56.0	2.0	2.0	100.0(50)
(2)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조정	36.0	24.0	24.0	16.0	100.0(50)

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 월 최대 약 20만 원, 소득 하위 70%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

##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참여동의서(연구진용)

연구주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녀양육가구와 노부  
모부양가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의 정보가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된 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 \_\_\_\_\_ 날짜 \_\_\_\_\_ 서명 \_\_\_\_\_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구자의 성명 \_\_\_\_\_ 날짜 \_\_\_\_\_ 서명 \_\_\_\_\_

\*연구진용은 작성한 후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관합니다.

### 연구참여동의서(참여자용)

연구주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구조와 정책과제: 자녀양육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의 정보가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된 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 \_\_\_\_\_ 날짜 \_\_\_\_\_ 서명 \_\_\_\_\_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구자의 성명 \_\_\_\_\_ 날짜 \_\_\_\_\_ 서명 \_\_\_\_\_

\*연구참여자용은 작성한 후 참여자가 소지합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